

19세기 ‘심리(審理)의 시대’를 들여다보는 창: 일성록·추조결옥록·장계등록을 이용한 살옥사건 기록의 재구성

문 준 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I. 서론

19세기는 조선시대 사법제도의 역사에서 앞 시대와 뚜렷이 대비되는 시대적 특징이 있다. 민사적 쟁송을 취급하는 사송(詞訟) 영역에서는 19세기는 ‘단송(短訟)의 시대’라 부른다면, 사형사건 등 중대한 범죄를 취급하는 단옥(斷獄)의 영역에서는 19세기는 ‘심리(審理)의 시대’이다. 단송의 시대와 심리의 시대는 그 영역이 달라도 공통점이 있다. 중대한 쟁송과 범죄 처리방식에서 조선 전기 이래 존속해온 조선 특유의 제도와 격식이 퇴장하고 종래 경미 사건이나 임시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되어 온 사건처리방식이 마치 범용적이고 정규적인 제도처럼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19세기 ‘단송의 시대’에는 시송다짐, 결송다짐, 친착결절법, 삼도득신법 등 노비송·전택송을 중심으로 조선 전기에 마련된 조선 특유의 소송 격식이 퇴장하고, 채송·잡송·산송 등에서 간단한 방식으로 처리하던 단송처결의 방식이 일반적인 쟁송처리방식이 되었다. 각종 민장치부책 자료와 다량의 소송소지류 자료가 단송의 시대의 산물이다.¹⁾

‘심리’는 옥사에 역올하거나 용서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심사함을 뜻하는 용어이다. 사형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한다는 것은 사형을 확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려 줄 자가 있는데,

1) 조선 후기 사료에서 약식의 쟁송처리를 지칭하는 말로 ‘短訟’, ‘短訟處決’, ‘短訟決給’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단송은 구두 진술만 받고 승패를 정하는 방식으로 처결될 수도 있고, 판결이 문서화되는 경우 대개 소지에 제감[題音]의 형식으로 간략히 처결내용을 적어주는 것에 그치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입지 또는 입안을 작성해줄 때도 있다. 단송에 대해서는 문준영, 「조선 후기 민사재판에서 短訟의 의미와 재판격식의 변화상」, 『법사학연구』 60호, 2019; 「19세기 후반 지방사회에서 민소(民訴)와 청송(聽訟) 실무」, 『법학연구』 60권 1호, 부산대 법학연구소, 2019.

즉 죄인 중 계속 추문해야 할 자는 그대로 두고, 의심스럽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부생(傅生)할 자를 찾기 위해 사건을 재심사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 시대에는 통상의 사형사건은 서울과 지방에서 추핵이 종료된 후 형조의 조율(照律)과 의정부의 상복(詳覆)을 거쳐 사형판결이 내려지고, 가을에 이르러 형을 집행할 대시(待時)의 사형수에 대해서는 형집행에 앞서 다시 세 번에 걸쳐 국왕에게 계복하여 사형수 중 부생할 자는 부생하고 정형(正刑)을 할 자에는 사형집행을 최종확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사형수에 대한 계복은 정조 3년(1779) 11월을 끝으로 역사에서 사라졌다. 1780년부터 갑오개혁에 의한 새로운 재판제도가 시행되는 1895년까지 120년 동안 계복제도는 법전에만 존재할 뿐이었다. 이제 대시의 사형죄인들은 정기적인 계복을 통해 형 집행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심리’의 기회에 재심을 받고 잉추(仍推) 또는 부생(傅生)의 처분을 받았다.

물론 ‘심리의 시대’에 사형집행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역적, 대역부도죄인, 강상죄인, 사학죄인(邪學罪人), 명화적, 그밖에 죄범이 중하여 부대시(不待時)로 즉시 처형할 죄인들은 속결로 처형되었다.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과 천주교 박해의 역사가 이를 똑똑히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19세기 형정의 모습에서 우리 눈에 잘 띄는 부분에 불과하다. 그 이미지가 너무나 강렬하고 생생한 나머지 우리는 다른 사형죄인들도 비록 절차는 다르더라도 결국 형장에 끌려갔으리라 짐작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필자는 19세기 순조~고종대의 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추조결옥록, 장계등록 등에서 살옥죄인의 처결기록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지금까지 대시의 살옥죄인에 대해 사형을 확정·집행한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통상의 살옥죄인들은 부정기적이지만 몇 년 간격으로 심리를 받는데 그 중 범정에 중하고 명백한 자는 거듭 ‘잉추(仍推)’ 처분을 받으며, 개중 옥중에서 물고하는 자도 있지만, 다수의 살옥죄인이 어느 시점에는 감사정배(減死定配)나 석방의 은전을 입었다.²⁾

‘심리의 시대’에 사형죄인에 대한 형정은 ‘사형 판결 없이 사형죄인을 처리하고 징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 모습은 정조의 사형죄인 심리기록인 『심리록』의 분석을 통해 이미 탐사된 바 있지만,³⁾ 정조 사후에도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정조의 ‘심리’는 정조의 시대만의 고립적인 실천이 아니었고, 정조대에 일어난 변화와 유산 위에 120년 동안 ‘심리의 시대’가 지속되었다.

이 시대의 모습은 조선 시대 형사사법에 대해 종래 우리가 가졌던 지식과 이미지와 너무 다르지만, 사실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일차적으로 한눈에 잘 띄지 않는다. 심리의 시대 중

2)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3) 심재우,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심리록』 연구』, 태학사, 2009.

정조대는 『심리록』이란 창으로 들여다볼 수 있지만, 19세기 1백 년의 사정을 보여주는 『심리록』 같은 기록물은 없다. 방대한 자료 더미에서 단편들을 모으고 이어 붙여야 비로소 그 모습이 드러난다. 필자는 『일성록』과 『추조결옥록』⁴⁾에서 1801년~1893년 사이에 약 2,700명의 통상의 살옥죄인과 관련된 약 5,200건의 심리 관련 기사를 찾아내었다. 이를 통해 숨어 있는 심리의 시대를 발견하고 그 윤곽선을 그릴 수 있다. 장계등록류에는 관찰사가 살옥사건을 조사심라처결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다양한 유형이 장계가 있다. 일성록과 추조결옥록에도 같은 사건들에 대한 관찰사의 장계와 형조의 회계 기록이 있다. 이들 기록을 합치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 ‘검험부터 성옥동추, 살옥안의 장계, 형조의 복계 등을 거쳐 (현존 기록상 확인되는) 최종 결과’에 이르는 일건기록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심리의 시대의 실무와 현장을 좀 더 세밀하게 스케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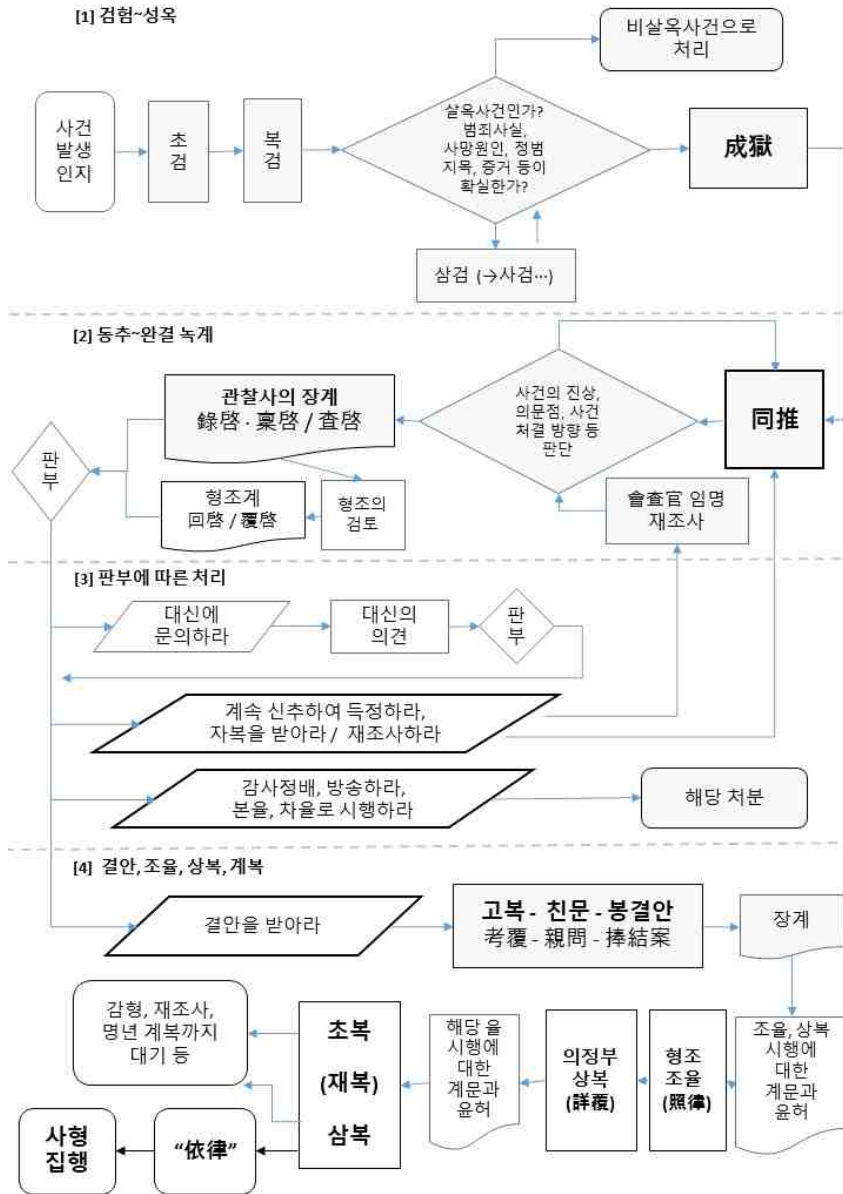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이렇게 재구성된 살옥사건 기록을 이용하여 19세기 살옥사건 처리절차 및 실태를 살펴보고 그 자료적 가치와 활용방안에 대해 논하려 한다.

II. 조선 후기 살옥사건 처리절차

본장에서는 조선후기 살옥사건 사건처리 과정 및 거기에서 생산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기록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19세기의 살옥사건 처리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형옥류 자료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대의 사건처리절차 및 실무에 대한 전체적이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할 때 자료들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법령자료와 연대기자료만로는 살옥사건 처리절차의 세부 및 중요 용어나 개념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장애를 돌파하는 데 일성록추조결옥록장계등록의 사건처리기록이 큰 도움을 준다.

4) 두 자료에서의 형사사건 관련 기록의 개요와 특징에 관해서는 유승희, 「『日省錄』 刑獄類에 나타난 死罪기록의 고찰」, 『서지학연구』 38, 2007; 유승희, 「조선후기 獄案修啓의 실태와 「秋曹決獄錄」의 편찬」, 『서지학연구』 46, 2010.

<그림 1> 살육사건 수사·재판절차



<그림 1>은 지방에서 살변(殺變)이 발생한 경우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조선 전기에 기본적인 골격이 마련되었지만,⁵⁾ 세부적으로 불명료한 지점이 있다. 위 그림은 장계 등록, 추조결옥록, 일성록 등의 사건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사항에 근거하고 있다.

전체적인 절차는 ① 검험~성옥, ② 동추~완결 ③ 판부에 따른 처분, ④ 절차 종결과 사형확정의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심리의 시대에 대시의 살육죄인에 대해서는 ④의 단계로 진행하

5) 이에 대해서는 田中俊光, 『조선초기 단옥(斷獄)에 관한 연구: 형사절차의 정비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지 않고 처리된다.

1. 제1단계: 검험~성옥

살변이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는 신고가 관아에 접수되면 관할 수령이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서 최초의 검험을 하고(초검) 그 결과를 관찰사에 보고한다. 관찰사는 다시 인근 고을의 수령에 두 번째 검험(복검)을 행할 것을 지시하고, 복검관이 복검 결과를 관찰사에 보고한다.⁶⁾ 관찰사는 초검과 복검의 결과를 기초로 살육사건에 해당하는지, 특히 실인과 정범 규명이 올바른지,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새로 검험관을 지명하여 삼검, 사검 등 추가 검험을 실시한다. 새로 검험을 실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초검·복검의 양 검험관의 회사(會査)를 지시하기도 한다. 회사에서는 양 검험관이 함께 시친, 혐의자, 증인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심의하여 합의된 결론을 제시한다.

이상의 절차를 거쳐 관찰사가 해당 사건이 살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비살육사건으로 처리되고, 유형 이하의 범죄를 직단할 수 있는 관찰사의 권한 내에서 작처(酌處)한다. 실인과 범인 지목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범인의 승복을 받거나 진상을 추핵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찰사는 죄인을 수감하여 죄인을 동추(同推)할 것을 지시한다. 관찰사의 지시에 따라 죄인이 관할 군의 감옥에 수감된 날이 이후 사건 기록에 공식적인 수감일로 기재된다.⁷⁾ 『추조결옥록』의 심리기록에는 수감일 대신 ‘성옥(成獄)’ 또는 ‘옥성(獄成)’의 연월이 기재되기도 한다. 장계등록의 심리계본에서 같은 사건의 기록을 찾아 대조하면, 수감일을 기준으로 ‘성옥’의 연월을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⁸⁾

6) 각각의 검험 결과보고서에는 핵심적인 검시 결과(사망원인 및 가해방법을 알 수 있는 상처와 시신의 상태), 범죄용의자, 피해자 가족, 증인 기타 참고인 등의 심문 내용, 범죄상황, 사망의 실인(實因), 범인(정범, 간범)에 대한 검험관의 결론이 기재된다.

7) 장계등록의 심리계본에는 초검관과 복검관의 검장 작성·발송·접수일, 관찰사의 성옥(수감과 동추)을 지시하는 제사의 시행일 등 기재되지 않으며, 관할 수령이 해당 제사를 접수하고 죄인을 수감하였다는 복명 보고도 나오지 않는다. 심리계본 서두에 기재된 수감일은

8) 예를 들어, 신사년(1881년) 황해도 봉산군의 살육죄인 魯甲得에 대한 황해감사의 審理啓本에는 “鳳山郡囚魯甲得, 足踏 金士寬 左膀內邊, 第四十三日致死, 辛巳二月初九日囚”라 기재되어 있다. 『추조결옥록』에는 같은 사건의 심리기록에는 수감일 대신 “辛巳二月獄成”이라 기재되어 있다. 황해감사의 심리계본에 따르면, 사건발생신고는 1월 13일, 초검은 1월 21일, 복검은 1월 27일에 있었고, 그 직후 ‘노갑득을 두 조사관이 날짜를 정하여 합동 취조하여 기어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라’(甲得段兩查官約日會推 期於得情事)는 관찰사의 제사가 내려지고, 2월 14일에 제1회 동추가 이루어졌다. 장계기록에 노갑득이 “신사 2월 초9일”에 수감되었음을 보고·확인하는 내용은 없지만, 그 날짜로 보아 위 관찰사의 제사에 따라 수감된 날짜임을 알 수 있다.

황주목 죄수 박성근에 대한 관찰사의 심리계본에는 수감일이 “壬午二月二十一日囚”로 되어 있고, 이 사건의 초검은 2월 9일, 복검은 2월 18일, 제1회 동추는 3월 10일이다(같은 각사등록 24, 黃海監營狀啓謄錄 18(1a~13a)). 같은 사건에 대해 『추조결옥록』에는 “임오 2월 성옥”이라 되어 있다.

‘성옥’은 절차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시점부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사건 및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어 추핵하는 절차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범인은 ‘살옥죄인’이라 불리고, 고신(拷訊)이 허용되는 것도 성옥 후 동추 단계부터이다. 검험 단계에서는 고신을 가할 수 없다.

조선의 성옥과 중국 단죄절차에서 옥성은 구별해야 한다. 『예기』 「왕제」(王制)편에는 조선 삼복제도의 기원이 된 고대의 사형사건 판결절차가 기술되어 있는데, ‘사(史)→정(正)→대사구(大司寇)→왕’의 순서로 각각 ‘옥성’을 고하여 왕이 안건을 청리할 때 다시 삼공이 세 번 ‘옥성’을 고하고 왕이 세 번 용서하려 한 후 형을 확정한다는 내용이다.⁹⁾

『당률소의』(唐律疏議) 「명례(名例)」 【제명(除名)】 조의 주(註)에 따르면 “옥성(獄成)은 장물과 진상이 드러나 증명되었거나 상서성(尙書省)에서 판단을 마치고 아직 임금에게 여쭙지 않은 경우를 일컫는다”¹⁰⁾ 대명률 명례에 “범죄가 발각되어 도망한 경우 중증(衆證)가 명백하다면 ‘옥성’된 것과 같으므로 대질신문할 필요 없다”는 규정이 있다.¹¹⁾ 이 규정은 공범 중 수범과 종범의 구분 처리와 관련된 것이다. 공범 2명 중 먼저 체포된 자가 도망한 자를 수범(首犯)이라 칭하는 경우 달리 증거가 없으면 일단 먼저 체포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도망한 자가 나중에 붙잡혀 먼저 체포된 자를 수범이라고 칭하면 사실을 국문하여 수범과 종범을 바로 잡는다. 그러나 여러 증인과 증거로 이미 누가 수범이고 종범인지 명백하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도망자를 체포하여 대질 신문하기를 기다릴 필요 없다는 취지이다. 여기서 나타나듯이 중국 단죄절차에서 옥성은 “판결의 전제가 되는 증거조사가 모두 끝나고 죄의 경중실부(輕重實否)가 거의 굳어진 상태를 뜻하는 법제용어이다.”¹²⁾ 오늘날 재판실무에서 “사건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때”라는 표현을 쓴다.¹³⁾ 중국의 옥성은 그러한 의미에서의 옥안의 성숙, 옥안의 완성을 뜻하며, 조선에서는 후술하는 ‘완결’에 비슷한 의미가 있다.

9) “옥사의 문서를 완성하면 사(史)는 옥성(獄成)으로 정(正)에게 고한다. 정이 이를 듣는다. 정이 옥성으로 대사구(大司寇)에 고한다. 대사구는 이를 가시나무 아래에서 듣는다. 대사구가 옥성의 왕에게 고한다. 왕은 삼공(三公)에 명하여 청리에 참석하게 한다. 삼공이 옥성으로 왕에게 고하면 왕은 세 번 용서하려 하고, 그 후에 형을 제(制)한다”.(成獄辭, 史以獄成告於正, 正聽之, 正以獄成告于大司寇, 大司寇聽之棘木之下, 大司寇以獄之成告於王, 王命三公參聽之, 三公以獄之成告於王, 王三又, 然後制刑, (禮記 王制). “王三又”에서 ‘又’는 정현(鄭玄)의 주에 따르면 ‘宥’(유)의 뜻으로 풀이된다. 矢木毅, 『朝鮮朝刑罰制度の研究』, 朋友書店, 2019, 311-312면에서 재인용.

10) 『唐律疏議』 名例·除名條 註 獄成, 謂贓狀露驗及尙書省斷訖未奏者

11) 大明律·名例·犯罪事發在逃: 凡二人共犯罪 而有一人在逃 見獲者 稱逃者爲首 更無證佐 則決其從罪 後獲逃者 稱前人爲首 鞠問是實 還依首論 通計前罪 以充後數. 若犯罪事發而在逃者 衆證明白 卽同獄成 不須對[待]問. 대명률강해와 대명률부례는 ‘對問’이고, 대명률직해에서는 ‘待問’이다.

12) 矢木毅, 『朝鮮朝刑罰制度の研究』, 朋友書店, 2019, 312면.

13) 대법원 홈페이지의 ‘소송의 진행’을 설명하는 페이지에서 “일반소송절차가 진행된 결과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절차가 완결되는 등 사건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합니다”라 하고 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200/WSH270.jsp>.

반면, 조선의 단죄절차에서 ‘성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절차적으로는 검험이 끝나고 정식 사형사건이 성립하여 동추로 전환되는 단계에서 쓰인다. ‘소추의 개시’ 또는 ‘기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어차피 조선의 규문주의적 단죄절차에서 수사, 기소, 소추를 절차적으로 구획하기도 어렵고 담당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절차의 입구에 해당하는 ‘입건’이라는 말을 써본 것이다.

조선의 단옥절차에서 살옥사건을 비롯한 사죄안건에 대한 추핵은 특별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진행된다. 바로 후술하는 ‘동추’, ‘고복-친문-봉결안’이 그러하다. 『경국대전』 「형전」 ‘추단조’에 삼복제도와 함께 외방에서의 동추-고복-친문을 특별히 규정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외방의 사죄안건에 대한 특별추핵절차인 것이다.¹⁴⁾ ‘성옥’은 바로 사죄안건을 위한 특별추핵절차로 진입한다는 것을 뜻한다.

조선의 법전과 수교 등에도 그 점이 표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피살되어 성옥이 되었는데 구핵을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원수를 살해한 자는 감사정배한다.”¹⁵⁾ “거느리고 사는 비부(婢夫)가 방자하게 악언을 하고 정리(情理)에 크게 어긋나서 죄를 다스리다가 치사한 경우 성옥하지 않는다.”¹⁶⁾ “보고기한을 더하는 경우 품지로 논의를 모으기 전이 아니면 감히 경술하게 먼저 성옥하지 못한다.”¹⁷⁾ 여기에서 ‘성옥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건을 ‘완결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살옥사건으로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제2단계: 동추~완결·녹계

동추절차에서는 관할 수령이 주추관(主推官), 관찰사가 지명하는 인근 수령이 동추관(同推官)이 되어 죄인, 증인 등을 합동 신문한다. 동추 대신에 회추(會推)라는 용어도 쓰인다. 형조에서 서울의 살옥죄인을 합동신문하는 것을 ‘회추’라 한다.

지방의 살옥사건에서는 매월 3차 동추를 해야 하고, 1차의 동추에 10도의 고신을 가할 수 있다. 동추관들이 동추결과를 관찰사에 보고하면, 관찰사가 처분을 지시한다. 대개는 엄히 신추하여 죄인의 자복을 받아내라, 진상을 밝히려는(得情) 내용이다. 이렇게 하여 몇 번의 동추가 행

14) 經國大典·刑典·推斷·死罪三覆啓啓 死罪，三覆啓。外，則觀察使定差使員，同其邑守令推問，又定差使二員考覆，又親問乃啓。濟州三邑，則節制使親問，報觀察使，啓聞。

15) 續大典·刑典·殺獄·擅殺其讎人：其父被殺，成獄不待究覈，擅殺其讎人者，減死定配。

16) 大典會通·刑典·殺獄·[不告官擅殺其奴婢：補 率接之婢夫，肆發惡言，情理絕悖而治罪，邂逅致死者，勿爲成獄。

17) 六典條例 卷之九 刑典·刑曹·掌禁司·刑獄：加辜限，非稟旨，收議前，毋敢輕先成獄。

해지고 제반 증거에 의해 범죄의 정상과 죄인의 죄책 유무가 판명되었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관찰사는 추핵을 ‘완결(完決)’하고 검험과 동추의 결과 및 자신의 결론을 담아 장계를 올린다. 이때 국왕에게 사건에 대한 정식 보고가 최초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장계가 도달하기 전에 죄인이나 피해자의 가족노복 등이 격쟁을 올려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때가 있다. 격쟁안에 대한 형조의 검토의견에 따라 아직 등문(登聞)되지 않은 사건으로 해당 관찰사에게 상세히 조사하여 장문할 것을 지시한다.

『일성록』의 사건기록에서 관찰사의 장계의 내용은 ‘00감사 아무개 장계이위(狀啓以謂)’라는 문구와 함께 인용되는데, 『추조결옥록』에는 관찰사가 올리는 장계에 대해 ‘장계’라는 통칭 외에 녹계(錄啓), 품계(稟啓), 사계(査啓), 심리계본(審理啓本) 등의 표현이 쓰인다. 심리계본을 말 그대로 ‘심리’를 시행하여 올리는 계본이고, ‘사계(査啓)’는 격쟁안에 따른 조사 지시 또는 제3단계에 나오는 재조사[更査] 지시에 따라 조사를 마치고 올리는 장계이다.

『추조결옥록』에는 관찰사의 계본에 대해 ‘00감사 아무개 계본 녹계죄인 00명 품계죄인 00명’과 같은 표제하에 관찰사의 장계 및 형조 회계의 요지, 국왕의 판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녹계’는 살옥사건의 유죄가 확실하다는 판단을 근거로 관찰사가 아뢰는 것이다. 중국의 단죄절차에서의 ‘옥성’의 취지이다. 따라서 ‘녹계’의 장계에는 죄인을 유죄로 단정한 가운데 후속 처분 방향을 아뢰는 내용이 나온다.¹⁸⁾ 반면, 해당 사안이 범인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의심스럽거나 용서할만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점을 밝히면서 형조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할 것(令該曹稟處)을 청한다. 이를 ‘품계’라 한다. 다만, 이때의 ‘녹계’와 ‘품계’는 별도의 장계 종류로 보기보다는 장계의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녹계’의 넓은 의미에서는 ‘품계’와 협의의 ‘녹계’를 포함하여 사안을 완결하여 올리는 장계를 뜻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녹계(未錄啓) 죄인’을 심리하라는 명이 내리거나 “서울과 지방의 사형수를 녹계하여 부생한 자가 47명이었다”는 실록기사에서 녹계가 그러하다.¹⁹⁾ ‘녹계’의 ‘녹(錄)’은 본래 ‘녹수(錄囚)’, 죄수를 심록(審錄)하는 것이다. 녹수는 감옥에 있는 죄수에 대해 억울함의 유무 및 장기구류(滯獄)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으로 당나라에서는 ‘여수’(慮囚)라 하기도 한다.²⁰⁾

18) ‘죄상이 명백하고 의심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신추하여 진상을 규명하겠다’, ‘목숨으로 죄값을 갚게 해야 한다’ ‘죄인이 자복을 하지 않으므로 계속 신추하여 자복을 받겠다’ 등.

19) “凡京外死囚錄啓之傳生者, 四十七人.” 『순조실록』 24권, 순조 21년(1821) 21년 7월 15일 癸亥.

20) 矢木毅, 앞의 책, 337-38면; 石川重熊, 「高麗時代の恤刑-慮囚・疏決・獄空を中心に-」, 『民族文化論叢』 37집, 2007, 257-58면; 鄭炳俊, 「唐代的 疏決」, 『東國史學』 31집, 1997, 125-27면.

한편, 형조에서 서울의 살육죄인을 회추하여 완결한 계복을 올릴 때는 ‘녹계’, ‘품계’ 등의 표현을 쓰지 않고, ‘완결계본’(完決啓本)이라 한다. 『추조결옥록』에서 형조 완결계본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曹完決內”라는 표현이 쓰인다.

3. 제3단계: 형조의 회계·복계 및 판부에 따른 처리

관찰사의 계본이 도착하면 형조는 이를 검토하여 회계(回啓)의 형식으로 형조의 의견을 아뢴다. 관찰사의 계본과 형조의 계본에 대해 왕의 판부가 내려지면, 판부의 취지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심리의 명에 따라 형조가 경외의 살육안을 심리하는 경우, 각 도의 관찰사가 도내의 살육안을 심리하여 올린 심리계본에 대해 회계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형조에 보관된 지방의 옥안을 형조가 단독으로 심리하여 복계(覆啓)하는 경우도 있다.

심리의 시대의 특징은 절차가 제4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3단계 안에서 처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기서 내려지는 처결은 기본적으로 ‘잉추’나 ‘부생’ 두 가지이다. 추핵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조사(更査)를 명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신의 의견을 묻는 수의(收議)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4. 제4단계: 결안, 조율, 복심과 사형 확정

죄인이 죄상을 승복하였고 목숨으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왕의 재가를 받아 고복-친문-결안 절차에 진입한다. 고복은 관찰사가 지명한 고복관 2명이 기존의 기록을 재검토하고 죄인을 신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복을 통해 죄상과 증거가 명백하고 죄인이 지만(遲晩)을 하면, 이를 관찰사에게 보고한다. 관찰사는 친히 죄인을 신문하고, 죄인으로부터 결안(結案)을 받는다. 이 단계에 이르러 추핵절차는 종결되고, 조율, 의정부 상복, 계복의 절차로 이행한다.

순조~고종대의 살육안 처결기록에서 순조대 7명, 헌종대 3명, 고종대 2명 등 극소수 사례에서 결안을 받거나 결안을 받은 죄인으로 하여금 상복을 기다리게 하는 처분이 나타난다. 그러나 계속 같은 처분이 이어질 뿐이고 실제로 ‘의정부 상복’을 마치고 사형판결까지 간 경우는 없다.

일례를 들면, 경상도 현풍의 살육죄인 윤운득(尹云得)은 동족을 이끌고 종조카의 아내[從

嫂]를 목매달아 죽여 순조 31년(1831) 7월 초 1일에 수감되었는데, 헌종 8년(1842) 1월 형조는 동추고복친문을 거쳐 결안취복하여 장계를 올렸으므로 의정부에 보고하여 상복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청하였다. 성옥된 지 11년만에 결안 절차에 이른 것이다. 같은 해 8월 형조 심리계목으로 같은 내용이 처분이 내려진 후 윤운득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다가 고종 1년(1864) 7월 다시 심리기록이 나온다. “중숙부가 중수를 늑살하여 단안(斷案)이 이미 결안에 이르렀고” “사안은 윤리상의 변괴이고 그 죄의 형적은 잔인하고 야박하여 전과 같이 엄히 수감하고 상복이 기다리게 하면 어떻습니까”(其事 則彝倫變怪 以跡則殘忍薄行 依前嚴囚 以待詳覆何如)라고 아뢰었다.²¹⁾ 헌종 8년에 같은 처분이 있는 후 22년이 지났음에도 제자리다.

결안을 받더라도 후속 절차로 넘어가지 않으면 결국 ‘잉추’와 다를 게 없다. 다만 ‘결안죄인(結案罪人)’은 ‘잉추죄인(仍推罪人)’ 또는 ‘수추죄인(囚推罪人)’과는 처우상 차이가 있었다. 경상감사가 1842년 4월 19일 및 1863년 4월 16일에 도내 살육죄인의 동추 상황을 보고한 장계에 앞의 윤운득이 나온다. 20여 년의 간격이 있음에도 내용은 같다. “현풍 윤운득, 전에 받은 형문 125차, 결안하여 이미 계문(啓問)하였음. 위 사람은 심조이를 목 졸라 살해한 사연을 추고할 차 신묘(1831) 7월 초1일 수감.”²²⁾ 1842년은 결안절차를 마친 윤운득은 ‘상복을 기다리게 한다’는 처분이 있었던 헌종 8년이다. 즉 결안죄인이 된 때부터 20년 동안 추가적인 형추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다. 결안죄인은 이미 죄상을 낱낱이 자백하고 결안까지 받은 자이므로 계속해서 형신을 가하고 추핵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다. 반면, 통상의 잉추 처분을 받은 죄인은 원칙적으로 매달 3차의 형신을 받았다.

5. 사형죄인에 대한 심리

1867년 간행된 『육전조례』에는 사형죄의 상복과 계복절차에 관한 규정이 이어 ‘심리’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²³⁾

○ 소결은 왕의 특교가 있으면 시행한다. 의금부와 형조에서 각각 소관죄인에 관하여 문

21) 『일성록』 헌종 8년(1842) 1월 22일, 8월 9일, 고종 10년(1864) 7월 9일.

22) “玄風 尹云得, 前受刑問一百二十五次, 結案已啓聞. 右人段, 沈召史縊殺辭緣推覈次, 辛卯七月初一日囚.” 壬寅四月十九日, 慶尙監營->承政院, 各司謄錄 11, 慶尙監營啓錄 7(498d ~ 501b); 癸亥四月十六日, 慶尙監營->承政院, 各司謄錄 11, 慶尙監營啓錄 1(3d ~ 5a).

23) 六典條例·刑典·刑曹·詳覆司·審理: ○ 疏決有特教乃行. 文書, 自該府·本曹修正. [六房承旨·時任大臣·禁府刑曹堂上·三司, 以黑團領入參, 原任大臣或特教入參.]

○ 邦慶或值悶旱, 因傳教或筵稟, 審理京外獄囚, 罪疑傳生酌處, 各道配囚輕罪者酌放. [判堂就諸道錄啓文案, 潛心究理, 可以傳生者, 或依前訊推者, 具意見覆啓. 知委諸道, 未錄啓者, 亦爲修啓.]

서를 작성한다. 육방승지, 현직 대신, 의금부와 형조의 당상관과 삼사의 관원은 흑단령을 입고 참석한다. 전직 대신도 특교가 있으면 참석한다.

○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심한 가뭄을 당하면 전교 또는 경연에서의 품지에 의하여 서울과 지방의 죄수를 심리한다. 죄상에 의문이 있어 살릴만한 경우는 참작하여 처결하고[酌處], 각 도의 정배죄인 중에서 죄가 가벼운 자는 참작하여 석방한다[酌放]. 형조판서와 당상관들이 각 도의 녹계문안을 깊고 신중하게 살펴서 살릴만한 자(可以傳生者)와 그대로 신주할 자(依前訊推者)를 가려 의견을 갖추어 복계(覆啓)한다. 또한 각 도에 알려 아직 녹계되지 않은 자도 역시 문안을 작성하여 계문하도록 한다.

조선시대에는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나라로 경사가 있으면 임금의 ‘서울과 지방의 원옥(冤獄)을 심리하라’ 또는 ‘죄수를 소결하라’는 명을 내렸다. 『육전조례』의 심리·소결은 담당관사의 소관 죄인들에 대한 심리를 거쳐 임금이 직접 처결에 관여하는 심리·소결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사형수나 정배죄인과 같이 중한 죄인이 그 대상이 된다. 그중 ‘소결’은 임금이 전좌한 가운데 계복의 의례에 준하여 거행하는 소결을 가리킨다. 현종~영조대 기록에서는 ‘친림소결’(親臨疏決) 또는 ‘탐전소결’(榻前疏決)이란 말이 자주 나오며, 영조대, 정조대 기록에서는 “전좌소결”(殿座疏決)이라는 표현도 나온다.²⁴⁾ 한편, 위 규정에서 ‘심리’는 정조대 이후 사형죄인을 대상으로 일 반적으로 시행된 심리이다. 관찰사와 형조는 소관 사형죄인을 심리하여 문안을 준비하고, 형조로 취합된 문안을 형조 관원이 검토하여 그중 ‘의전신추’(依前訊推) 즉 계속 신문할 자와 부생(傳生) 즉 살려줄 자로 나뉘 의견을 붙이고 계본을 올리면 임금이 이를 살펴보고 판부를 내린다.

『육전조례』에는 대역죄인의 상복과 계복, 전좌소결, 심리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지만, 전좌소결은 정조 1년 5월, 계복은 정조 3년 11월을 끝으로 더 이상 거행되지 않았다. 『육전조례』가 간행된 시점에 실제로 시행되고 있었던 것은 ‘심리’ 하나였다.

Ⅲ. 살옥안 심리 관련 기록 현황과 장계등록의 가치

1. 살옥안 관련 기록의 현황

살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기록이 생산되고 일부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24) 『승정원일기』 영조 50년(1774) 5월 7일 기미.

형옥 관련 자료는 19세기의 것이 가장 양이 많음에도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심리의 시대’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심리록』은 심리의 시대를 상징하는 기록이다. 『흙흙신서』에도 정조의 판부가 다수 실려 있다. 『심리록』은 기본적으로는 앞서 제3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왕의 판부, 그중에서도 주로 부생(傅生)으로 처결한 판부를 묶은 것이다. 간단한 개요와 죄목 그리고 판부의 내용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험-성옥-동추-녹계-형조회계 등을 거쳐 최종 판부에 이른 경위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19세기에는 『심리록』과 같은 기록이 없다. 대신에 『일성록』에 실려 있는 방대한 양의 살육안처리기록을 이용하면 적어도 순조~철종대에 중앙정부에 보고되고 처리된 살육사건 대부분에 대한 기록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정조의 판부와 같은 자세한 판부는 기대하면 안 된다. 순조 말년에 대리청정한 효명세자의 몇몇 판부를 제외하면, 19세기의 왕들은 기본적으로 형조의 계언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일성록』에서 1801년~1893년 사이에 부대시에 해당하는 사건기록을 제외하고 약 5,200건의 살육안 처리기록을 찾을 수 있다. 이는 2,700명의 죄인에 대한 것이다. 이들 죄인에 대한 일련의 처분 기록을 연결하고 전체를 조망할 때 심리의 시대가 모습을 드러낸다.²⁵⁾ 그러나 『일성록』의 사건기록은 관찰사의 장계와 형조의 회계복계에서 결론 부분을, 그것도 핵심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기록만 가지고는 풍부한 사례분석을 할 수 없다. 『추조결옥록』의 사건기록에 약간 더 정보량이 많지만 큰 의미는 없고, 기록이 없는 해가 많다.

검험 기록인 검장(檢狀)과 몇몇 관찰사들이 남긴 일록을 통해 일선 현장의 상황과 실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현존하는 검안은 대부분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것이고 18세기와 19세기 전반의 검안은 그 수가 많지 않다.²⁶⁾ 더구나 성옥 이후에 어떻게 사건이 처리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결정적 한계가 있다. 참고로, 갑오개혁 후 신식 사법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통상의 살육죄인에 대해 사형이 선고, 집행되고 있었다.²⁷⁾ 따라서 이때의 기록으로 19세 초

25) 유승희는 『일성록』에 담긴 방대한 행정 기록의 가치를 인식하고, 『심리록』, 『일성록』, 『추조결옥록』과 비교하고 『일성록』을 이용하여 정조~철종대의 범죄발생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유승희, 『18~19세기 漢城府의 犯罪實態와 葛藤樣相 : 『日省錄』의 死刑犯罪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정조대~철종대, 한성부 사형범죄의 실태와 민의 갈등양상: 『일성록』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제41집, 2007. 다만, 유승희의 연구는 범죄 발생현황과 범죄양상 등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글과 같이 사건의 처리 및 최종적인 결과를 살펴보는 데는 부족하다.

26) 김호, 『100년전 살인사건: 검안을 통해 본 조선의 일상사』, 후마니스트, 2018, 15면.

27) 예를 들어 광무 2년(1898) 8월 9일 법부대신이 한성재판소 심리 살육죄인 12명, 충청남도 재판소 심리 살육관련 죄인 29명을 모두 교형에 처하는 건을 상주하여 재가를 받았다. 『관보』 제1029호, 광무 2년, 8월 16일.

중반의 상황을 예단하면 곤란하다.

『완영일록』과 같은 자료는 관찰사의 사건처리 모습을 가까이 볼 수 있게 해준다.²⁸⁾ 살변이나 사망사건의 검안을 검토하여 지시한 기록이 매우 많은데, 대부분은 자살, 사고사, 병사, 또는 사망에 책임이 인정되기는 해도 살육은 아닌 것으로 사건 관계자들을 작처한 기록이고, 실제 성육된 사건은 매우 드물다. 김선경의 분석에 따르면 살변으로 관찰사에 보고가 올라온 총 96건 중 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에 보고된 것이 5건이다.²⁹⁾ 『완영일록』의 1833년 기록에는 서유구가 9명의 죄인에 대해 작성한 심리장계와 사계의 발사(跋辭)가 실려 있는데, 같은 시기 『일성록』에도 그 9명의 심리 기록이 있다. 그중 서유구가 전라감사로 있을 때 검장에 제사하고 성육과 동추를 거쳐 장계까지 마친 죄인은 함열현(咸悅縣) 죄수 김지팽(金之彭)이 유일하다.³⁰⁾ 1833년 8월에 검안에 제사하여 성육을 지시한 장성부(長城府) 살육정범 장해원(張海元)은 1835년에 후임 전라감사 김홍근이 녹계하였고, 마지막 기록인 1842년 7월 형조의 호남살육안 복계 기사에서도 잉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³¹⁾ 1815년 2월에 피해자를 위궤치사(익사)케 하여 수금된 익산죄수 최평군(崔平軍)은 1821년 7월(전라감사 이서구 재임), 1831년 3월, 1833년 10월(서유구 재임)에 계속 잉추의 처분을 받다가 1835년 12월 11일(김홍근 재임)에 감형되었다. 여기서 드러나듯이, 『완영일록』과 같이 재임 1~2년 동안의 기록으로는 하나의 사건을 추적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검장에 대한 제사는 기재되어 있으나 검장 소상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전임 관찰사 시설에 성육되어 추문 중인 죄인이 어떤 경위로 성육되고 그동안 몇 차례 녹계와 심리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이와 비슷한 기록으로 서유구와 동시대의 관료인 정원용(鄭元容)의 『유경록』(惟輕錄)이 있다.³²⁾ 정원용은 정조의 행정론을 적극적으로 계승하려 한 인물이다.³³⁾ 『유경록』에는 그가 형조판서(1831.4.~1832.9)와 평안감사(1833.11.~1835.7)로 있을 때 취급한 살육안에 대한 제

28) 김선경, 「1833~34년 전라도 지역의 살육 사건과 심리: 완영일록의 분석」, 『역사교육』 122, 2012; 심희기, 「19세기 조선 관찰사의 사법적 행위의 실증적 고찰」, 『고문서연구』 58권, 2021.

29) 김선경, 95-96면.

30) 영암 金成用 경인(1830) 9월 21일 囚, 남평 金召史 신묘(1831) 3월 21일 囚, 부안 김수홍 신묘(1831) 4월 19일 囚, 진안 金於仁老味 갑신(1824) 정월 13일 囚, 영암 박재풍 신묘(1831) 6월 12일 囚, 전주 鄭召史 신묘(1831) 6월 19일 囚, 익산 최평군 을해(1815) 6월 28일 囚, 함열 金之彭 계사(1833) 6월 성육, 장성 金福右 신묘(1831) 6월 범행. 『완영일록』 권 1, 계사(1833) 6월 26일, 7월 26일, 8월 3일. 권2 계사(1833) 11월 29일. 『일성록』 순조 33년(1833) 10월 5일, 12월 28일, 34년(1834) 1월 8일.

31) 『완영일록』 권1, 계사(1833) 8월 초4일. 『일성록』 헌종 1년(1835) 12월 11일, 헌종 8년(1842) 7월 5일.

32) 연세대에 5책본과 1책본이 소장되어 있다. 5책본은 평안감사 시기, 1책본은 형조판서 시기의 기록이다.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해제 X』, 2008, 평민사, 289-300면.

33) 김호, 『정조의 법치』, 후마니스트, 2020, 249-265면.

사, 발사, 기사 등을 묶은 것이다.

2. 장계등록 자료의 가치와 사건기록의 재구성

심리의 시대에 살육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죄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다량의 사건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일성록』을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나머지 기록들은 사건처리의 각 단계에서 해당 작성 주체의 시야 안에 들어온 것을 보여준다. 『일성록』의 기록으로 뼈대와 줄기를 만들고 다른 기록들로 구체성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장계등록 자료를 이용하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 제1단계부터 제3단계에 이르는 진행경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DB의 각사등록에 있는 각도 장계등록 자료에서 모두 64개의 살육안 장계를 찾을 수 있다([부록]). 이 장계들은 정조 3년(1779)에 마련되어 정조 6년(1782)년에 보완된 심리장계규식(審理狀啓規式)에 따라 작성되었다.³⁴⁾ 그 내용을 소개하면, 먼저 살변의 발생을 신고하는 시친(屍親)의 고장(告狀)이나 면암·이임의 수본 내용을 간략히 적는다. 이어 초검의 검안 개요가 나온다. 상처와 실인, 검험을 행한 날짜, 시친, 정범, 간범, 간련 등의 조사, 초검관의 결사(結辭)의 순서로 적는다. 조사에는 문목을 제외하여 각인의 조사만 기재하지엽적이고 잡다한 내용을 생략하고 긴급(緊關)한 것을 기재한다. 복검도 초검과 마찬가지로 기록한다. 복검관의 결사에 이어 도신(道臣)의 제사를 기재한다. 삼검, 사검, 회사 등이 시행된 경우 초복검과 같은 요령으로 기록한다. 동추의 조사는 일일이 기록할 필요 없고 진술이 달라지거나 중요한 것을 기재하고, 달라지거나 중요한 진술이 없으면 제1회 동추[初同推]의 조사만 기재한다. 완결한 장계에 도신의 발사를 기재한다. 그 과정에서 순영(巡營)에서 의문을 제기하여 재조사하거나(起疑行查) 추관(推官)이 의견을 내어 논보(論報)한 것은 모두 기록한다. 또한, 시친이나 정범의 가속이 억울함을 호소함에 따라 행사(行查)하는 때 그 원정(原情), 형조의 회계, 본도의 발사, 본조의 복계를 모두 자세히 기록한다.

심리장계에는 검안의 내용이 군더더기 없이 기록되고, 검험관의 결어, 관찰사의 제사와 발사, 형조의 계사가 거의 그대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 정보량이 많고 구체적이다. 『일성록』과 『추조결옥록』 기록에 있는 도신 발사와 형조의 계사는 시대를 내려올수록 축약되는 경향이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장계기록 1861년 3월 30일자 황해감사의 토산 김창준에 대한 심리계

34) 『일성록』 정조 3년(1779) 1월 30일 「命單抄冊子待獄案規式知委八道」, 『秋官志』 詳覆部, 審理上, (補)審理狀啓規式.

본은 이두를 제외하고 총 690자인데, 『추조결옥록』 같은 해 7월 기사에서는 불과 45자로 축약되고, 『일성록』 같은 해 7월 27일자 형조의 각도 살옥안 복계 기사에서는 관찰사의 장계가 아예 빠져있다.³⁵⁾

[부록]에는 해당 장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혀놓았다. ‘심리의 명’이라 한 것은 장계등록 자료에서 심리를 거행하라는 왕명에 따라 도내의 살옥안을 심리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통상 이미 녹계한 사안뿐 아니라 미녹계 사안도 심리하여 장계하라는 명이 내려진다. ‘도입후 심리’라 한 것은, 헌종 1년(1835) 6월의 수교에 따른 것으로 신임 관찰사는 부임 후 3개월 내 기녹계미녹계를 불문하고 일일이 자세히 심사하여 참작할 점이 있으면 논리게문하여야 한다.³⁶⁾ 이는 관찰사가 교체되면 신임 관찰사가 일정한 기한 내에 도내의 녹계문안을 심리할 것을 의무화한 정조 9년(1785) 4월의 수교를 보강한 것이었다.³⁷⁾ 재해 발생 등을 이유로 한 심리의 명이 없더라도 관찰사의 교체와 도내 사죄안건의 심리를 연계시킨 획기적인 방식이었다. ‘도입심리-철안’이라 한 것은 도입 후 심리한 녹계안 중에서 ‘철안(鐵案)’으로서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無容更議)으로 죄인의 명단만 보고하고 별도로 장계하지 않은 것이다.

장계등록에는 심리장계 외에 3개월에 한 번씩 장계로 보고하는 도내 각읍의 사형수 동추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심리장계의 죄인에 대한 동추기록도 상당수 있다. [부록] 43년 황해도 연안의 방노질금(方老叱金)의 ‘경과 2’의 마지막이 ‘66.10(동추중-형문78차)’인데, 이는 방노질금에 대한 최종기록이 1866년 10월의 도내 각읍의 동추 상황 보고로 끝나고 방노질금은 전달인 9월까지 총 78차의 형문을 받았음을 뜻한다. 방노질금은 1848.10월 성옥이 되었으므로 18년 동안 계속 동추 중인 것이다. 그럼에도 형문은 78차, 즉 산술적으로 26개월간의 회차(2.1년)에 불과하다. 1866년 7월과 10월의 황해감영의 읍내 살옥죄인 동추상황 보고를 보면, 방노질금의 신병(身病)으로 그달의 동추를 거행하지 못했다는 보고가 이어진다.³⁸⁾

[부록] 60번의 황해도 해주 윤영대는 기록이 1867년 1월에 물고(物故)한 것으로 끝난다. 윤영대는 1865년 8월에 성옥이 되어 10월부터 동추를 받았는데 계속 범행을 부인하여 매우 교악(狡惡)하나 더욱 엄형을 가하여 기어이 득정(得情)하라며 엄한 신문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1866년 8월에 아내 이조이가 격쟁하여 형조의 회계에 따라 자세히 조사하라는 판부가 내려왔고, 같은 해 11월 조사를 거쳐 12월 4일에 관찰사는 검험의 실인에 의문을 표하며 품계의 취

35) 『추조결옥록』 철종 12년 7월, 「黃海前監司 申錫禧 審理啓本 錄啓罪人 三名 稟處罪人三名」, 『일성록』 철종 12(1861) 7월 27일 「秋曹以各道殺獄案覆啓」

36) 『일성록』 헌종 1년(1835) 6월 20일 「飭京外獄囚審理疏放」

37) 『정조실록』 정조 9년(1785) 4월 10일.

38) 曹錫興(黃海監司), 丙寅七月十三日封, 丙寅十月初十日封, 각사등록 23, 黃海監營狀啓謄錄 17.

지로 사계를 보냈다. 윤영대는 12월 24일부터 고통을 호소하다가 이듬해 1월 7일 자시경 옥중에서 사망하였다.³⁹⁾ 살길이 막 열리는 시점에 사망한 것이다. 『일성록』에는 윤영대의 심리 기록이 없다. 관찰사의 사계가 최초의 장계였는데 형조의 검토하여 계문하기 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44번 서흥 죄수 윤치오(尹致五)는 김길손을 발로 차고 밟아죽인 죄로 1850년 1월에 성옥되어 계속 신추를 받아가 1860년 윤3월에 물고하였다. 장계등록에는 심리장계가 있는 2명을 포함하여 살옥죄인 28명의 물고기록이 있다.

한편, 25번 봉산 노갑득(魯甲得), 26번 황주 박성근(朴聖根), 47번 해주 김낙서(金洛西), 51번 이대룡(李大龍), 54번 김창준(金昌俊)의 경우 ‘경과 2’의 기록이 ‘방송 추정’으로 끝난다. 심리기록상 모두 감형된 것이 확인되는데, 『추조결옥록』의 각도 미방미수계(放未放修啓) 등으로 석방된 정배죄인 명단에서 지역은 다르지만 같은 이름이 나온다. 김낙서, 이대룡, 김창준의 경우 ‘살옥작처’(殺獄酌處)라고 표시되어 동일인임이 거의 확실하다.⁴⁰⁾ 동일인이 맞다면, 김낙서는 성옥 9년 후 감사정배되어 다시 4년 후 방송, 이대룡은 성옥 2년 후 감사정배되어 2년 후 방송, 김창준은 성옥 6년 후 감사정배되어 2년 후 방송된 것이다.

[부록]의 최종결과를 집계하면, 잉추 17명(26.6%), 감형 21명(32.4%), 특위방송 20명(31.3%), 물고 2명(3.1%), 미상 4명(6.6%)이고, 감형된 자 중에 5명은 추후 석방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글에서 소개할 예정이지만, 순조~고종대 살옥죄인 기록의 최종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상과 같이 장계등록과 일성록, 추조결옥록의 기록을 통합한 64개의 사건기록은 심리의 시대에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일성록』의 방대한 사건기록에 담긴 심리의 시대의 다양한 모습을 64개의 사건기록이 하이라이트처럼 보여주는 것 같다. 64개의 기록은 고종대에 편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심리의 시대를 전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창문이 되기에 충분하다.

3. 심리의 시대의 한 단면: 사형 판결 없는 사형죄인 처리와 징벌

64개 사건의 최종결과에서 감형과 특위방송이 각각 32.4%, 31.3%로 전체의 63.7%를 차지

39) 曹錫興 (黃海監司), 丁卯正月初八日封, 각사등록 23, 黃海監營狀啓謄錄 17.

40) 『추조결옥록』에서 1884년 10월의 임오년 이후 절도위리안치자 외의 공사죄인을 방송한 기사에 전라도 ‘나주 노갑득’, 1889년 1월의 각도 방미방수계 기사에서 전라도 ‘진안 박성근’이 나온다. 1863년 9월의 각도 방미방수계 기사에서 강원도의 방질(放秩) 중 “金洛西 石召史 李長伯 金昌俊 李大龍 殺獄酌處”이 있다. 『추조결옥록』 18권 19면, 36권 39면, 39권 1면.

하고 있다. 『심리록』의 인명사건의 최종 형량을 분석한 심재우의 연구에 따르면, 감형과 석방은 각각 44.6%, 32.3%로 합치면 전체의 76.9%를 차지한다.⁴¹⁾ “관형과 용서”라는 정조의 인명 사건 판결의 특징⁴²⁾은 19세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죄인을 부생할 수 있는 사정을 가리키는 용어로 ‘죄의유경’과 관련되는 ‘가의(可疑)’, 참작하고 용서할 만한 ‘가원(可原)’, 불쌍히 여길만한 ‘가궁(可矜)’ 등이 있다. 죄인을 부생하는 처결기록을 통해 유형별로 분류하거나 감경을 논하는 논변의 특징 등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 보면 이 시대의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을 놓치게 된다.

심리의 시대의 살육죄인에 대한 판결은 ‘관형과 용서’라는 특징이 있지만, 이는 ‘사형 판결 없이 사형죄인을 처리하고 징벌한다’는 맥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관형과 용서’의 배경에 문면에 나타나는 감경사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의 경과와 대체수단에 의한 징벌이라는 요소도 작용하고 있었다.

47번 해주 김낙서의 사례를 보자. 김낙서는 1852년의 관찰사의 녹계부터 1858년의 형조 복계까지 거듭 잉추로 처결되다가 1859년 5월에 감사정배 되었다. 김낙서는 김준행의 아랫배를 발로 차 다음날 사망케 한 죄로 성옥되었다. 시친의 주장에 따르면, 김준행이 언행이 불손한 김유연(김준행의 외조카, 김낙서의 조카)을 꾸짖고 때렸는데, 김낙서가 주막에서 우연히 김준행을 만나 조카가 구타당한 일로 다투다가 김준행을 마구 발로 차 김준행이 쓰러졌고, 집까지 업혀온 김준행은 말과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랫배 급소 부위가 찢터하고 당긴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설사를 하여 여러 민간요법을 써보았으나 다음날 사망하였다. 김낙서는 김준행이 술에 취해 갑자기 자신의 상투를 붙잡고 끌어당겨 단지 피하려 했고 발로 가격한 일이 없으며 김준행이 평소 술병을 앓는 등 지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간증 중에 김낙서가 김준행의 상투를 잡고 마구 발로 찼다고 증언한 자와 김낙서가 대질하기도 하였다. 1852년 7월 관찰사의 장계(녹계)는 단호하였다. 김낙서가 사돈의 정을 무시하고 김준행의 상투를 잡고 주먹과 발로 가격하여 그로 인한 상처과 복부의 통증이 치명의 원인이 된 것이 검장에 기록되어 철안(鐵案)이 되었고, 여러 사증의 진술도 일치하고 명백하다는 것이다. 이후 이어지는 형조의 복계도 같은 취지로 김낙서는 마땅히 상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1859년 김낙서의 처 정조이의 세 번째 격쟁에 대한 판하에 따라 형조가 원안(原案)을 다시 고열하여 유경(惟輕)의 취지로 계언하였다. 즉, 외삼촌(김준행)이 외조카(김유연)을 꾸짖은 것에 숙부(김낙서)가 조카(김유연)을 보호하려 한 것은 참작할만하고 말다툼하다 험한 말을 한

41) 심재우, 앞의 책, 234-35면.

42) 위의 책, 244면.

것은 그 사실을 논하면 일시의 조그만 잘못(微愆)에는 해당하나 반드시 상해하려는 마음(必傷之心)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정(情)을 헤아리면, 10년 동안의 체수(滯囚)로 무망(無妄)의 죄를 족히 징치하였고 (김준행이) 평소 이질로 고생하였다고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발로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술집 주모의 증언이 수미일관하여 그 심극(審克)의 도에 있어 유경의 은전을 베풀어 마땅하다.”⁴³⁾

형조의 기사에서 언급된 것들은 이때 처음 발견된 것이 아니다. 이미 검험 당시 김낙서가 주장하고 주모 이조이가 진술한 내용이다. 성옥 후 9년 동안 단순히 죄를 모면하려는 말에 불과하다며 이미 철안이 되었다고 하다가 갑자기 유경의 사유로 거론되었다. 그렇다면 그 전의 과관찰사와 형조는 오판하였거나 심리미진이었는가? 이 시대의 현상은 전반적인 기강 해이, 정규 제도의 기능부전의 결과인가? ‘10년의 체수(滯囚)로 족히 죄를 징치하였다’는 대목에 주목해보자.

앞서 언급한 54번 김창준의 사례를 보자. 김창준 이기후를 발로 차 죽인 죄로 1855년 4월에 성옥되어 6년 후인 61년 7월에 감사정배되었다(2년 후 석방 추정). 황해감사의 최초의 녹계에 형조도 신추 의견이었다. 이 사건은 검험 당시부터 김창준과 이동성 중 누가 이기후를 구타했는지가 초점이었다. 이기후가 죽기 직전 ‘이동성에 복수해달라’고 말했다고도 하고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도중에 변하기도 하였다. 초검과 복검에서 김창준의 정범 지목 근거가 부족하여 초검관과 복검관의 회사를 거쳐 김창준이 정범이란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는 김창준이 이 고장의 강호한 족속이고 이동성은 아둔하고 홀로 의지할 곳 없는 자인데, 일부 증인들이 사사로운 마음으로 김창준에 유리한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며, 이동성에 복수해달라는 이기후의 말은 임종 직전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한 것이므로 신빙할 수 없다는 등의 판단이 작용하고 있었다.

1859년 2월 김창준의 아내의 격쟁으로 재조사를 한 관찰사는 품계의 취지로 장계하였으나 형조는 관찰사가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의견이 없지 않지만, ‘기결된 안을 경솔히 의론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1861년 7월의 심리계본에 대한 회계에서는 유경의 의견으로 돌아섰다. 검험 2번, 회사 1번, 격쟁안 판하에 따른 재조사 1번 등에서 실인은 명백하지만 여전히 정범을 집정(執定)하는 데 의문점이 있으며 “성옥된 지 10년 가까이 지났으나 정범은 아직도 두 사람 중 의문이라면 죄인을 애궁하되 벌하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 있어 죄의유경에 합당하다”고 하였다.⁴⁴⁾

43) “原其情，則十年滯囚，足懲無妄之罪，常患痢疾苦苦，是當者之前後鳴冤，不見足踢的的，有主婆之首尾參證，其在審克之道，合施惟輕之典。” 『일성록』 철종 10년(1859) 4월 9일.

두 개의 사례를 들었지만, 비슷한 사례가 많다. 두 명의 죄인은 9~10년간 미결 상태에서 신문받다가 감형이 되었다. 두 사례는 익히 알려진 채옥의 폐단을 예증하는가? 간단히 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심리의 시대는 사형이 있음에도 사형을 쓰지 않는 시대였다. 120년 이상 삼복제도를 쓰지 않은 사실은 혹시 국가가 사형판결을 내릴 기회를 스스로 단념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닐까? 이 시대 살옥죄인에 대한 형정에서 ‘잉추’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죽이지 않고 살려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감옥에서 살아가는 고통을 준다’는 것이다. 이 채수의 고통 속에서 죄인이 죄값을 치르고 죽은 원혼도 위무하는 것이다.

[부록]에는 없지만 하나의 사례를 소개한다. 경상도 상주 살옥죄인 배중식(裴仲直)은 유증을 발로 차 13일째 치사하게 하여 1827년 3월 성옥되었다. 경상감사는 의문을 제기하여 유경(疑輕) 의견으로 품계하였다. 효명세자(익종)는 1828년 12월의 심리에서 “관찰사 발사는 유경으로 하였고 그렇게 해도 부생지념(傳生之念)을 해하지 않지만, 형조의 의론이 명확하고 상세하여 절옥(折獄)의 원칙에 부합한다. 죽은 자의 원통함도 또한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 역시 경위(經緯)를 지키는 논단이다. 신추하여 득정하라”⁴⁵⁾고 판부하였다. 1831년 2월 배중식 옥안이 다시 심리에서도 실인과 성차가 명백하여 계속 신추하여 자복을 받으라는 처분이 내려졌다.⁴⁶⁾ 이듬해 1832년 12월의 심리에서 형조는 배중식을 차올로 할 것을 품청하여 윤허를 받았다. “이 옥사에 대해 전 관찰사는 발사에서 상처가 미미하고 증인의 진술이 서로 다른 점을 들어 부생으로 논했습니다. 본조의 신목(申目)은 고의범으로 논단했습니다. 혹 본래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해도 남의 일을 훼방한 것은 분명하고, 망자의 원통함을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하므로 신추를 청하였습니다. 지금 도신의 발사도 다시 가볍게 처분하기를 청합니다. 하물며 여러차례 심리한 후에야 마땅히 죄의유경의 전을 써야 합니다. 죄인 배중식을 차올로 시행하는 뜻으로 도신에게 분부하기를 청합니다.”⁴⁷⁾ 즉, 형조와 효명세자는 관찰사의 유경의 의견이 근거가 있다고 보면서도 ‘망자의 원통함도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하며 잉추를 택하였다.

[부록]의 죄인들 중 최종결과가 ‘잉추’인 자들은 그 시점까지 신추를 받아면서도 자복을 하

44) “成獄 雖近十年 正犯尙疑兩人 則其在哀矜而勿喜之義 合傳罪疑惟輕之典.” 『일성록』 철종12년(1851) 7월 27일.

45) 『일성록』 순조(익종) 28년(1828) 12월 19일 : 令以 裴仲直獄事 道跋則 置諸疑輕之科 雖不害爲 傳生之念 而觀此秋曹議讞 明的詳確 儘合折獄之體矣 死者幽冤 亦不可不恤者 亦爲守經之論 訊推得情.

46) 『일성록』 순조 31년(1821) 3월 23일: 裴仲直獄事 則踢有的證 傷在要害 一臥旬餘 竟至致命 爲死求償 捨渠而誰 請連訊取服.

47) 『일성록』 순조 32년(1832) 12월 10일: 道臣跋辭 以痕損之甚微 證招之相左 有傳生之論. 本曹申目 以斷以故犯 或非本情顯有作孽 幽冤宜恤 有訊推之請矣. 今道臣跋辭 又請從輕 況於屢經審理之後 宜用罪疑惟輕之典. 罪人 裴仲直 施以次律之意 請分付道臣.

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10년이 넘어가는 자들도 있다. 장계등록 자료 중 각읍 살육죄인의 동추 차수를 보고한 기록을 보면 수백 차례 형문을 받는 죄수들도 있다. 과연 그들은 몇 년 동안 모진 고문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인가? 모반대역죄인, 강상죄인, 사학죄인, 기타 부대시율로 처단된 죄인들은 이들 살육죄인처럼 고문을 견디지 못하여 그렇게 빨리 지만과 결안을 한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된다. 죄인 쪽에서 승복하여 지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쪽에서 필요할 때 죄인으로부터 지만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말이다. 이처럼 『추안급국안』이나 역사드라마의 추국과 고신 장면이 익숙한 우리에게 심리의 시대가 남긴 기록은 시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IV. 맺음말: 번역의 필요성과 가치

심리의 시대는 “흙흙부생(欽恤傳生)은 또한 우리 왕조의 가법[我朝家法]”⁴⁸⁾이란 인식과 지향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것의 자연스러운 전개형태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이다

19세기의 각종 형정 자료는 다름 아닌 심리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시대의 형정 자료를 오독하지 않으려면 그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19세기의 형정 자료에 근거하여 조선 시대 전체나 조선 후기 전체의 형정을 경솔히 논단해서도 안 된다. 조선 후기 사법제도, 법과 사회, 범죄와 형벌의 역사를 다루기 위해서는 ‘심리의 시대’의 경향과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료의 문면에서 말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살육안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격쟁인과 신속한 상명(償命)을 위해 반드시 자복을 받아내겠다고 말하는 형관 모두 ‘죄인을 살려두면서 잉추하고 부생하는 그 시대의 패턴’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참으로 흥미로운 이 시대에 탐색하는 데 현재까지 찾아낸 64개의 사건기록은 좋은 안내서 노릇을 할 수 있다. 이 기록들은 자료집으로 묶으면, 그 자체가 법제사와 사회사 연구를 위한 훌륭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조선 후기 사법제도사, 형정사, 법사회사 등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나 연구자를 위한 매우 유용한 입문용 자료가 될 것이다.

48) 『승정원일기』 영조 49년(1773) 11월 24일: 命書傳教曰, 噫, 三覆慮囚, 其本即漢高三章, 慮戎慮囚, 亦貞觀事. 非特此也, 豈法漢·唐? 欽哉欽哉, 惟刑之恤哉, 尙書攸載, 欽恤傳生, 亦我朝家法.

번역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또 번역할 가치가 있다. 이 기록들이 심리의 시대를 들여다보는 창이라고 했지만, 결코 접근하기 쉬운 자료는 아니다. 법의학 용어, 법령과 단속실무에서 쓰는 술어나 관용적 표현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성록』이나 『추조결옥록』, 기타 다양한 형정 관련 자료에 접근할 때도 같은 문제가 있다.

만약 19세기 단속과 형정에 관한 사료 중 가장 좋은 번역대상을 택한다면 단연코 이 64개의 통합기록이 첫째이고 그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기록은 실제 사례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 19세기 살육안 처리의 경향과 특징을 하이라이트처럼 보여주고 있다. 기록의 질 자체가 전문적 번역의 가치가 있고 파급효과가 크다. 심리장계규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심리장계는 지엽말단적인 것을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되며, 결사, 발사, 회계·복계는 거의 전제한다. 소중한 인명과 지엄한 옥체에 관계되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정련된 표현을 쓴다. 사건과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검험관의 결사, 도신의 발사, 형조의 계사의 의미를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기록을 성공적으로 번역한다면, 19세기의 다량의 형정 자료들에 접근하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8~19세기 목민서의 民訴처리와 民狀 관련 기록의 실태

유승희 (연세대 법학연구원)

1. 머리말
2. 목민서 민소 처리의 내용적 고찰
 - 1) 소지의 접수 및 출급
 - 2) 처분의 신속화: 例題의 활용
3. 민장 기록과 관련 자료의 실태
 - 1) 민장의 기록
 - 2) 19세기 민장자료의 실태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대 지방관이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곱 가지 일[七事] 가운데 ‘詞訟簡’이 있다. ‘詞’는 문서를 갖추어 고소하는 것을 말하며, ‘訟’은 말로 쟁변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사송’이란 민이 자신의 사정을 문서와 말로 모두 드러내어 관에서 聽理하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⁴⁹⁾ 지방관은 이를 위해 공정함을 가지고 사실을 파악해 시비를 결정하되 지체되어서는 안 되었다. 목민서에서는 이러한 民訴 처리를 지방관의 末務라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冤抑이 없는 향촌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송은 지방관이 잘 처리해야 하는 임무 중 하나이며, 자신의 행정 능력을 평가받는 주요 항목이었다.⁵⁰⁾ 아울러 민의 苦樂과도 연결되므로 각종 목민서에서는 이에 대한 처리를 고심하고 밀려드는 소송업무를 수월히 수행하기 위해 각종 지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조선의 경우 16세기 중반이후 사송 판결에 필요한 법전 조문들을 항목별로 뽑아낸 『詞訟類聚』가 편찬되었고, 숙종 대 이를 보완, 수정한 『決訟類聚補』가 간행되는 등 사송법서가 제작, 유통되어 수령의 소송처리 지침서로 활용되었다.⁵¹⁾ 18세기 후반에는 일종의 서식용례집인

49) 「先覺」 添錄 七事提要, “文以告訴 謂之詞 言以爭辨 謂之訟 詞訟者 民之所以盡其情而聽理于官者也.”(『朝鮮民政資料(이하 민정자료)』, 이문사, 1977, 251쪽).

50) 『經國大典』, 吏典 褒貶: 考課.

『儒胥必知』가 간행되었다. 『유서필지』에는 上言, 擊錚原情, 所志, 單子, 告目, 文券 등의 서식 용례와 더불어 민의 분쟁사안에 대한 사례가 함께 실려 있다. 최근에는 서식집의 성격을 떠는 『恒茶飯(古5120-74)』이 발굴, 번역되었다. 이 자료는 19세기 민소가 급증하는 사회 상황 속에서 편찬된 것으로, 당시 민의 갈등양상과 이에 대한 지방관의 처결을 살피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사송법서 및 서식용례집의 편찬은 조선후기 소송이 일상화되는 양상 속에서 배태된 것으로, 향촌 내 분쟁해결을 담당한 지방관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송법서를 비롯해 18세기 이후 『유서필지』, 『항다반』과 같은 서식류가 나타나는 양상 속에서 당시 간행된 목민서의 民訴 처리 방침에 주목하였다. 목민서의 경우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관리들에게 있어 필독서로 수령의 지녀야 할 도덕성 및 행정지침이 제시되었고, 사송법서나 서식용례집, 실제 민이 제출한 소지 등에서 파악할 수 없는 민소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래 조선시대 민소 관련 연구는 소지 및 결송입안에 나타난 민간의 소송양상을 비롯해 규장각내 사송자료의 유형과 활용 문제,⁵²⁾ 민장의 내용 분석을 통한 민간의 갈등 및 好訟 실태, 지방관의 분쟁 처리방식 등⁵³⁾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목민서의 민소처리 지침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은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목민서의 내용 가운데 형정운영에 관한 양상들을 통해 지방관이 행사한 재판, 형벌, 징계 등 사법행정의 관행과 실상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⁵⁴⁾ 또한 목민서에 나타난 지방관의 관민 소통책으로 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鈔筒法과 민장처리 방식을 살펴보았으며,⁵⁵⁾ 題辭

51) 박철상, 「조선시대 詞訟法書의 編刊과 傳承」, 『大東漢文學』 54, 대동한문학회, 2018, 235~290쪽.

52) 沈載祐, 「규장각 소장 刑獄·詞訟類 도서의 유형과 활용」, 『書誌學報』 24, 韓國書誌學會, 2000.

53) 金仁杰, 「『民狀』을 통해 본 19세기 전반 향촌사회문제」, 『韓國史論』 2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0; 金仙卿, 「『民狀置簿冊』을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재판제도」, 『역사연구』 1, 구로역사연구소, 1992; 박명규, 「19세기 후반 향촌사회의 갈등구조; 영광지방의 민장내용분석」, 『韓國文化』 14, 서울대학교 韓國文化研究所, 1993; 趙允旋, 「조선 후기의 田畝訟과 法的 대응책-19세기 民狀을 중심으로-」, 『民族文化研究』 29,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96; 鄭勝振, 「靈光 『民狀置簿冊』의 분석」, 『동방학지』 113, 2001; 최윤오, 「재판으로 만나본 조선의 백성 -충청도 진천 <사송록>-」, 『해안』 2013; 심재우, 「조선 후기 충청도 연기지역의 민장과 갈등 양상 -1858년 『사송록(詞訟錄)』 분석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3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문준영, 「19세기 후반 지방사회에서 민소와 청송실무-전라도 영광군 민장치부책의 분석」, 『법학연구』 60권 1호, 부산대법학연구소, 2019; 고민정, 「19세기 강원도의 사회상 고찰을 위한 民狀置簿冊 기초 연구-하버드 연청연구소 소장 『江原道各郡狀題』를 중심으로」, 『韓國學論叢』 55, 國民大學校 韓國學研究所, 2021.

54) 沈載祐, 「朝鮮後期 牧民書의 편찬과 守令의 刑政運營」, 『奎章閣』 21, 서울대학교 奎章閣, 1998; 심재우, 「조선후기 수령의 법적 지위와 형벌권 행사의 실상: 『목민심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9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

55) 김경숙, 「안정복의 民願政策과 官民疏通」, 『고문서연구』 43, 한국고문서학회, 2013; 홍해뜸,

를 분석해 관속-민, 양반-민의 갈등처리 원칙과 지방 내 수령의 정치구상을 살펴보기도 하였다.⁵⁶⁾

이 글에서는 선행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18~19세기 목민서 상에 제시된 민소처리 지침과 민장 관련 기록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종래 목민서 내 민소처리에 대해서는 관민소통의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살펴본 경향이 있다. 이글에서는 민이 소를 제기하는 소지제출에서 최종 관의 처결을 받아 출급되기 까지 민소 처리에 따른 목민서의 지침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야만 목민서가 제시한 민소처리의 방향성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남아 있는 19세기 민소관련 기록인 민장 자료의 실태와 특성을 살펴보고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19세기 민소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사송간’을 향한 지방 행정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목민서 민소 처리의 내용적 고찰

1) 소지의 접수 및 출급

조선시대 지방관은 국왕을 대신하여 정치의 근본인 민을 위하고[爲民], 사랑하며[愛民], 보호하는[保民] 대상으로 이해하고 군현 통치를 위해 사법, 행정, 군사 면에서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지방관 업무의 중요성으로 중앙정부 또한 조선초기부터 이들의 선임, 평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정무 능력을 판단하였다. 국왕 역시 신임 지방 관원에게 수령칠사의 인지여부를 확인하고 이의 이행을 신칙하였다.⁵⁷⁾ 영조는 수령칠사 중 ‘사송간’을 가장 우선적인 수행 사항으로 지목하며, 그 실현을 위해 聽訟의 상세함과 엄정함을 요구하였다.⁵⁸⁾ 또한 지방관의 교체과정에서 민이 입게 되는 사송 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임 지방관의 署經을 즉시 거행해 부임이 지체되는 폐단을 막도록 했다.⁵⁹⁾

한편, 목민서의 간행도 활발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중국의 목민서를 수입, 활용했으므로 내용

「조선후기 수령의 향촌통치의 관민소통책-18세기 목민서를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49, 2015.

56) 홍해뜸, 「조선후기 목민서의 제사(題辭) 비교와 수령정치 구상」 『韓國思想史學』 64, 韓國思想史學會, 2020.

57) 『영조실록』 권113, 영조 45년 12월 20일(무진); 『영조실록』 권115, 영조 46년 12월 6일(무인).

58) 『비변사등록』 118책, 영조 23년 11월 10일.

59) 『비변사등록』 146책, 영조 40년 10월 20일; 25일.

에 조선의 현실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 시기 목민서로는 송대 眞德秀가 편찬한 『四事十害』, 명대 朱逢吉이 편찬한 『牧民心鑑』이 널리 이용되었다. 원나라 劉意가 편찬한 『府縣官箴』도 지방관에 제수된 자가 읽어야 할 서적 중 하나였다. 이 가운데 『목민심감』은 지방관을 새로 제수할 때에 『경국대전』과 함께 시험서로 이용되는 등 조선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⁶⁰⁾

조선의 현실에 맞게 지방관이 갖추어야 할 태도, 자세, 역할 등이 목민서에 투영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말 이후이다. 유희춘은 『治縣須知』에서 지방관으로 고을을 다스리는 데에 알아야 할 것들을 律身, 御史, 牧民聽訟, 求言用人, 治姦勸善, 謁聖興學, 待士接賓, 篤親念舊 등 8개 항목으로 구분해 서술하였다.⁶¹⁾ 정철은 『諭邑宰文』에서 수령이 해서는 안 될 것으로 斷獄不公, 聽訟不審, 淹延囚繫, 慘酷用刑, 重疊催稅, 科罰取財, 汎濫追呼, 招引告訐, 縱吏下鄉, 低價買物 10가지를 거론하였다. 이는 『사사십해』를 쓴 진덕수의 생각과 조선의 지방행정에서 나타난 폐단을 혼합한 것으로, 지방관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이었다.⁶²⁾

이러한 목민서는 18세기 이후 활발하게 간행되었다. 18세기에 나온 것으로는 안정복의 『臨官政要』, 홍양호의 『牧民大方』 외에 저자 미상의 『治郡要訣』, 『牧民考』, 『七事問答』, 『先覺』 등이 있다. 19세기의 것으로는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비롯해 『四政考』, 『居官大要』, 『牧綱』 등이다.⁶³⁾ 그 중 『선각』은 주봉길의 편찬한 『목민심감』과 李元翼이 수령으로 부임한 조카 이덕이에게 보낸 편지, 편자 자신의 생각을 결합해 지방관의 통치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이 책은 『칠사문답』, 『居官要覽』, 『政要』 등 많은 이본이 있어 18세기 이후 조선사회에 널리 보급, 활용되었다. 『목민고』⁶⁴⁾는 조선의 현실을 토대로 이에 맞게 지방관의 책

60) 정호훈, 「15~6세기 牧民書의 전개와 牧民學」, 『한국사상사학』 36, 한국사상사학회, 2010, 268~272쪽.

61) 『眉巖集』 卷4, 庭訓外篇下 治縣須知.

62) 정호훈, 「앞의 논문」, 2010, 298쪽.

63) 목민서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보면 대체로 조선시대 간행된 목민서를 선각류, 목민고류, 기타 독자적 저술로 분류하고 있다. 선각류로는 『先覺』, 『七事問答』, 『居官要覽』 등을, 목민고류로는 『治郡要訣』, 『牧民考』, 『四政考』, 『居官大要』, 『牧綱』 등을, 기타 독자적 저술로는 『臨官政要』, 『牧民大方』, 『牧民心書』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목민서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김용흠, 「18세기 『牧民書』와 지방통치-『牧民考』를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제35집, 2010: 김선경, 「조선후기 목민학의 계보와 『목민심서』」, 『朝鮮時代史學報』 52, 朝鮮時代史學會, 2010: 정호훈, 「15~6세기 牧民書의 전개와 牧民學」, 『한국사상사학』 36, 한국사상사학회, 2010: 김용흠, 「洪良浩 실학사상의 계통과 『牧民大方』」, 『朝鮮時代史學報』 56, 朝鮮時代史學會, 2011: 원재린, 「근기남인계 목민학 전통과 『목민심서』」, 『다산과 현대』 7,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4: 정호훈, 「18세기 목민서(牧民書)의 발달 양상과 『목민심서』」, 『다산학』 28, 다산학술문화재단, 2016.

64) 『목민고』의 경우 장서각본(B12FB11)과 규장각본(古5120-172)이 있다. 규장각본은 장서각본을 바탕으로 이후 새로운 내용을 첨가, 재구성하여 편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서각본에 있는 禁松作契節目, 鉅箚法, 爲政之要, 治郡要法, 政要, 鍊武, 待吏卒, 利川府使韓咸之書, 居官之道, 好隱堂難行訣 등의 내용이 없는 반면, 송시열, 윤증, 이황의 편지가 추가되고, 得人心, 到任, 分糶, 分給料

무의식과 실무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18세기 이후 간행된 목민서에서는 지방관으로서의 의무와 실무지침이 조선 전기의 것보다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으로 서술되었다. 실무지침 가운데에는 지방관의 사법권, 특히 사송 처리에 대한 내용들이 대폭 강화되었다. 『목민고』 규장각본의 경우 첫 항목인 「居官大要」에서 수령에 의한 지방통치의 중요성과 自治를 위한 학습방법을 제시했는데, ‘到任’, ‘坐衙’, 다음으로 ‘聽訟’의 항목을 마련했으며, 장서각본에서는 ‘未到前雜細事宜’, ‘到任後事’ 다음으로 ‘民訴’를 제시하여 사송처리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홍양호가 저술한 『목민대방』에서는 「刑典之屬」의 첫 항목이 송사를 듣고 판결하는 길을 넓히는 ‘恢聽斷’이다. 또한 『선각』의 경우 ‘文狀 28조’를 「追錄」에 첨부하여 민장 처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목민서에서는 민소와 관련해 지방관에게 어떠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을까. 민소의 처리 과정에 따라 그 지침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민의 소지 제출 및 관의 접수에 관한 것이다. 소지는 呈訴人 당사자가 직접 官廷에 들어와 올리며, 다른 사람이 대신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는 민소를 줄이는 방법으로, 급하지 않은 소지의 감소효과를 기대하였다.⁶⁵⁾ 또한 누구나 소지를 제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관에서 榜文을 통해 군현 민에게 인지시켜주도록 하였다. 이때 관정에 들어오는 정소인을 제지하는 문지기나 사령을 엄금하되 발각되면 猛杖을 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민이 관에 소지를 제출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다. 소지를 작성할 때에 서식이 무례하거나 지방관에게 존경을 표시하지 않으면 관에서 퇴짜를 맞을 수 있었다.⁶⁶⁾ 목민서에서도 소지 제출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관문을 지키는 문지기나 사령에 의해 정소인의 관내 출입이 제지될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목민고』에서는 관문의 상시 개방과 함께 정소인이 직접 지방관이 있는 곳으로 와서 소지를 올리도록 하였다.⁶⁷⁾ 그러면 지방관은 시간에 관계없이 소지가 접수되는 대로 받아 처리하되 정소인이 직접 대면을 요청하면 公事を 멈추고 그의 말을 상세히 청취해 주도록 하였다.⁶⁸⁾

소지를 대필해서 제출한 정소인도 자신의 사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을 것을 염려해 소지를 낸 후 직접 말로 호소할 수 있게 하였다. 급한 소지일 경우에는 문지기-及唱-衙奴 혹은 冊房에게 차례로 통고하게 하여 즉시 판결을 내리도록 하였다. 발괄인의 민원 내용을 상세히 듣는 과

式, 五家統事目, 小學講節目, 居齋節目, 寺奴婢弊端, 乙亥減尺時事目, 結卜移來移去之弊, 復戶, 田政, 查括隱結法, 踏驗定式, 賑政, 刑獄 등이 새롭게 설정되어 장서각본과 전혀 다른 자료로 파악하고 있다.(김용흠, 앞의 논문, 133~140쪽)

65) 『민정자료』, 「居官大要」, 258쪽.

66)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역사비평사, 46쪽.

67) 『牧民攷(古5120-172)』 聽訟.

68) 『민정자료』, 「先覺」 察事情, 190쪽.

정을 별도로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때 민이 자신의 억울함을 모두 얘기할 수 있도록 안색을 온화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히 할 것, 청취 시 자신의 의견을 세우지 말고 공정히 들을 것, 법문을 상세히 고찰해서 처벌할 것 등 지방관의 태도도 제시하였다.⁶⁹⁾

이와 같은 지방관의 사송업무는 임지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목민서에서는 새로 부임한 지방관이 임지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접수된 소지의 처리를 말하였다.

오리 이원익이 말했다. “집무를 시작한 날 촌락민의 소지는 承發이 정례대로 바치게 하되 미리 원근을 구별하도록 분부하여 먼 곳에 거주하는 자는 먼저 제사를 써서 보내고, 가까운 곳에 사는 자는 다음으로 제사를 써주어 멀리 있는 마을의 백성이 읍내에 유숙하는 폐단이 없게 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백성들이 모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이다.”⁷⁰⁾

임지에 도착하여 소지의 다과를 물어 물을 경우 원근을 구별하여 세 부류로 나누고 미리 訴軸을 만든다. 그리고 먼저 멀리 떨어진 면[遠面]의 소지에 제사를 쓰고, 다음으로 중간에 있는 면[中面]의 소지 축에 제사를 쓰며, 그 다음 가까운 면[近面]에 제사를 쓴다.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제사를 써서 주되 반드시 엄하게 제사를 해야 한다. 소지를 일일이 주의하여 자세히 살필 경우 맞지 않는 처분[外題]이라는 비방을 면할 수 있을 것이며 백성 또한 그 날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⁷¹⁾

관에서는 접수된 소지의 다과여부를 판단해 정소인의 거주지 원근에 따라 遠面-中面-近面 3등급으로 나누어 소축을 만들도록 하였다. 접수된 소지는 읍내를 중심으로 먼 지역의 정소인을 우선하여 제사를 내려주고 가까운 면을 가장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장날과 같이 소지가 급증하는 날에도 동일하게 적용했으며, 지방관은 책상 위에 각 면의 상세 지명이 적힌 서책을 두어 참고하도록 하였다.⁷²⁾ 소지처리에 정소인의 거주별 원근이 고려된 것은 일의 지체로 원면의 거주자가 귀가하지 못한 채 읍내에 머물게 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였다. 즉 당일 접수 및 처리를 위한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제시한 것으로, 지방관에게 민원의 내용을 주의

69) 『牧民攷(古5120-172)』 聽訟.

70) 『민정자료』, 「先覺」 和聽納, “梧里曰 出官之日 村民所志 承發例捧 預爲分付 區別遠近 遠者先題給送 近者次題以給 則遠村之民 必無邑內留宿之弊 如是則民皆悅服矣.”

71) 『牧民攷(古5120-172)』 到任, “到任時 問所志之多寡 若多則遠近區別 使之分三等 預爲作軸 而先題遠面所志 次題中面軸 又題近面 自遠至近 次次題給 而必爲嚴題 箇箇留神詳察 則能免外題之謗 而民亦當日還家.”

72) 『牧民攷(古5120-172)』 聽訟.

깊게 살펴 올바른 처결을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지침은 소지 지체로 인한 민의 원망을 줄일 수 있는 조치임과 동시에 제출된 소지를 통해 지방관이 군현 내 민정을 살펴 민을 다스리는 방법의 하나였다.

아울러 접수된 소지에 대한 지방관의 직접처리를 강조하였다. 소지의 경우 내용에 따라 대개 戶房 및 刑房의 아전이 접수하여 처리하다보니 지방관이 군현의 실태 및 관내 민의 실정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⁷³⁾ 이원익은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관내 모든 일을 지방관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송관련 문서의 경우 下吏에게 위임하지 말고 지방관이 직접 제사하도록 하였다.⁷⁴⁾

지방관이 향촌사회 전반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민이 제출한 소지를 통해서였다. 민원의 내용이 자신의 관내 정치력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송의 잡다함으로 이서층에게 이를 일임함에 따라 지방관의 관내 민정 파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원익이 지방관의 직접 처리를 지시하는 근본 목적은 사송에서 이서나 관속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야만 민은 소지 작성 시 그들의 작폐를 적을 수 있을 것이고, 지방관은 제출된 소지를 통해 이서의 폐단을 파악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서 및 관속의 폐단은 목민서에서 민의 고락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목민서에서는 소지의 내용 중 관속과 관계된 내용이거나 이름이 언급된 소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류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사실관계를 엄중히 조사한 후 정소인 앞에서 직접 판결하되 관속에게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猛杖을 쳐서 다스리도록 하였다.⁷⁵⁾ 이러한 지침은 두 가지 효과를 유도하였다. 첫째, 관속에 의한 민의 침해를 제거함과 동시에 관에 대한 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며, 둘째, 민의 신뢰는 곧 민원 감소를 가져와 소지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민소 감소의 또 다른 방안으로 ‘好訟之類’에 의한 첩소의 근절도 제시되었다. 조선시대 민이 제출한 소지가운데에는 이치에 맞지 않은 소위 ‘맹랑’한 것도 다수 있었다. 지방관은 소지의 내용 중에서 이러한 것을 선택해 수 일이 지나도록 원고가 피고를 붙잡아오지 않으면 패자를 내려서 붙잡아 와 양측을 조사하고 심문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원고가 사소한 일로 소송을 야기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를 ‘호송지류’로 판단하고 맹장으로 다스리도록 하였다.⁷⁶⁾

73) 김정숙, 「안정복의 民願政策과 官民疏通」, 『고문서연구』 43, 한국고문서학회, 2013, 172쪽.

74) 『민정자료』, 「先覺」 存公平 202쪽, “梧里曰 …官中每事 固當親執之 至於詞訟文書 則切勿委下吏 而亦勿用下吏之文 然後必無落訟者之呼冤矣.”

75) 『牧民攷(古5120-172)』 聽訟.

76) 『牧民攷(古5120-172)』 聽訟.

이처럼 목민서에서는 군현 안정의 한 방편으로 관속의 폐단 및 호송지류의 근절을 꾀았고, 이들의 근절로 군현이 안정되면 민소도 자연히 감소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를 주도하는 지방관의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었다.

2) 처분의 신속화: 例題의 활용

목민서에서는 지방관이 소지 처리에만 직무가 집중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민의 소지가 많은 것 역시 지방관의 관내 통치력 부족으로 파악하였다. 통치력의 유무여부는 소위 ‘대절목’의 처리에 있었다. ‘대절목’은 목민서마다 대동소이했지만 대체로 군정, 전결, 호역, 요역, 토호 및 관속의 침학이다. 목민서에서는 이것을 소지의 공정한 판결여부보다 민의 고락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지방관이 대절목 처리에 폐단이 없게 하면 소지에 등장하는 각종 분쟁은 민간의 다툼에 불과해 관의 대처에 어려움이 없다고 여겼다.⁷⁷⁾ 민간의 사소한 분쟁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소지 처분의 간소화, 신속화를 강조했는데, 곧 예제의 활용이다.

『목민고』에서는 도입 직후의 지방관이 소지업무 처리 시 작성할 예제를 相爭, 徵債, 軍役, 凌辱, 分里·分洞, 山訟 등 6개로 구분해서 제시하였다. 먼저 민간의 다툼인 상쟁의 경우에는 “과연 호소한 대로라면 매우 근거 없는 일이다. 심문할 것이니 잡아오라[果如所訴 事極無據 推問次捉來]”는 제사를, 채무징수에 대해서는 “심문해서 받아줄 것이니 잡아오라[推問徵給次捉來]”고 제사를 내리도록 하였다. 또한 老除나 병으로 군역 면제를 요청할 경우 “친히 살펴볼 터이니 직접 오도록 하라[親審次來現]”고 하였고, 상민이 양반을 능욕했을 때에는 “상민이 양반을 능욕하다니 참으로 놀랍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심문하여 엄히 다스릴 터이니 잡아오라[常漢凌辱 兩班 萬萬驚駭 推問重治次捉來]”는 예제를 제시하였다. 分里·分洞에 대해서는 “갑자기 변통하기 어려우니 번거롭게 소를 내지 말라[猝難變通 勿爲煩訴]”는 제사를 내려 이 문제를 쉽게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 산송의 경우 “묘가 위치한 산의 생김새와 步數의 원근을 그려서 간폐를 파악하여 문서로 보고하라.[圖局形止步數遠近 摘奸牒報]”고 제사하고 해당 명령을 실행할 자로 향소나 면임을 지정해 써넣도록 하였다. 그러나 복잡한 산송일 때에는 지방관이 친심하여 직접 간폐를 살피도록 했다.⁷⁸⁾

이러한 예제는 신임 지방관의 도입 직후 첫 소지처분이므로 많은 말을 하며 제사를 엄하게 내

77) 『민정자료』, 「先覺追錄」 文狀 28조; 『牧民攷(古5120-172)』 聽訟: 『목민심서』 부임6조 이사.

78) 『牧民攷(古5120-172)』 聽訟.

리지 않았다. 상쟁, 징채, 능욕 등의 분쟁에는 피소인을 조사하기 위해 잡아오라는 형식적인 제사를 예제로 제시하였다. 『목민고』에서는 도입 직후 제출된 소지에 대해 지방관의 상세한 고찰을 통한 간단한 제사를 지시하였다.

19세기 민장자료를 보면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충청도 목천·진천, 전라도 영암·영광, 경상도 영천·경산·의령 등의 경우 한 달 평균 처리된 소지 건수가 156.3건이다. 특히 전라도 영광군은 한 달 평균 244.8건의 소지가 접수, 처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⁷⁹⁾ 따라서 많은 소지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목민서에서는 접수된 소지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그 유형에 따라 미리 예제와 套語를 만들어서 刑吏에게 주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처리할 형리를 대읍은 4명, 소읍은 2명을 선발하여 소지 분류 및 수령이 작성한 예제와 투어를 쓰게 하고 날짜의 원편이나 제사 아래에 담당 형방의 이름을 써서 차후의 참고 뿐 아니라 농간과 거짓을 막도록 하였다.⁸⁰⁾

목민서에 등장하는 예제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전답 및 노비 관련, 債貸, 奪耕, 爭水, 전세 및 군역, 산송, 능욕 및 구타, 立淸신청 등이다.

① 전답과 노비 관련 소지에 대한 예제이다.

	목민서	예제 내용
전답	『목민고』	• 과연 네가 응당 차지할 물건인지 소장의 사연만으로는 준거해서 믿기 어려우니 양편이 함께 출두하는 것이 마땅하다[果爲汝矣應推之物是喻狀辭有難準信 兩造宜當] • 춘분이후: 농사일이 매우 급하여 서로 쟁송할 때가 아니니 우선 추분을 기다려 다시 와서 소지를 올리도록 하라[農務正急 相訟非時 姑待秋分 更爲來呈]⁸¹⁾
	『목민심서』	• 원고와 피고는 각기 문권을 가져와서 서로 시비를 판별하라[兩隻各持文券 兩造對辨] • 춘분이후: 전토의 소송을 할 때가 아니니 추분을 기다려서 다시 소송하라[田訟非時 待秋分更訴]⁸²⁾
노비	『목민고』	• 흉년의 노비 추쇄는 이미 금령이 있으니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 다시 소지를 올리도록 하라.[凶歲推奴 既有禁令 待豐更呈]⁸³⁾
	『목민심서』	• 흉년의 노비 추쇄는 국가의 금령이 있으니 가을을 기다려서 다시 소송하라.[凶年推奴 國有禁令 待秋更訴]⁸⁴⁾

이 경우 『목민고』와 『목민심서』의 예제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⁸⁵⁾ 전답에 대한 분쟁에서

79) 심재우, 「조선후기 충청도 연기지역의 민장과 갈등양상-1858년 『사송록(詞訟錄)』 분석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3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12쪽.

80) 『목민심서』 부임6조, 이사.

81) 『牧民攷(古5120-172)』 聽訟.

82) 『목민심서』 부임6조, 이사.

83) 『牧民攷(古5120-172)』 聽訟.

84) 『목민심서』 부임6조, 이사.

85) 『목민고』와 『목민심서』가 전답송에 대한 예제에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목민심서』가 『치현

『목민고』는 계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소지의 내용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 모두 출두하라는 예제를 제시하였다. 『목민심서』 또한 계쟁물과 관련된 양편의 소유문권을 가져와 시비를 판별할 것을 예제로 내렸다. 정약용은 전답송의 경우 민의 생업과 관계되기 때문에 소송의 공정성을 보여야만 관의 처결에 민이 수긍하고 따를 것이라고 하였다.⁸⁶⁾ 춘분이후의 전답 분쟁에 대해서는 두 목민서 모두 농번기 雜訟 금지 법규⁸⁷⁾에 따라 쟁송 시기가 아님을 강조하며 춘분이후에 소지를 다시 올릴 것을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노비송과 관련해서는 推奴 분쟁에 대한 예제를 제시하였다. 『속대전』에서는 흉년의 노비추쇄 및 채무독촉을 모두 금지하였다.⁸⁸⁾ 그러므로 『목민고』와 『목민심서』에서는 법전에 제시된 흉년 시 추노징채 금지 규정에 따라 풍년이 들기를 혹은 가을을 기다려 소지를 다시 올리라고 처분하였다. 다만 사환 노비가 눈앞에서 도망쳐 고을 경내에 숨어있을 경우에는 추쇄를 허락하는 제사를 내리도록 하였다.

이처럼 전답과 노비 등 재산 관련 송사는 법전의 규정에 따라 처결하는 예제를 제시했다. 『居官大要』에서도 재산관련 송사의 경우 『대전통편』에 따라 처결할 것을 지시하고 있어⁸⁹⁾ 법에 근거한 제사 작성을 원칙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채대에 관한 예제이다.

목민서	예제 내용
『목민고』	• 남의 빌린 물건을 오래도록 갚지 않은 것은 자못 놀랄만한 일이지만, 만약 사목에 있지 않은 甲利를 함부로 징수했다면 그 잘못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조사하여 물을 것이니 부채인을 데리고 와서 대질하라.[他矣債物 久不還報 殊甚可駭是乎乃 若或不有事目 濫徵甲利 則曲在債主 查問次 負債人率來對卡] • 춘궁기일 경우: 곤궁한 봄의 채무 독촉은 사목에 어긋나니 가을을 기다려 다시 올리도록 하라[窮春徵債 有違事目 待秋更望]⁹⁰⁾
『목민심서』	• 빚진 사람이 신뢰가 없는가. 빚을 독촉한 자가 지나친 것인가. 양편을 대질하라.[負債者無信乎? 徵債者太濫乎? 兩造對辦] • 춘궁기일 경우: 곤궁한 봄의 채무독촉은 사목에 어긋나니 가을을 기다려 다시 소송하라.[窮春徵債 有違事目 待秋更訴]⁹¹⁾
『先覺』	• 사실을 조사하여 받아 줄 것이니 잡아오라.[查實徵給次捉來] • 춘궁기일 경우: ‘금령이 있어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 없으니 가을걷이가 끝나기를

결』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현결』은 『치군요결』을 말하는 것으로, 『목민고』 서술에 영향을 준 목민서라고 할 수 있다.(김용흠, 「앞의 논문」, 140쪽)

86) 『목민심서』 형전 6조, 청송 상.

87) 『經國大典』 刑典, 停訟 [詞訟務停務開].

88) 『續大典』 刑典, 停訟.

89) 『민정자료』 「居官大要」, 259쪽.

	기다려 다시 소장을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有禁令 不得許施 待秋成 更呈宜當] ⁹²⁾
--	---

채대와 관련한 소송의 경우 예제는 상황에 따라 목민서간 차이를 보이거나 비슷했다. 『목민고』와 『선각』의 경우 債訟에 관한 예제에서 채무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채무자를 데리고 오라는 것에는 유사하다. 『목민심서』 또한 양쪽을 대질하라는 처분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목민서간 대질을 하는 이유는 달랐다. 『목민고』에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지적하면서도 채권자의 법외의 高利 징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것에 반해 『목민심서』는 채무자의 신용여부, 채권자의 독촉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목민심서』의 경우 채송에 대해 빚 독촉을 엄중히 하거나 전적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하도록 하였다.⁹³⁾

그러나 『목민심서』, 『목민고』, 『선각』 모두 추노징채를 금지한 시기의 송사에 대한 예제는 춘궁기 징채금지의 법규를 이용해 추분이후에 소송할 것을 제시하였다. 다만 『목민심서』에서는 채무자가 상인이거나 船人일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목민서의 소송 처리에서 법문의 상세한 고찰을 지침으로 제시했는데⁹⁴⁾ 앞서 전답, 추노 뿐 아니라 징채의 경우도 이러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탈경 및 쟁수와 같은 경작 관련 예제이다. 조선후기 민장 사례에서 나타나는 민간의 갈등 중에는 作人의 경작권과 관련한 갈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작인들은 ‘臨農奪耕’, ‘無斷移作’ 등을 호소하며 답주와 소송을 벌였다. 『항다반』에도 이작과 그로 인한 탈경, 쟁수 문제를 호소하는 쟁송인의 분쟁을 5개 사례를 들어 제시하였다.⁹⁵⁾ 18세기 목민서 역시 지주에 의한 이작, 탈경과 민간의 쟁수 문제에 대한 예제를 제시하였다.

	목민서	예제 내용
탈경	『목민심서』	• 전주가 청탁을 받았는가. 전부가 농사를 게을리 했는가? 본 마을의 여러 上戶들이 공평하게 의논하고 결정하여 다시는 소송하는 일이 없게 하라.[田主受囑乎 佃夫情農乎 本里諸上戶 公議平決 俾無更訴] ⁹⁶⁾
	『목민고』	• 남의 전답을 네가 과연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곡물을 많이 생산하여 賭地나 병작

90) 『牧民攷(古5120-172)』 聽訟.
 91) 『목민심서』 부임6조, 이사.
 92) 『민정자료』, 「先覺追錄」 文狀 28條, 225쪽.
 93) 『목민심서』 형전 6조, 청송 하.
 94) 『牧民考』 居官之道.
 95) 『恒茶飯(古5120-74)』에는 답주와 작인간의 소작료 지급문제에 관한 분쟁인 ‘田土稅穀不報’, 이작으로 인한 답주와 舊작인 간의 분쟁인 ‘田土作梗故陳’, 답주가 양반작인의 懶農을 이유로 이작하자 구작인인 양반이 횡포를 부려 답주가 관에 소지를 올린 ‘田土禁作勒耕’. 이에 대한 구작인의 反訴인 ‘臨農奪耕’, 농사철 물대는 문제로 싸운 ‘爭灌被打’ 등이 사례로 제시되었다.

		으로 착실히 마련해서 주었다면 본주가 어찌 탈경할 까닭이 있겠는가. 네가 필시 농사를 부지런히 짓지 아니하니 본주가 미워서 그런 것이다. 심문한 뒤에 잘못된 자를 엄중히 처단할 것이니 본주를 데리고 와서 대면해서 변론하도록 하라.[他矣田畠汝矣身果能勤農生穀 賭地或併作間 着實準給 則本主豈有奪耕之利 汝必不勤農 本主生憎而然也 推閱後理曲者 當爲嚴治 本主率來對卞] ⁹⁷⁾
쟁수	『목민심서』	• 멋대로 막은 자가 豪強한가, 물길을 훔친 자가 간사한가? 본 마을의 여러 상호들이 공평하게 의논하고 결정하여 다시 소송하는 일이 없게 하라.[擅壅者豪強乎 偷灌者奸詐乎 本里諸上戶 公議平決 俾無更訴] ⁹⁸⁾
	『목민고』	• 농사철에 잡아오게 하는 것은 폐단이 있으므로 洞 안의 공론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여 처결한 뒤에 첩보하되 만약 공정하지 못하여 민의 소송이 다시 제기된다면 풍헌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행하라.[方當農節推捉有弊 一從洞內公論 查實處決後牒報爲乎矣 如或不公 民訴更起 則風憲難免其責 惕念舉行] ⁹⁹⁾
	『先覺』	• 피차의 곡직을 각별히 상세하게 조사하여 첩보하도록 하라.[彼此曲直 各別詳細 摘奸牒報] ¹⁰⁰⁾

『목민심서』의 경우 농사철 탈경과 쟁수에 관해서 촌락 내 상호(上戶:頭民)들이 공의하여 결정해 재차 소송하는 일이 없게 하는 동일한 예제를 제시하였다. 『목민고』에서는 탈경의 경우 경작권을 빼앗긴 佃夫의 懶農 여부를 지적한 후, 사리에 어긋난 자를 처단하기 위해 양측을 대질하여 판별하도록 하였다. 또한 田主가 대지주일 경우 『목민고』에서는 전부가 임농기에 폐농해서는 안 되므로 사정을 헤아려 잘 처리하도록 한 반면, 『목민심서』에서는 刑吏로 하여금 그 내용을 뽑아서 수령에게 여쭙게 하였다.¹⁰¹⁾

쟁수와 관련해서 『목민고』와 『목민심서』는 上戶나 촌락 내 공론에 따라 처리하도록 제시하고 있어 유사성을 보였다. 『목민고』에서는 농사철에 양측을 관으로 오게 하는 것은 폐단이 있기 때문에 동(洞) 안의 공론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여 처결한 뒤에 첩보하도록 하고 공정하지 못해 다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풍헌에게 그 책임을 두었다. 『先覺』에서는 분쟁의 상황을 상세히 조사하여 첩보하라고 써서 면임에게 내어 주도록 하였다. 이처럼 쟁수와 관련한 민간의 분쟁에 대해 목민서에서는 면임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이들에게 공론에 따른 처리권을 부여하여 송사가 많아지는 폐단을 줄이고자 하였다.

④ 전세 및 군역에 대한 예제이다.

96) 『목민심서』 부임6조, 이사.

97) 『牧民攷(古5120-172)』 聽訟.

98) 『목민심서』 부임6조, 이사.

99) 『牧民攷(古5120-172)』 聽訟.

100) 『민정자료』, 「先覺追錄」 文狀28條, 225쪽.

101) 『목민심서』 부임6조, 이사.

	목민서	예제 내용
전세	『목민심서』	• 이 일에 관해서는 모름지기 한번 크게 조사가 있을 것이니, 지금은 우선 물러가서 전령을 기다려라.[此事須有大查覈一番 今姑退去 以待傳令] ¹⁰²⁾
	『先覺』	• 들으니 매우 놀랍다. 상세히 고찰하여 탈급하도록 하라.[聞極駭然 詳考頗給] ¹⁰³⁾
군역	『목민심서』	• 군역면제자에게 또 군포를 거둔 경우: 이 일에 관해서는 모름지기 한번 크게 조사가 있을 것이니, 지금은 우선 물러가서 전령을 기다려라.[此事須有大查覈一番 今姑退去 以待傳令] ¹⁰⁴⁾
	『목민고』	• 老除와 病廢의 경우: 조용할 때 친히 살펴서 빼줄 터이니 이 제사를 가지고 다시 고하도록 하라[從容時 親審頗給 次持題辭更告] • 4부자가 실역에 충당된 경우: 조용할 때 문서를 살펴서 빼줄 터이니 이 제사를 가지고 다시 고하도록 하라[從容時 考案頗給 次持題辭更告] • 사망했는데 군역에서 빠지지 못한 경우: 사망이 확실한데 아직 빠지지 못했다니 일이 매우 놀랍다. 허실을 각별히 조사하여 보고하라[物故의實 則尚未代頃 事極可駭 虛實各別查報] ¹⁰⁵⁾
	『先覺』	• 老除와 病廢의 경우: 직접 살필 것이니 뒷날 와서 기다려라.[親審次 後日來待] • 45년간 실역을 치렀으므로 군역을 면제해달라는 경우: 군안을 고찰한 뒤에 관에 보고하고 면제시켜 주도록 하라[考案後 告官頗給] • 4부자가 실역에 충당되어 아버지를 면제해달라고 하는 경우: 군안을 고찰한 뒤에 관장에게 보고하고 면제시켜 주도록 하라.[考案後 告官頗給] • 軍丁物故에 관한 경우: 사망의 진위여부를 시체를 검안하여 살피고 첩보하라.[物故眞僞 檢屍牒報] ¹⁰⁶⁾

먼저 전세 加出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예제이다. 『목민심서』의 경우 田政의 실상을 조사할 것이니 기다리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정이 지방관이 신경써야 할 ‘대절목’의 하나였기 때문에 형리에게 정소인의 성명과 소지 내용의 요점을 기록해 한 책자에 열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반면, 『선각』의 경우 상고한 후에 면제해주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었다.¹⁰⁷⁾

군역 문제 또한 민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신임 지방관 부임 시 역의 감면이나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목민서에서도 이와 관련한 여러 사례의 예제가 제시되었다. 『목민심서』에서는 군역면제자에게 군포를 징수해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예제를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전세 가출의 예제와 동일하다. 『목민고』와 『선각』은 노제 및 병폐자, 부자가 군역에 충당된 경우, 군정 物故 등으로 구분하여 예제를 제시하였다. 두 목민서 모두 노제 및 병폐자의 군역면제 요청에 대해 친심할 것이니 이후 다시 고할 것을 얘기한 것은 유사했으며, 4부자가 모두 실역에 충당된 경우 역시 ‘고안 후 탈급’을 말하고 있어 유사한 예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45년간 군역을 치른 자가 이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군정이 사망한 경우 『목민

102) 『목민심서』 부임6조, 이사.

103) 『민정자료』, 「先覺追錄」 文狀28條, 225쪽.

104) 『목민심서』 부임6조, 이사.

105) 『牧民攷(古5120-172)』 聽訟

106) 『민정자료』, 「先覺追錄」 文狀28條, 226쪽.

107) 『목민심서』 부임6조, 이사.

고』와 『선각』은 문장은 다르지만, 관의 처분은 사망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것이며, 『선각』은 검시하고 첩보하라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언급하였다.

⑤ 산송에 관한 예제이다.

산송에 관해서는 『선각』 외에 다른 목민서에서 별다른 예제를 제시하지 않았다. 『선각』의 경우 原隻이 함께 局内の 형국, 거리의 원근을 살핀 山圖를 그린 후 서명을 받아 첩보하라고 면임 또는 향소에게 써 주도록 하였다.¹⁰⁸⁾ 특히 산송은 법에 따른 처벌을 강조했으며, 판결이 애매한 곳에 매장한 경우 ‘掘移’가 불가능하다고 주의를 주도록 하였다.

정약용은 산송을 弊俗이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원척간의 구타 및 살상 사건이 발생하고 타인의 묘를 파서 옮기는 것도 효도하는 일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약용 또한 산송의 판결은 그 어려움이 다른 송사의 배가된다고 지적하며, 이 경우 사실 확인을 확실히 한 후 명확한 처분을 내리라고 하였다.¹⁰⁹⁾ 『목민고』 또한 산송을 살인사건과 함께 주의 깊게 적간해야 할 사안으로 여겼다. 그러면서 산송에서 패소한 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무덤을 옮기도록 하되 기한을 어길 시에는 관에서 굴이할 것을 미리 알리도록 하였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도 무덤을 옮기지 않을 경우 里에서 일꾼을 동원해 봉분을 없앤 후 기한 내에 굴이할 것을 독촉하도록 하였다.¹¹⁰⁾ 산송 판결 후 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산송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⑥ 능욕 및 구타에 관한 예제이다.

	목민서	예제 내용
능욕	『목민고』	• 완민이 양반을 능욕한 경우: 근래 기강이 엄하지 않고 등급이 바르지 않아 완악한 놈이 잔악한 양반을 침탈해 욕보이니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나 호강한 양반이 먼저 그 도리를 잃어버리고 모욕을 자초한 경우 또한 있다. 실상을 조사한 후에 사리에 어긋난 자는 마땅히 엄중히 다스릴 것이니 잡아와서 대변하라.[近來紀綱不嚴 等級不明 頑漢之侵辱殘弱兩班 誠爲痛駭是乎乃 豪強兩班之先失其道 而自取侮辱者 亦或有之 查實後 理曲者當爲嚴治 捉來對卞] • 양반이 소민을 침학한 경우: 근래 호강한 양반이 국법을 무시하고 소민을 침학하는 것이 진실로 통탄할 일이나 등급이 바르지 않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고 완민이 양반에게 불손하게 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심문한 후에 사리에 어긋난 자를 엄중히 다스릴 것이니 잡아와서 대변하라[近來豪強兩班之不有國法 侵虐小民 誠爲痛駭是乎乃 等級不明 下凌上替 頑民之不遜於兩班者 多有之 推卞後 理曲者當爲嚴治 捉來對卞]¹¹¹⁾

108) 『민정자료』, 「先覺追錄」 文狀 28條, “兩隻同見處 局內形止步數遠近 詳細摘奸 圖形 受兩隻啣 牒報”.

109) 『목민심서』 형전6조, 청송 하.

110) 『牧民考(B12FB11)』 「治郡要法」; 『목민고·목민대방』, 163쪽.

	『先覺』	• 상한이 양반을 능욕한 행위는 해당하는 법률이 있다. 조사하여 엄중히 다스려야 하니 잡아오라.[常漢之凌辱兩班 自有其律 查問重治次捉來] ¹¹²⁾
구타	『목민심서』	• 구타: 과연 중상이면 범인을 그 마을에서 엄하게 감금해서 辜限(30일)을 기다리게 하였다가 고한이 지나면 그 마을에서 공평하게 의론해서 압송하여 본관의 처치를 받도록 하라.[如果重傷 其犯人 自本里嚴加拘禁 以待辜限 辜限既過 自本里公議押送 以聽處置] • 목숨이 위급할 경우: 상처를 조사하여 과연 위급하면 그 마을에서 풍헌이나 領將 등을 불러 주범과 종범을 조사한 후에 묶어서 압송하여 처치를 받게 하라.[傷處摘奸 如果危急 自本里招風憲領將等 查其正犯次犯 結縛押送 以聽處置] ¹¹³⁾
	『先覺』	• 구타: 과연 호소한 대로라면 매우 근거 없는 일이다. 조사해서 다스려야하니 잡아오라[果如所訴 則事極無據 查治次捉來] • 목숨이 위급한 경우: 들으니 매우 놀랍다. 아무개를 즉시 잡아오라.[聞極驚駭 某也卽爲捉來] ¹¹⁴⁾

능욕과 침학의 문제는 18~19세기 신분제도의 해이에 따른 것으로 향촌사회에서 발생하는 민간의 분쟁 중 하나였다. 『목민고』에서는 상한이 양반을 능욕한 경우와 양반이 소민을 침학한 경우로 구분해서 예제를 제시하였다. 두 경우 모두 능욕과 침학의 발생원인을 양반, 상한 어느 한쪽에 두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려는 태도를 보이며, 양반과 상한 양측을 관으로 불러 실상을 조사한 후 이치에 어긋난 자를 엄중히 다스리도록 하였다. 이때 상투적인 말로 제사를 내리는 것과 사실과약 이전에 ‘抑強扶弱’하는 뜻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양반과 상한 모두 잘못이라는 兩非의 제사를 내리는 것이 차후 동일한 분쟁의 소지청구를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선각』에서는 상한이 양반을 능욕한 행위에 대한 법 규정이 있음을 강조하며, 상한을 잡아오라고 면임에게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잘못이 상한에게 있으면 경중을 따져 법에 따라 처벌하고, 양반에게 있으면 마찬가지로 처벌하되 양반의 도리를 잃지 말도록 교유하는 한편, 상한에게도 태벌을 내려 반상의 명분을 확실하게 인지시켜 주도록 하였다. 『목민고』가 양반과 상민의 싸움에서 양비의 제사를 내린 것에 반해, 『선각』의 경우 범분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상민은 잘못이 없어도 교화의 대상으로 태벌을 처하도록 하는 등 각자의 신분에 맞게 행동하여 기존의 신분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두 목민서간 양반-민의 갈등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예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¹¹⁵⁾

111) 『牧民攷(古5120-172)』 聽訟.

112) 『민정자료』, 「先覺追錄」 文狀28條, 225쪽.

113) 『목민심서』 부임6조, 이사.

114) 『민정자료』, 「先覺追錄」 文狀28條, 225쪽.

115) 홍해뜸은 범분문제에 대해 『목민고』는 소민보호를 표방하면서 수령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한 반면, 『선각』은 풍속, 윤기관련 갈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교화를 강조하며 사회질서 안정을 지향했다고 보았다.(홍해뜸, 「앞의 논문」, 2020, 241~246쪽)

구타의 경우 『목민심서』에서는 구체적인 예제를 제시하였다. 毆打致傷일 경우 피해자가 중상이면 범인을 해당 읍에서 감금해서 30일의 고한기간이 지나면 마을에서 공의해서 압송하여 본관의 처분을 받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생명이 위중할 경우에는 풍헌이나 領將 등을 불러 주범과 중범을 조사한 후 압송하여 처벌을 받게 하였다. 이에 반해 『선각』에서는 두 경우 모두 조사를 위해 가해자를 잡아오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러한 민간의 사소한 다툼은 19세기 군현 내 주요 갈등 원인이었다. 따라서 목민서에서는 민간의 相鬪에 대해 상호간 합의[私和]를 유도하여 민소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목민서에는 입지신청소지에 대한 관의 신중한 처결을 강조하였다. 정약용은 지방관이 사실 관계를 조사하지 않은 채 쉽게 입지를 발급해주는 당시의 폐단을 지적하였다.¹¹⁶⁾ 『선각』이나 『목민고』 또한 이를 인지하고 민의 입지 청원 소지를 모두 선별해서 모아둔 후 관의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통해 입지를 내려주도록 하였다.¹¹⁷⁾

이상과 같이 목민서에 제시된 예제는 민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분쟁에 집중되었다. 목민서에서는 민간의 단순한 분쟁에 지방관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일반적이고 단순한 소지의 제사는 예제를 만들어 처분의 간소화와 소지출급의 신속성을 꾀하였다. 특히 전답, 추노, 징채, 산송 등의 경우는 법전에 근거한 예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예제는 지방관이 만들고 형리가 작성해 민에게 지급해주는 것으로, 지방관이 소지처리에만 직무가 집중되지 못하도록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지침으로 판단된다.

목민서에서는 민소에 대한 지침으로 민장의 기록도 제시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군현의 민장 실태와 더불어 설명하고자 한다.

3. 민장 기록과 관련 자료의 실태

1) 민장의 기록

조선시대 민장 기록에 대해서는 16세기 후반 유희춘의 『治縣須知』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유희춘은 『牧民聽訟』 부분에서 牒訴 가운데 긴요한 사안은 장부에 기록한 다음 상고할 것을

116) 『목민심서』 부임6조 이사.

117) 『민정자료』, 「先覺追錄」 文狀 28條, 226쪽; 『牧民攷(古5120-172)』 聽訟.

이야기하였다.¹¹⁸⁾ 18세기 이후 목민서에서는 민장의 기록이 보다 구체화되어 제시된다.

① 공책 5권을 만들어서 매번 通引 가운데서 문자를 알고 믿을 만한 사람 한두 명, 혹은 서너 명을 골라서 매일의 소지 가운데 사안이 倫紀, 田政 혹 軍政 혹 還穀과 官屬作弊 등에 관계되는 5개건과 다스려야 할 사안[可治之事]은 반드시 제사를 엄중히 내려서 낱날이 통인에게 넘겨주어 관책에 기록하게 한 다음 소지를 내어준다.¹¹⁹⁾

② 민장 중에서 사안이 윤기, 군정, 환정, 관속의 작폐 등에 관한 것과 그 외 다스려야 할 것은 반드시 제사를 엄중히 내리고 일일이 首通引으로 하여금 공책 한 권에 기록하게 한다.¹²⁰⁾

③ 소장에 적혀있는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면 紙筒에 넣고 장부에 기록한다.¹²¹⁾

④ 소지는 매일 통인 및 형방으로 하여금 아무개면의 아무개가 호소하는 말의 대략을 뽑아서 일일이 책자에 기록하도록 하고 때때로 펼쳐보면 한 사안에 두 번 정소하거나 잡아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는 등과 같은 잘못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¹²²⁾

⑤ 소지 데김의 말단에는 반드시 考課刑吏의 이름을 써서 간폐를 막아야 한다. 또 공책을 많이 매어서 각면 소지의 대략과 데김을 분류하여 일일이 謄書한 후 原狀은 狀民에게 돌려주고 후일 참고로 삼게 한다. 혹 판결을 못 받아 이름을 고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든가. 하루에도 두 번씩 呈訴하는 경우가 있는바 일일이 다 살필 수가 없는 까닭에 매번 前日의 謄訴를 참고하고 열람하면 소득이 적지 않을 것이다.¹²³⁾

위의 자료는 목민서에 나타난 민장 기록에 관한 사항이다. ①, ②의 기록이 유사하고 ④, ⑤의 기록이 유사하다. ①, ②, ③에서는 특정 사안의 소지에 대해서 기록을 요하는 반면, ④, ⑤에서는 기록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기록을 요하는 소지는 윤기, 전정, 군정, 환곡, 관속작폐 등 소위 ‘대절목’과 기타 다스려야 할 일이다. ③의 『선각』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도 이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118) 『眉巖集』 卷4, 庭訓 庭訓外篇下 治縣須知 牧民聽訟第三.

119) 『牧民攷(古5120-172)』 聽訟, “造空冊五卷 每番通引擇識字可信一二名或三四名 每日所志中 事係倫紀 事係田政或軍政或還穀與官屬作弊等五件事及其可治之事 則必嚴題 而這這移給通引 使之各置簿於官冊 後出給所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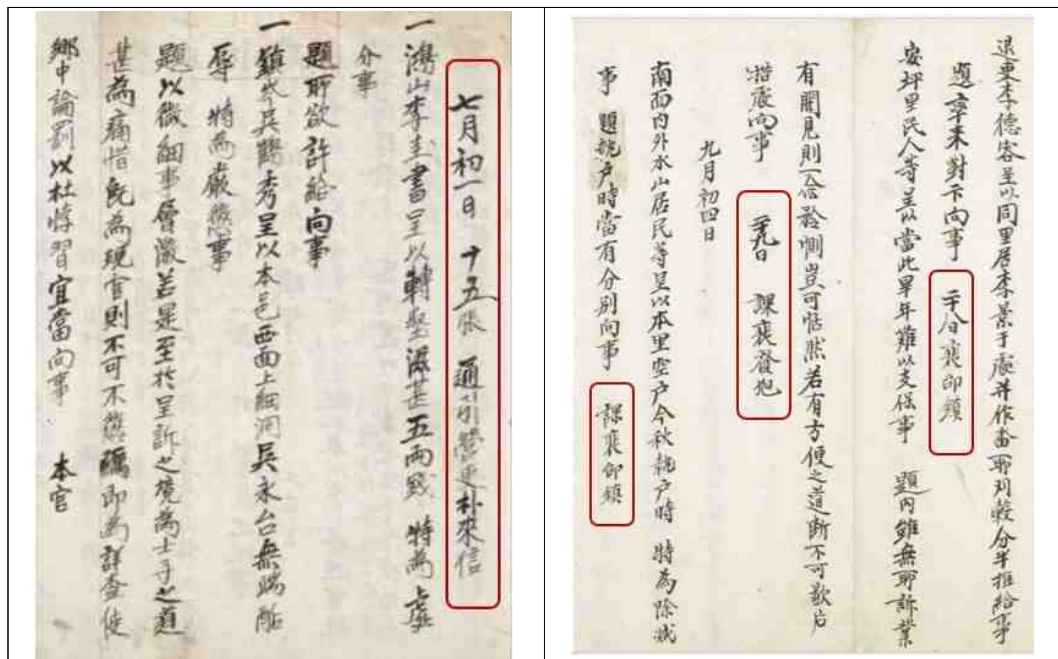
120) 『민정자료』 「先覺追錄」 文狀二十八條. “民狀中 事係倫紀田政軍政還政官屬作弊等事及其他可治之事 則必嚴題 而這這使首通引置簿於一空冊...”

121) 『민정자료』 「先覺」 詳案牘, “呈狀辭緣關重者 紙筒置簿”.

122) 『민정자료』 「居官大要」 民訴, “所志每日使通引及刑房 抄某面某人訴語之大略 一一記錄於冊子 時時披見 則一事再呈 推捉不來等 無遺漏之患也”.

123) 『牧綱』(김인걸, 「앞의 논문」, 1990, 238쪽 재인용).

접수 처리된 소지의 기록은 지방관이 제사를 내린 후 통인이나 형리가 담당하였다. 소지의 개요를 적고 이를 지방관의 제사와 구별하여 날짜별로 등서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민장 기록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1]은 1890년(고종 27) 충청감영에 올린 소지를 초록한 『詞訟錄』이다. 여기에서 보면 7월 초1일에 올린 민장을 기록한 자로 通引營吏 朴來信의 이름이 적혀있다. 이름 위에는 15張이 쓰여 있는데, 7월 1일 접수, 처리된 민장의 수로 파악된다. 『사송록』의 경우 윤4월(1책), 6월(2책), 7월(3책), 8월(4책), 11월(5책) 자료에 이를 기록한 통인영리의 이름이 적혀있다. 윤4월의 경우 16일자부터 宋寅壽가, 6월은 1일부터 15일까지는 金鎮基가, 같은 날 15일부터 29일까지 박래신이 소지를 처리하였다. 7, 8월은 박래신 혼자 담당했고, 11월은 10일까지는 통인영리 林炳夏가, 12일부터는 朴琮憲이 담당하였다.



[자료 1] 『詞訟錄』(古5125-88-v.1-21) 3책 丁亥

[자료 2] 『訟案』(古5125-10-v.1-2) 1책 戊子

[자료 2]는 1888년(고종 25) 전라도 咸悅縣에 올린 소지를 초록한 『訟案』이다. 이 책은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1책은 무자 8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2책은 10월 10일부터 이듬해 2월 3일까지이다. 일별로 초록된 소지 맨 하단에 이를 처리한 裴郤鎮, 裴贊旭, 裴鳳柱, 崔鶴周 등 4명의 하리가 ‘課 裴郤鎮’의 예로 적혀있다. 이는 앞의 ⑤ 『牧綱』에서 “무릇 소지 데깁의 말단에는 반드시 告課刑吏의 이름을 써서 간폐를 막아야 한다.”고 하는 지침을 따른 예라고 볼 수 있다.

조선후기 군현에서 민장을 별도로 기록한 경우는 드물었고, 報牒類에 민장의 중요한 사항만을 등재하고 있었다. 이후 19세기에 들어와 보첩류의 기록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장과 관련된 부분이 별도로 작성되었다.¹²⁴⁾ 현재 남아있는 민장자료들이 모두 19세기 이후의 것이라는 게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목민서에서 민장의 기록을 민소처리의 주요 지침으로 제시한 이유는 지방관이 관내 처리결과를 확인할 목적에서였다. 당시 민장 가운데에는 한 사안에 대해 여러 번 정소한다든가, 판결을 받지 못해 이름을 고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방관이 ‘捉來’를 지시했는데 기일이 지나도 시비를 가리러 오지 않는 일 등도 있어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서였다. 특히 접수된 소지 가운데 착래 기한이 지난 경우는 따로 뽑아서 사건 내용을 후록한 후 각 면에 조사하도록 전령을 보내도록 하였다. 이는 소송당사자들끼리 사화여부, 정소인의 誣告 후 自退여부, 신분이나 힘의 위세에 눌리거나 인정에 구애되어 심리받기 어려운 지 등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각 면리의 풍헌과 준위가 죄를 다스려 징계하도록 하였다. 중대한 사안의 경우는 관장 앞에 붙잡아 와서 각별히 처리하고, 처리한 이후에는 각각 그 이름 아래 효주하고 도장을 찍어 주게 하였다.¹²⁵⁾

『선각』에서는 중대한 사건의 경우 문답한 말을 기록해 둘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훗날 청송할 때 이전에 했던 말과 다른 사실을 이야기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그럴 경우 사기죄로 간주하고 법에 따라 다스리도록 하였다.¹²⁶⁾ 정약용 또한 還上를 거두어들이는 문제에 대해 청원인들의 호소 내용의 요점을 기록해 책자를 만들고 이를 통해 원인을 조사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¹²⁷⁾

이처럼 목민서에서 민장을 기록하도록 하는 목적은 관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하는 참고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즉 이미 처리한 소지의 내용을 담당 아전이나 지방관이 일일이 인지하고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지방관의 처결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다. 이러한 민장 기록의 효과에 대해 『선각』에서는 함부로 소장을 올리는 호송지류의 폐단을 막아 민소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¹²⁸⁾

2) 19세기 민장자료의 실태

124) 金仁杰, 「앞의 논문」, 1990, 239쪽.

125) 『牧民攷(古5120-172)』 聽訟.

126) 『민정자료』 「先覺」 察初情, 200쪽.

127) 『목민심서』 형전6조, 청송 하.

128) 『민정자료』 「先覺追錄」 文狀28條, 227쪽.

19세기 민장 자료는 ‘訟案’, ‘詞訟錄’, ‘民訴草概冊’, ‘民訟草概’, ‘民狀草概冊’, ‘민장치부책’ 등으로 현재 남아있다. 경기도의 경우 대체로 ‘訟案’이란 제목의 형태로 남아있으며, 경상도는 김산군의 경우 ‘송안’으로, 의령, 경산 등은 ‘민소초개책’으로, 영천군과 경상우병영에 접수된 것은 ‘민장초개책’으로 남아있다. 전라도는 ‘송안’, ‘所志謄書冊’, ‘민장치부책’, ‘민소초개책’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충청도의 경우 ‘사송록’이란 이름으로 남아있다. 이 절에서는 19세기 민장 자료를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 1]과 같으며,¹²⁹⁾ 이를 통해 19세기 전국의 민장 자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표 1] 규장각 소장 19세기 전국 민장자료의 실태

지역	민장자료명	편저자	시기	문서번호
강원도	民訟草概	강원감영	1891년(고종28) 11월	奎27716
	議送謄書冊	강원감영	1891년(고종28) 10월 23일~1893년(고종30) 2월 29일	古5125-55-v.1-17
경기도	訟案	양성현	1881년(고종18) 1월 29일~1882년(고종19) 2월 20일	古5125-8-v.1-4
	陽智縣訟案	양지현	기축년 4월 21일~8월 26일	古5125-108
	訟案錄	음죽군	1897년(광무1) 7월 6일~12월 19일	古5125-27
경상도	民狀草概冊	영천군	1846년(헌종12) 윤5월 28일~7월 2일	古5120-177
	臺營民狀草概冊	경상우도병영	1862년(철종13) 5월 15일~12월 30일	古4259-52
	民訴草概冊	경산현	1879년(고종16) 8월 11일~29일	古5125-71
	公事抄概冊	칠곡부	1887년(고종24) 1월~3월	古4259-39
	民訴抄概冊第拾陸	의령군	1888년(고종25) 12월 17일~12월 28일	奎27585
	民訴草概冊	안의군	1896년(건양1) 7월, 10월 19일~12월 23일	古5125-2
	訟案	김산군	1896년(건양1) 7월 15일~9월 29일 1897년(건양2) 5월 1일부터 7월 10일	古5125-115-v.1-2
	訟案 一	김산군	1897년(건양2) 7월 11일~8월 29일	古5125-113-v.1-4
	訟案	김산군	1897년(건양2) 9월	古5125-116-v.1-2
	訟案 二	김산군	1896년(건양1) 10월 9일~1897년(광무1) 4월 29일	古5125-110
	題辭案	김산군	1897년(광무1) 10월	古5120-33
전라도	民狀題辭抄	옥구현	조선후기	想白古951.05-M665
	靈巖郡所志謄書冊	영암군	1838년(헌종6) 7월 20일~7월 30일	古5120-158
	靈巖郡所志謄書冊	영암군	1839년(헌종7) 3월~4월	奎27509-v.1-2
	民狀置簿冊	영광군	1870년(고종9) 6월~1872년(고종9) 11월	奎27609-v.1-23
	民狀置簿	전라감영	1885(고종22)~1887년(고종24)	古5125-59
	民狀置簿冊	전주부	1889년(고종26) 1월 4일~2월 1일	奎20795

129) [표 1]은 심재우(「앞의 논문」, 2000, 139~143쪽)가 파악한 19세기 규장각 소장 민장 자료 가운데 군현과 감영에서 기록한 것을 중심으로 필자가 재작성한 것이다.

	訟案	함열현	1888년(고종25) 8월 26일 ~ 1889년(고종26) 2월 3일	古5125-10-v.1-2
	民狀置簿冊	흥덕군	1894년(고종31) 8월 22일 ~ 1895년(고종32) 6월 27일	古5125-63-v.1-4
	民狀置簿冊	영광군	1897년(건양2) 2월 8일~5월 18일	古5125-30
충청도	詞訟錄	목천현	1876년(고종13) 11월 12일 ~ 1877년(고종14) 2월 30일	古5125-72
	詞訟錄	충청감영	1887년(고종24) 윤4월 1일 ~ 1891년(고종28) 7월 14일	古5125-88-v.1-21
	詞訟錄	충청감영	1890년(고종27) 6월 15일부터 7월 7일	古5125-81
	詞訟錄	진천현	1891년(고종28) 1월~4월	古5125-19-v.1-4
	詞訟錄	아산군	1897년 3월~5월, 1898년 윤3월~4월	古5125-72
평안도	題辭	의주부	戊辰年 7월 15일 ~ 8월 24일	古5125-111
	民抄課	의주부	1881년(고종18) 6월 18일~7월 19일	古5125-3
	民訴題軸	태전군	1883년(고종20) 8월 8일~1884년(고종 21)	古5125-46-v.1-2
	訴訟指令案	남포군	1898년(광무2) 3월 19일~5월 5일	古5125-29
	詞訟案	남포군	1898년(광무2) 5월 6일~10월 29일	古5125-26
	訴訟案	남포군	1899년(광무3) 1월 22일~6월 6일	古5125-28
한성부	訴狀	한성부	1894년(고종31) 8월 29일~12월 28일	古5125-106
함경도	訟題	이원현	18세기 이후	古5125-99
	訟案	함경감영	1874년(고종11) 10월 1일~11월 27일 1875년(고종12) 4월 27일~6월 9일	古5125-80-v.1-2
	民訴置簿	정평부	1887년(고종24) 3월 1일~6월 4일	古5125-11-v.1-2
	洪城訴牒題	홍원현	19세기 후반	古5125-107
황해도	海營訟案	황해감영	1854년(철종5) 1월~1855년(철종6) 1월	古5120-13-v.1-14
	民訟牒錄	토산군	1895년(고종32) 10월 28일 ~ 1896년(건양1) 5월 6일	古5125-62
	民狀歸正顛末	문화군	1896년(건양1) 1월 16일	一簣古347.2-M667

가장 이른 시기의 민장 자료는 전라도 『靈巖郡所志謄書冊(古5120-158)』으로 1838년(헌종 6)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11일 간 처리한 소지를 정리한 것이며, 이후 1839년(헌종 7) 3월, 4월(『靈巖郡所志謄書冊(奎27509-v.1-2)』)의 것도 남아있다. 『영암군소지등서책』의 경우 1838년(헌종 4) 7월에는 총 187건의 소지가, 1839년(헌종 9)에는 248건의 소지가 요약되어 있다. 다음으로 1846년(헌종 12) 윤5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176건의 소지를 기록한 경상도 영천군의 『民狀草概冊(古5120-177)』이 있다. 이 세 민장 자료는 선행연구를 통해 민간의 분쟁에 있어 전정, 군정, 환정 등 부세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으며, 그에 못지않게 相鬪 또한 많았음이 확인되었다. 상투의 원인은 전답의 매매, 징채, 탈경 등이었다.¹³⁰⁾

지역별로는 한성부를 비롯해 8도의 민장이 시기적으로는 분산되어 있지만 현존하고 있어 적어도 19세기의 경우 전국 군현별로 이를 정리,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민장 초록의 원칙은 각 군현별로 유사한 형식을 보인다. 起頭에 날짜 별로 청원인의 거주 面·里名과 이름을 적은 후 소

130) 金仁杰, 「앞의 논문」, 1990.

지의 내용은 요약하고 지방관의 판결 사항인 제사는 원본 내용 그대로 적었다. 말미에는 사건 처리를 위임받은 狀者, 差使, 面任, 主人, 使令 등을 기록하였다.

민장 자료 가운데 특별한 형식을 보인 것은 1897년(건양 2) 경상도 김산군민이 군수에게 올린 『訟案』이다. 『송안』은 1896년 7월부터 1897년 9월까지 김산군에서 처리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여러 책이 남아있다. 먼저 『訟案一(古5125-115-v.1-2)』은 2책이 있다. 1책은 『송안1』로 1896년(건양 1) 7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처리한 것이며, 2책은 『송안3』으로 1897년(건양 2) 5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기록이다. 또한 『訟案二(古5125-110)』은 1896년 10월 9일에서 1897년 4월 29일까지 처리한 것으로, 앞의 『송안1』과 『송안3』사이의 책이다. 이 책들은 다른 민장 자료와 마찬가지로 소지내용을 초록한 형태이다.

그러나 『송안(古5125-113-v.1-4)』와 『송안(古5125-116-v.1-2)』는 소지의 원본을 그대로 묶어 책으로 만들었다. 먼저 『송안(古5125-113-v.1-4)』은 4책으로 구성되었다. 1책 『송안1』은 1897년 7월 11일부터 19일까지이며, 2책 『송안2』은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3책 『송안3』은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소지가 기록되어 있다. 4책 『송안4』은 8월 20일부터 29일까지이다. 이 자료의 경우 중앙에 “慶尙北道金山郡訴訟紙”라고 인쇄된 소송지를 사용했으며, 초록한 내용이 아니라 민이 제출한 소지의 서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의 처결인 제사가 모두 초서로 적혀져 있어 민이 제출한 소지 원본을 관에서 모아 책으로 엮은 것으로 파악된다.¹³¹⁾ 『송안(古5125-116-v.1-2)』 또한 1책은 1897년 9월 1일~17일, 2책은 9월 17일~29일의 기록인데 동일한 형식을 보였고, 10월에 처분한 소지를 엮은 『題辭案(古5120-33)』도 마찬가지였다. 이 경우 정소인이 두 개의 소지를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원본은 관에서 보관하고 제사만 별도로 받은 것인지 좀 더 연구해 볼 문제이다.

이러한 민장 자료는 관찰사가 있는 감영에서 처리, 성책한 것과 군현에서 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감영

감영에서 성책한 민장자료로는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 함경도 등이 남아있다. 강원도의 『議送謄書冊(古5125-55-v.1-17)』은 1891년(고종 28) 10월 23일부터 1893년(고종 30) 2월 29일까지 강원도민이 원주 감영에 제출한 소지를 정리한 것이다. 1891년(고종 28) 10

131) 김산군 『송안』 자료를 해제한 심재우 역시 소지의 원본을 묶어 성책한 것으로 파악하였다.(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송안(古5125-113-v.1-4)』, 『송안(古5125-116-v.1-2)』 해제 참조)

월 8일 고종은 尹榮信을 강원도관찰사에 제수했으며,¹³²⁾ 1893년(고종 30) 3월 27일 閔亨植으로 교체되는 것으로 보아¹³³⁾ 『의송등서책』은 윤영신이 강원감사 재직 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총 17책으로, 월마다 1책으로 만들었다.

[표 2] 『議送騰書冊(古5125-55-v.1-17)』의 구성과 자료건수

책수	연도	수록기간	처리 일수	건수	책수	연도	수록기간	처리 일수	건수
1책	1891	10월 23일~28일	4	13	10책	1892	7월 1일~30일	26	71
2책		11월 3일~30일	20	56	11책		8월 1일~30일	23	69
3책		12월 1일~30일	27	87	12책		9월 1일~29일	24	79
4책	1892	2월 1일~29일	24	89	13책		10월 1일~30일	30	93
5책		3월 1일~30일	28	105	14책		11월 1일~30일	23	79
6책		4월 1일~29일	25	119	15책		12월 2일~25일	20	99
7책		5월 1일~29일	25	114	16책	1893	1월 3일~29일	19	54
8책		6월 1일~30일	25	102	17책		2월 1일~29일	19	76
9책		윤6월 1일~29일	25	67	합계			383	1,372

『의송등서책』에는 총 1,372건의 소지가 기록되었다[표 2 참조]. 이는 윤영신이 재임기간 동안 처리한 소지의 건수라고 할 수 있다. 수록기간이 짧은 1891년 10월의 기록을 제외하면, 윤영신은 월평균 85건의 소지를 처리하였다. 윤영신의 소지처리 일수는 총 383일로 일평균 3.5건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보면 1892년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평균 110건을 처리하여 이 시기 제출된 소지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10월의 경우는 한 달 내내 소지업무가 빠지지 않았다. 1891년과 1892년을 비교해보면 겨울철 농한기인 11월, 12월의 경우 1891년이 각각 56건, 87건임에 반해 1892년에는 79건, 99건으로 증가하였다. 일평균 건수 또한 1891년 11월 2.8일, 12월 3.2건이며, 1892년은 11월 3.4, 12월 5.1건으로 증가하였다.

『의송등서책』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民訟草概(奎27716)』이다. 이것은 일자 구분 없이 1891년 11월에 제출된 소지 4건의 개요를 기록한 것이다. 이의 내용을 보면 먼저 3건은 이서나 관속과 연관된 것이다. 1건은 원주의 안윤희 등 13인이 하리 손안식이 헐가로 늑매한 자신들의 전답에 대한 환퇴요청이며, 1건은 평창 동면의 대소 민인들이 본 면에 있는 황정보를 잡아갈 때 中營의 교졸이 엽전 1100냥을 본 면에 勒徵했다고 호소하는 等狀이다. 1건은 평창의 지웅천, 김천역 등이 본군의 吏房이 자신들의 일로 營門에서 推捉할 때 납부하지 않은 200냥을 독

132) 『승정원일기』 3014책, 고종 28년 10월 8일.

133) 『승정원일기』 3032책, 고종 30년 3월 27일.

축하며 침학한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1건은 원주 도천에 사는 최병두가 수주면에 있는 자신의 田庄을 전 주인인 김사국이 환퇴하려고 하여 억울함을 호소한 소지이다.

이 4건과 관련된 사항은 『議送騰書冊(古5125-55-v.1-17)』에도 등장한다. 10월 23일 평창의 지응천과 전경천이 등장을 올리자, 관찰사는 해당 하리를 잡아가두고 전후 일의 사정을 상세히 보고해 오라고 평창관에 지시하였다. 10월 27일에는 평창 동면의 대소민인이 등장을 올려 중영 교졸들의 口招錢 추심을 금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등장에 관찰사는 황정보를 잡아가두고 보고하러 올 것, 황정보와 부동한 박가도 잡아서 보고하고 교졸 역시 이름들을 보고할 것 등을 본관에 지시하였다. 안윤환 등의 등장은 11월 3일 제출되며 이때 관찰사는 늑대는 법률이 있으니 상세히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본관에 지시하였다. 11월 11일에는 최병두의 소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보면 『민송초개』는 관찰사의 1차 처결을 받은 뒤 다시 소지를 올려 그동안의 처리 상황과 이에 따른 관찰사의 판결을 받은 기록임을 알 수 있다.

충청도의 경우 감영에 올린 소지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詞訟錄(古5125-88-v.1-21)』과 『詞訟錄(古5125-81)』이 있다. 『사송록(古5125-88-v.1-21)』의 경우 1책은 표제가 『충청도사송록』으로 되어있다. 시기는 1887년(고종 24) 윤4월 1일부터 1891년(고종 28) 7월 14일까지이며, 총 21책이 남아있다. 책의 구성은 다음의 [표 3]과 같으며, 수록된 소지의 건수는 총 4,934건이다.

[표 3] 『사송록(古5125-88-v.1-21)』의 구성과 자료건수

책수	연도	수록기간	건수	책수	연도	수록기간	건수
1책	1887	윤4월 1일~28일	402	12책	1891	2월 25일~윤2월 22일	305
2책		6월 1일~29일	253	13책		윤2월 22일~3월 7일	142
3책		7월 1일~29일	334	14책		7월 10일~28일	168
4책		8월 1일~29일	297	15책		9월 26일~10월 3일	93
5책		11월 1일~17일	260	16책		1월 22일~2월 12일	213
6책		11월 17일~29일	160	17책		2월 12일~3월 11일	240
7책		12월 1일~28일	331	18책		3월 11일~4월 6일	237
8책	1889	8월 19일~9월 1일	130	19책	1891	4월 8일~27일	238
9책		11월 10일~27일	303	20책		4월 28일~5월 28일	256
10책		11월 27일~12월 9일	184	21책		5월 29일~7월 14일	212
11책	1890	1월 19일~2월 5일	176			합계	4,934

[표 3]에서 보듯이 『詞訟錄(古5125-88-v.1-21)』의 경우 매월 관찰사의 소지처리 건수를 파악할 수 있는 시기는 1887년 6개월, 1890년은 2월과 윤2월, 1891년은 2월부터 6월까지 5개

월이다. 나머지의 경우 각 월의 일부 일자를 기록하고 있어 전체적인 파악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또 하나의 감영기록인 『詞訟錄(古5125-81)』은 수록시기가 1890년(고종 27) 6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로 『詞訟錄(古5125-88-v.1-21)』과 연결된다. 이 시기 충청도관찰사는 宋世憲이다. 송세헌은 강화유수로 재직하다가 1890년(고종 27) 3월에 충청감사에 제수되었지만 6월 7일이 되어서야 恭默齋에서 고종을 입시한 후 부임지로 떠났다.¹³⁴⁾ 『詞訟錄(古5125-81)』은 송세헌이 부임 직후 처리한 민장 자료라고 할 수 있다. 6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118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7월 2일부터 6일까지의 기록 중 두면이 결락되어 있어 소지의 수는 더 증가한다. 송세헌의 경우 부임한지 한 달도 못 미치는 기간에 118건 이상의 의송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두 자료를 토대로 월 단위의 건수가 확인되는 것은 1887년 윤4월 402건, 6월 253건, 7월 334건, 8월 297건, 11월 420건, 12월 331건, 1891년 2월 209건, 3월 309건, 4월 334건, 5월 232건, 6월 136건 총 3,257건이다. 1887년의 경우 6개월간 평균 월340건, 1891년의 경우 5개월간 평균 244건을 처리하였다. 이는 비슷한 시기 월평균 85건의 소지를 처리한 강원도와 비교해보면 3배 이상의 수치이다.

황해도의 경우 『海營訟案(古5120-13-v.1-14)』이 남아있다. 이 자료는 1854년(철종 5) 1월부터 1855년(철종 6) 1월까지 1년 1개월간 황해도민들이 감영에 올린 의송이다. 이 시기 황해감사는 金泳根이다. 김영근은 1853년(철종 4) 7월 29일 황해도 관찰사에 임명되어 9월 10일 철종을 소견하고 임지로 떠난 후 1855년(철종 6) 3월까지 재임하였다.¹³⁵⁾ 따라서 『海營訟案』은 김영근이 임기 중에 처리한 의송을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총 14책으로 구성되었으며, 권마다 책 수를 써 놓았다. 송안의 형식은 초록한 소지내용과 관찰사의 제사를 문단을 나누고 형식을 달리해 구분했으며, 소지를 처리한 날짜를 맨 끝에 기록하였다.

[표 4] 『海營訟案(古5120-13-v.1-14)』의 구성과 자료건수

책수	연도	수록기간	처리 일수	건수	책수	연도	수록기간	처리 일수	건수
1책	1854	1월 4일~2월 1일	27	134	8책	1854	윤7월 1일~29일	27	120
2책		2월 2일~29일	21	68	9책		8월 3일~30일	20	87
3책		3월 1일~30일	23	69	10책		9월 1일~29일	27	97

134) 『승정원일기』 2995책, 고종 27년 3월 27일: 『승정원일기』 2998책, 고종 27년 6월 7일.

135) 『철종실록』 권5, 철종 4년 7월 29일 임신: 철종실록 5권, 철종 4년 9월 10일 임자.

4책		4월 1일~5월 2일	32	116	11책		10월 1일~30일	22	80
5책		5월 3일~29일	23	62	12책		11월 1일~29일	23	70
6책		6월 1일~30일	23	43	13책		12월 1일~30일	28	74
7책		7월 1일~30일	24	90	14책	1855	1월 4일~27일	20	78
합계								340	1,187

[표 4]를 통해 보면 황해감사 김영근이 재임 시 14개월간 처리한 소지의 건수는 총 1,187건이며, 소지업무를 담당할 일수는 340일이다. 월평균 24일 동안 85건의 소지를 처리했으며, 매일 3.5건의 민원을 처결한 것이다. 이는 앞서 강원도 관찰사였던 윤영신이 매일 84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과 비슷한 수치이다.

다음으로 전라 감영의 『民狀置簿(古5125-59)』이다. 이 민장자료는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인다. 다른 자료들은 날짜순으로 기재한 반면, 『민장치부』는 군현별로 기록하였다. 전라도 모든 군현이 아닌 광주, 남원, 순천을 비롯한 전라좌도 24개 고을과 강진이 포함되어 있다. 수록 시기는 1885년(고종 22)부터 1887년(고종 24)까지이나 1885년은 2월~4월뿐으로 기록이 소략하다. 1886년은 2월~12월, 1887년도는 1월~4월까지이다. 요약된 소지의 건수는 총 856건으로 아래의 [표 5]와 같다. 전라도 군현 가운데 남원이 가장 소지가 많았던 반면, 담양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표 5] 『民狀置簿(古5125-59)』의 구성과 자료건수

군현	1885	1886	1887	총수	군현	1885	1886	1887	총수
광주	1	16	5	22	강진	0	20	15	35
능주	1	28	5	34	옥과	0	9	4	13
남원	3	67	42	112	남평	0	16	21	37
장흥	2	14	8	24	흥양	0	30	17	47
순천	2	22	10	34	구례	0	15	11	26
담양	2	3	5	10	곡성	0	17	6	23
무주	2	15	5	22	운봉	0	36	7	43
보성	1	36	8	45	임실	0	37	16	53
낙안	0	13	3	16	장수	0	24	8	32
순창	0	14	6	20	진안	0	45	24	69
창평	0	10	3	13	동복	0	16	7	23
용담	0	20	6	26	화순	0	21	5	26
광양	0	46	5	51	합계	14	590	252	856

함경도의 경우 도내 군현과 병영 등에서 감영에 올린 소지를 성책한 『송안(古5125-80-v.1-2)』이 있다. 2책이 남아있는데, 1책은 1874년(고종 11) 10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며, 2책은 1875년(고종 12) 4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이다. 이 시기 함경도 관찰사는 徐堂輔로 파악된다.¹³⁶⁾ 『송안』에는 1874년(고종 11) 10월 47건, 11월 91건, 이듬해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19건, 5월 81건, 6월 1일부터 9일까지 24건으로, 61일간 총 262건의 의송이 수록되어 있다.

(2) 군현

군현에 올린 민장자료로는 경기도의 경우 陽城, 陽智, 陰竹 지역이 남아있다. 먼저 『송안(古5125-8-v.1-4)』은 陽城縣의 민들이 올린 것으로 4책이 남아있다. 1책은 1881년 1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이며, 총 129건의 소지가 정리되어 있다. 2책은 1881년 7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이며, 정리된 소지의 수는 96건이다. 3책은 1881년 10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72건이, 4책은 1881년 12월 3일부터 1882년 2월 20일까지 100건이 요약, 정리되었다. 1882년의 경우 1월은 15일부터 29일까지, 2월은 1일부터 8일까지, 3월은 19, 20일 2일뿐으로 자료가 소략하다.

『陽智縣訟案(古5125-108)』은 기축년 4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양지현에서 처리한 소지에 대한 개요이다. 표제는 “狀題”이나, 본문에 “己丑四月二十一日 陽智縣訟案”이라고 되어 있다. 4월부터 8월까지의 기록이지만, 4월은 4일, 5월은 8일, 6월은 3일, 7월은 2일, 8월은 7일로 24일간 82건의 소지를 정리하였다. 『訟案錄(古5125-27)』 또한 음죽군에서 처리한 것으로 1897년(건양 2) 7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69건의 소지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전라도 지역의 경우 옥구, 영암, 영광, 전주, 함열, 흥덕 등의 민장 자료가 전해진다. 그 가운데 영광군의 경우 1870년~1872년의 『민장치부책(규27609)』과 1897년의 『민장치부책(古5125-30)』에 총 7000건 이상의 민장이 수록되어 있다. 『민장치부책(규27609)』의 경우 1870년(고종 9) 6월에서 1872년(고종 9) 11월까지 영광군에 접수되어 처분을 받은 6,552개의 민장이 수록되었다. 그 가운데 1870년의 경우 9월, 1872년은 3월, 5월, 7월의 기록은 누락되었다. 민장의 수는 1870년 1,994건, 1871년 2,923건, 1872년 1,635건이다. 민장치부책 가운데 수록기간이 가장 길고 민장의 수도 가장 많다. 영광군수는 이 기간 동안 월평균 252건, 일평균 14건의 민장 등을 접수하고 지령을 내렸다.¹³⁷⁾ 전체적으로 부세갈등과 경제적 상투로 인한 분쟁

136) 서당보는 1874년(고종 11) 1월 23일 함경도 관찰사로 제수되었으며(『승정원일기』 2797책, 고종 11년 1월 23일) 이듬해 7월 25일 대전의 탄일에 함경도 관찰사로 방물을 봉진하고 있다(『승정원일기』 2815책, 고종 12년 7월 25일).

137) 문준영, 「19세기 후반 지방사회에서 민소와 청송실무-전라도 영광군 민장치부책의 분석」, 『법학연구』 60권 1호, 부산대법학연구소, 2019, 281~284쪽.

이 높은 비중을 점했으며, 개인 간 쟁송에서는 채송 및 동산관계, 산송, 전답송이 많았다.¹³⁸⁾ 1897년의 『민장치부책(古5125-30)』에는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총 679건의 민장이 수록되었다. 앞선 시기보다 민장의 건수가 급감하여 차이를 보이며, 부세문제로 인한 민간의 갈등도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¹³⁹⁾

경상도는 영천, 경산, 김산, 칠곡, 의령, 안의 지역의 민장이 남아있다. 그 가운데 김산군의 민장 자료가 『송안』, 『제사안』이란 이름으로 가장 많이 남아있다. 이들 자료를 통합해서 살펴보면, 김산군의 경우 1896년은 7월 15일부터 12월 29일까지, 1897년은 2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의 소지가 남아있다. 그 가운데 1897년 7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원본 소장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기록된 소지는 1896년은 587건, 1897년은 687건으로 총 1,274건이다. 월평균 건수는 1896년은 98건, 1897년은 76건이다. 1897년의 경우 전년도 보다 소지건수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표 6참조]

[표 6] 김산군 『訟案』, 『題辭案』의 시기와 자료건수

연도	수록기간	건수	연도	수록기간	건수
1896	7월 15일~29일	85	1897	4월 3일~29일	86
	8월 12일~29일	117		5월 1일~30일	76
	9월 1일~29일	122		6월 1일~29일	64
	10월 9일~30일	72		7월 1일~25일	65
	11월 3일~29일	72		8월 9일~29일	88
	12월 1일~29일	119		9월 1일~30일	89
1897	2월 18일~30일	80		10월 1일~29일	82
	3월 1일~19일	57	합계		1,274

평안도는 의주부, 태천군, 남포군의 민장자료가 남아있다. 먼저 의주부를 보면, 『題辭(古5125-111)』는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무진년 7월 15일에서 8월 24일까지 접수된 소지의 내용을 초록한 것이다. 『民抄課(古5125-3)』도 신사년 6월 18일~7월 19일 義州府 민들이 올린 소지와 관의 처결 내용을 요약하였다.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33건, 7월 1일부터 19일까지 159건 총 292건의 소지가 기록되어 있다.

『民訴題軸(古5125-46-v.1-2)』은 평안도 태천군의 민장자료이다. 2책이 남아있다. 1책은 표지에 “民訴題軸”이라 적혀 있으며, 1883년(고종 20)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총 244건

138) 문준영, 앞의 논문, 294쪽.

139) 鄭勝振, 「靈光 『民狀置簿冊』의 분석」, 『동방학지』 113, 2001.

의 소지가 실려 있다. 2책은 표지에 “訟案”이라 적혀 있으며 1884년(고종 21) 6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기록이다. 이 시기 태천군수는 7월 1일부터 8일까지, 10월 14일부터 24일까지 巡營을 행차하여 소지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 6월은 13일간 35건을, 7월은 19일간 68건, 8월은 16일간 52건, 9월은 24일간 114건, 10월은 18일간 87건, 11월과 12월은 각각 30일간 143건, 171건 등 총 670건의 소지를 처리하였다.[표 7참조] 이를 통해 태천군수는 1884년 7개월간 월평균 96건, 매일 평균 4.5건의 소지를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

[표 7] 태천군 『民訴題軸(古5125-46-v.1-2)』의 시기와 자료건수

표제	연도	수록기간	일수	건수	수록기간	일수	건수
民訴題軸	1883	8월 8일~20일	12	87	9월 2일~29일	26	157
					합계	38	244
訟案	1884	6월 6일~28일	13	35	7월 1일~29일	19	68
		8월 1일~24일	16	52	9월 5일~30일	24	114
		10월 1일~29일	18	87	11월 1일~30일	30	143
		12월 1일~30일	30	171	합계	150	670

남포군의 민장 자료로는 『訴訟指令案(古5125-29)』, 『詞訟案(古5125-26)』, 『訴訟案(古5125-28)』이 있다. 『소송지령안』은 1898년(광무2) 3월 19일부터 5월 5일까지 기록되었으며, 『사송안』은 이후 5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두 자료가 연결된다. 『소송안』은 1899년(광무3) 1월 22일부터 6월 6일까지 남포군에 제출된 소지가 정리되어 있다. 이 세 민장 자료에 수록된 소지의 총 건수는 683건이다[표 8 참조]. 1898년의 경우 군수가 소지업무를 본 기간은 164일이며, 이때 총 435건을 처리해 일평균 2.7건을 보였다. 1899년은 69일, 248건으로 일평균 3.6건이다.

[표 8] 남포군 민장자료의 시기와 자료건수

연도		수록기간	일수	건수	수록기간	일수	건수
訴訟指令案	1898	3월 19일~30일	11	50	윤3월 1일~29일	21	87
		4월 1일~30일	24	76	5월 2일~5일	3	3
5월 6일~30일		12	14	6월 2일~29일	21	37	
7월 2일~30일		19	41	8월 1일~26일	16	31	
9월 2일~30일		17	46	10월 1일~29일	20	50	
합계		164	435				
訴訟案	1899	1월 22일~26일	4	8	2월 3일~29일	19	75
		3월 1일~23일	20	67	4월 1일~29일	17	65
		5월 1일~21일	7	25	6월 4일~6일	2	8
합계					69	248	

함경도의 경우 『民訴置簿(古5125-11-v.1-2)』, 『訟題(古5125-99)』 등이 남아있다. 정평부의 민장자료인 『민소치부』는 2책이며, 1책은 1887년(고종 24) 3월, 2책은 윤4월부터 6월 4일까지의 기록이다. 3월 105건, 4월 81건, 윤4월 72건, 5월 64건, 6월 3건 등 총 325건의 민소가 수록되었다. 6월 3건을 제외하면 정평부의 경우 월 평균은 81건, 한 달 평균 24일 동안 매일 약 3건의 소장을 접수하였다.

한편 함경도 민장자료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관에서 내린 제사만을 모아 수록한 『訟題(古5125-99)』가 있다. 『송제』는 이원현감이 처결한 제사를 山訟類, 田粧, 債錢, 還穀, 頃戶役, 分揀, 遞任, 請放, 相鬪, 通奸, 養子, 斃牛, 松木斫伐, 噬虎, 禁酒, 失鷹, 請褒, 合雜 등 소지의 내용별로 분류하여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황해도에는 토산군과 문화군의 민장자료가 남아 있다. 『民訟謄錄(古5125-62)』은 1895년(고종 32) 10월 28일부터 1896년(건양 1) 5월 6일까지 황해도 兎山郡에 올린 민장이다. 표제는 “訟案”이나 기두에는 “乙未十月日 民訟謄錄”이라 적혀 있다. 총 208건의 소지와 군수의 처결이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 장에 建陽 元年 開城府觀察使 李教榮 등이 여러 달에 걸쳐 兎山郡守 尹某에 대해 褒貶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과 같이 19세기 민장자료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민장의 기록은 사송처리 업무과정의 최종단계이다. 현재 규장각에 남아있는 감영과 군현에서 처리한 민장자료를 통해 민장 기록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각도 감영에서 성책한 민장 자료의 경우 군현에서 작성한 것보다 자료의 가독성이 좋을 뿐 아니라 수록된 소지 건수도 많은 장점이 있다. 따라서 관찰사 재임 시 처리한 사송업무 및 민원 내용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지역별 비교연구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군현에서 성책한 민장자료는 전라도 영광

군의 민장치부책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소략하고 시기도 짧아 전반적인 군현의 사송업무 실태나 갈등양상, 소송의 과정 등을 살펴보기에는 제한적이다. 다만 경상도 김산군의 경우 1897년 7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원본 소장을 수록하고 있어 민의 분쟁 양상을 자세히 살필 수 있었다.

4. 맺음말

조선시대 소송에 대한 기본 방침은 공자의 ‘使無訟’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가 진전되고 소송이 일상화되는 양상 속에서 민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소송을 줄이는 聽訟의 방침으로 전환되었다. 목민서에서는 청송의 환경을 지방관이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재판의 공정성은 물론, 소지의 접수, 처리, 기록 등 사송의 실무행정에 지방관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였다.

18~19세기 목민서에서 나타나는 민소처리의 지침은 첫째, 소지제출의 자율성이다. 누구나 소지를 제출할 수 있지만 대리제출은 허용하지 않았다. 소지를 접수하는 관 또한 이러한 원칙을 榜文을 통해 향촌 내 민에게 고지하도록 했으며, 정소인이 이서 및 관속들에 의해 관문출입이 제지되는 것을 단속하였다. 둘째, 소지접수 및 처리의 효율성이다. 소지는 접수부터 판결까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거주지 원근에 따른 소지처리 방식을 제시해 사송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 셋째, 지방관의 직접 처리 및 신속성이다. 지방관이 향촌사회 전반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민이 제출한 소지를 통해서이다. 종래 이서층에게 일임한 소지처리 업무를 지방관이 직접 관여해 중간에서 발생하는 이들의 폐단을 제거하는 한편, 관내 민원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증가하는 사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접수된 소지의 즉각 수령과 예제를 통한 제사 작성의 간소화, 신속화를 꾀하였다. 넷째, 민장 기록의 상시화이다. 청원관련 자료인 민장은 소지 처리의 마지막 단계로, 관의 처결결과를 확인하는 참고자료로 이용되었다. 목민서에서는 민장 기록을 통해 호송지류들을 파악, 민소감소의 효과를 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민소처리 방침의 최종 목표는 민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심의 판결하여 소송을 줄이는 ‘詞訟簡’을 향한 것이었다. 그것의 실질적 결과물들로 남아있는 것이 민장 자료들이며, 『유서필지』, 『향다반』과 같은 서식용례집이라고 할 수 있다. 민장으로 대표되는 사송관련 자료는 고문서 번역 작업과정에서 소지 및 결송입안 등이 일부 번역되었으며, 민장치부책 역시 충청도 진천의 『사송록』이나 부안의 『민장치부책』 등이 번역되었다. 또한 1895년 7월부터 1897년 2

월까지 임실군에서 처리한 『民訴冊』도 번역되어 연구자들의 기초자료로 이용되었다.

특히 민장자료 중 본문에서 제시된 것 외에 『訴狀(奎17281-v.1-45)』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는 『법부소장』으로 영인되어 있으며, 여기에 수록된 각종 소장 및 청원서는 1895년 4월부터 1906년 12월까지 전국의 민인이 법부에 제출한 것이다. 1895년은 신분제 질서에 바탕을 둔 조선의 재판제도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로, 사법기관의 관제, 소송절차, 형사법규 등에 대한 개혁이 있었다. 따라서 『법부소장』내 각종 소장은 사법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출된 것이다. 그 내면에는 구래의 질서와 신규 질서가 착종되는 시기의 민간의 각종 분쟁과 이의 해결을 원하는 민인의 청원을 담고 있다. 특히 『법부소장』의 경우 각급 재판소의 판결이나 수사처분에 불만을 품은 민인이 최고 사법기관인 법부로 上訴하거나 재판소의 관할권을 뛰어 넘어 越訴한 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 아닌 실제 제출한 원문을 그대로 실었기 때문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성명, 거주지, 직업, 소장의 취지, 소장에 나타난 사회현실, 민인들의 요구 등 다양한 의미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나 법사 연구에서 이러한 『소장』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사법관련 기초자료인 『소장』에 대한 번역을 비롯해 법사회사적 측면의 다각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조선후기 분쟁 양상과 官의 역할

—『恒茶飯』 청원 사례를 중심으로—

박 경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 머리말

조선시대 백성들이 관에 청원할 사안이 있을 때 소지(所志), 원정(原情), 발괄[白活], 상서(上書), 단자(單子), 등장(等狀), 의송(議送) 등의 문서를 올렸는데, 이 소지류 문서들을 포괄하여 소지라고 하기도 했다. 또한 왕에게 청원하기 위해 올리던 문서인 상언(上言)이 있다.¹⁴⁰⁾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청원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1차적으로 수령에게 소지를 올렸고, 이 청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관찰사나 어사에게 올리기도 했는데, 관찰사나 어사에게 올린 소지를 의송이라고 했다. 서울에서는 5부나 한성부에 소지를 올렸다. 또한 중앙의 담당 관사에 소지를 올릴 수도 있었다.

소지는 관의 공증 등의 행정 조치가 필요할 때, 법에 규정된 지위나 포상을 허가받기 위해, 분쟁에 대한 판결을 요청하면서,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올렸다. 즉, 이는 백성들이 관에 공적 역할을 요청함으로써 본인이나 공동체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또, 백성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서술한 1차 사료라는 점에서 필자나 편자에 의해 편집된 다른 사료와는 달리 편집되지 않은 생생한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

다만 그 내용에 청원자의 생각과 감정이 온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관에서 청원 내용을 수용하기를 바라며 수령을 비롯한 관원을 설득하기 위해 소지를 올렸다는 점에서 소지 내용은 법과 사회 상규를 반영한 논리적인 글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청원자는 자신들의 입장을 잘 설명하면서도 보편 타당한 논리와 언어로 표현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소지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관원이나 이서들 입장에서도 백성들의 다양한 청원에 대해 법과 사회 상규에 부합하며,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40) 조선시대 관인이 아닌 사인이 왕에게 올리던 문서 중 정책에 관한 진언이 아닌 개인, 혹은 집단이 억울함을 풀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청원할 사안이 있을 때 문서로 올리던 제도가 상언이다. 또 왕이 거동한 곳이나 궁궐 부근, 혹은 궁궐 안에 난입하여 정을 쳐 이목을 집중시키고 호소하던 격쟁이 있었는데, 격쟁은 구두로 호소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지의 투식과 상황별로 소지에서 사용해야 하는 언어, 각종 소지에 대한 처리 방침은 정소자(呈訴者) 뿐 아니라 청원을 처리하는 관원이나 이서 모두에게 필요한 사항이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 사이에 처음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소지 서식집으로 『유서필지(儒胥必知)』가 있다. 『유서필지』는 단자류, 문권류, 통문투 등의 서식도 수록되어 있으나 상언, 격쟁 원정, 소지류와 같은 청원서 서식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항다반(恒茶飯)』도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소지 실례가 수록된 책이다. 이 책의 첫머리에는 ‘신해년 11월 20일에 쓰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선산에 다른 사람이 능장(勒葬)함[先山被人勒葬]’이라는 제목의 소지 데감에는 『대전통편』 규정이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신해년은 1791년(정조 15) 혹은 1851년(철종 2) 두 해 중의 한 해이며, 최초 기록 후 내용이 추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그 내용은 고을 백성들의 청원에 대한 수령의 처분이 중심이 된다. 즉, 18세기 말~19세기 조선 사회에서 백성들의 각종 청원에 대해 수령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것이다.

그동안 소지에 대한 연구는 조선 후기에 수적으로 풍부하고 한 사안에 대한 연관된 여러 건의 소지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소송의 전개 상황 및 판결을 파악하기 용이한 산송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¹⁴¹⁾ 이 외에도 증직 청원 소지 등 사대부가의 연명 정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¹⁴²⁾ 또한 여성 청원,¹⁴³⁾ 정소 절차¹⁴⁴⁾ 및 소지류 서식과 용어¹⁴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산송 외의 사안별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소지류 문서들은 단발성 문서들이

141) 전경목, 1996, 「朝鮮後期 山訟 研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조선후기 山訟의 한 事例 (Ⅰ) -전라남도 영광군 立石里 世居 '독배기신씨' 松訟을 중심으로-」, 『古文書研究』14; 2003, 「조선후기 山訟의 한 사례(Ⅱ)-勒葬과 私掘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102; 김경숙, 2002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遠地墳山과 遷葬 - 海南 海南尹氏家の 사례를 중심으로」, 『史學研究』103; 2017, 「19세기 향촌 사대부가의 山訟 실태와 滯訟 - 潭陽 善山柳氏家 소장 고문서를 중심으로 -」, 『歷史學研究』66; 이옥, 2008, 「풍산 류씨 화경당 고문서로 읽는 사회사-山訟을 중심으로-」, 『안동학연구』7; 조미은, 2019, 「조선후기 영광 동래정씨의 분산 수호와 갈등 - 영광 동래정씨 산송 사례를 중심으로 -」, 『호남학』66.

142) 金景淑, 2013,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聯名呈訴 활동과 公論 형성-安東 周村 眞城李氏家 사례를 중심으로-」, 『사학연구』109; 김건우, 2019, 「19세기 先祖 증직 청원활동과 면역 - 南原 朴世重 家傳古文書 중심으로 -」, 『古文書研究』55.

143) 김경숙, 2005, 「조선후기 여성의 呈訴活動」, 『한국문화』36; 김경숙, 2021, 「17-18세기초 사대부가 여성의 친소(親訴)·친송(親訟) 활동 -영광 영월신씨가 고문서를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35; 홍은진, 1998, 「求禮 文化柳氏家の 한글所志에 대하여」, 『古文書研究』13; 박준호, 2018, 「조선후기 평민 여성의 한글 소지(所志) 글쓰기」, 『국학연구』36.

144) 김경숙, 2006, 「15세기 정소(呈訴)절차와 관찰사의 역할」, 『역사와 현실』59; 2017, 「조선후기 관찰사 題音의 到付와 到付狀」, 『古文書研究』51; 박재우, 2006, 「고려후기 所志의 처리절차와 立案발급」, 『古文書研究』29.

145) 全昊穆, 「朝鮮後期 所志類에 나타나는 '化民'에 대하여」, 『古文書研究』6; 1997, 「所志類의 데감에 나타나는 '告課'에 대하여 -親審과 代理審을 구별하는 방법-」, 『古文書研究』11; 이다희, 2018, 「조선후기 單子 연구 - 탄원서를 중심으로 -」, 『古文書研究』53.

많아 조선시대 법 적용 실태와 다양한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연구를 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항다반』에는 고을 단위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사안에 대한 소지 실례가 수록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은 소지를 통한 조선 후기 법 적용의 실태와 사회상, 수령의 대민 통치에 대해 파악하는 연구의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수록된 소지 실례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분쟁 해결 과정에 반영된 관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청원 목적을 기준으로 소지 유형을 분류하고, 이 유형 중 『항다반』에 수록된 소지 실례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그리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조선 후기 민의 호소에 대한 관의 대응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조선시대 청원 목적에 따른 소지 유형

소지류 문서는 문서 형식에 따라 소지, 원정, 발판, 상서, 단자, 등장, 의송 등으로 분류되며, 각각 기두어, 청원자의 신분이나 수, 목적에 차이가 있다. 한편, 조선시대 백성들이 관에 소지를 올린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선시대 민의 청원 목적에 따른 소지 분류

	청원 목적	주요 사례
1	관의 행정 조치 청원	(가) 사급(斜給): 거래, 증여, 문서 및 물건 서실 등 (나) 재산권 보호: 도둑맞은 재산, 노비 등 추심 (다) 처벌: 범죄, 풍속 문란 행위자 등 처벌
2	법에 규정된 지위·신분, 혹은 포상 허가 청원	(가) 입후, 보충대 입속 등 (나) 정려(旌閭), 증직(贈職), 환호(還戶)·잡역 면제 등
3	분쟁의 판결 청원	(가) 재산 소유권(노비, 전답, 가사 등), 사채, 임대차 분쟁 등 (나) 봉사권, 주인권 등 (다) 산송(山訟)
4	억울함 호소	(가) 관의 부당한 행정 조치(부당한 관권 행사, 세역 부과 등) 및 오결 시정 청원 (나) 권세가, 토호 등의 침학 호소 및 해결 청원

1의 사안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관에서 백성들에게 제공하던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청원이다.

1-(가)는 민간에서 거래, 증여 등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정 절차를 활용한 것이다. 거래 등이 이루어진 후 관의 인증, 즉 사급(斜給)을 청하는 소지를 올리면 규제화된 행정 절차에 따라 입안(立案)이 발급되었다. 매매 후 사급을 청하는 소지를 관할 지방관에 올리면 수령은 소지에 ‘예에 의하여 사급하라(依例斜給事)’ 혹은 ‘증인과 필집을 데리고 오라(證筆率來向事)’ 등의 데깁[題音]을 내린 후 방매(放賣)한 사람, 증인과 필집의 초사를 받고, 방매자의 소유인지의 여부를 증빙하는 문서를 검토한 후 입안을 발급했다. 이는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데깁의 내용도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대부분 위와 같이 간단했다.

1-(나)와 1-(다)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관에서 백성들에게 제공했던 보다 적극적인 행정 시스템을 활용한 것이다. 1-(나)의 경우 청원한 내용에 따라 관권을 행사하여 노비를 추심해주거나 도적을 붙잡기 위한 절차를 밟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했지만 상대측이나 관련자가 청원 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소지를 올리는 경우 소송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이 경우 3에 해당되며, 피고의 진술과 증거 문서 검토를 통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다)는 개인이나 집단 상호 간 갈등으로 벌어진 범죄 행위나 풍속을 문란하게 한 행위들을 징계해 달라고 청한 경우이다. 이는 상호 간의 갈등으로 벌어진 사건인만큼 상대측을 소환하여 조사한 후에야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대측을 잡아오라거나 데리고 오라는 내용의 데깁이 내려졌다. 1-(나), 1-(다)에 해당하는 사례는 『항다반』 에도 수록된 사례이다.

2의 사안은 법에 규정된 지위 및 신분, 혹은 포상 허가를 청원한 사안이다. 2-(가)의 입후와 보충대 입속에 관한 사안은 각각 예조와 장예원에서 소지를 접수하여 처리해야 하는 사안으로 『경국대전』 입후조와 천처첩자녀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¹⁴⁶⁾ 따라서 정소자도 입후를 위해, 천첩 자녀를 보충대에 입속시키기 위해 법에 부합하는 조건과 절차를 갖추었으며, 규정에 따라 처리해줄기를 청하는 비교적 간단한 내용의 소지를 올렸다. 그리고 이를 접수한 관사에서도 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했다.

입후를 예로 들자면, 입후 청원 소지의 내용은 현재 전해지는 입후 허가 사실을 증빙하는 계후 입안에 수록되어 있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¹⁴⁷⁾ 또한 해주 오씨 추탄 종가에는 소후모와 친부가 올린 소지 원본도 전해지고 있어 소지의 형태와 내용, 데깁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 양가에서 올린 소지 내용은 적처와 첩에 아들이 없고, 동종 지자인 6촌제의 둘째 아들을 계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양가에서 함께 의논해서 소지를 올린다는 점을 피력하여 왕에게 계문하여 입

146) 『경국대전』 권3, 예전, 立後; 『경국대전』 권5, 형전, 賤妻妾子女

147) 계후 입안을 바탕으로 한 양가 부모의 소지, 조목 혹은 공함, 검토 절차에 대해서는 박경, 2011, 『조선 전기의 입양과 가족제도』, 혜안, 154~162쪽 참조.

안을 발급해주기를 청하는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었다. 이 중 소후모가 올린 소지의 내용을 전제하면 다음과 같다.¹⁴⁸⁾

〈표 2〉 고 통덕랑 오언첨 처 안씨의 계후 청원 소지

원문	국역
故通德郎吳彦瞻妻安氏 右告矣段 家翁嫡妾俱無子身死 家翁同姓六寸弟彦□(思) 第二子泰承 欲爲繼後 兩家同議呈狀 依他立後□(事) 入啓後 立案成給爲只爲 行下向教是事 禮曹 處分 丙申 六月 日 所志 [題音] 入啓. 初三日. 堂上[着押]	고 통덕랑 오언첨 처 안씨 저는 다음과 같이 고합니다. 남편이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 없이 사망했으므로 남편의 동성 6촌 제 언사의 둘째 아들 태승을 계후하고자 양가(兩家)에서 함께 의논하여 소지를 올리니, 다른 예에 의해 입후할 일로 입계(入啓)한 후 입안을 발급하도록 처분해 주십시오. 예조 처분 병신년(1776) 6월 일 소지 [데김] 입계. 초 3일. 당상[착압]

이 소지에 대해 예조 당상은 ‘입계하라’는 간단한 내용의 데김만 내렸다. 이는 법에 부합하는 입후인지를 실무선에서 검토한 후 계문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친부인 오언사의 소지에서도 소지 내용을 친부의 입장에서 기술했을 뿐 소지 내용과 데김은 같았다.¹⁴⁹⁾

이에 비해 2-(나)의 정려와 증직은 해당 관사에서 사안을 검토한 후 왕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령이나 관찰사, 어사에게 올리는 상서나 단자는 정려, 증직 등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왕명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인만큼 이 사안에 관한 상서나 단자를 받은 수령, 관찰사, 어사 등은 데김에 확실한 입장을 밝힐 수 없었다. 열행, 효행 등을 칭찬하고 보고하겠다고 하거나 공의(公議)에 달린 것이라는 등의 데김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법과 규례에 의한 지위나 포상을 청원한 2의 사안은 『향다반』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다.

148) 1776년 고 통덕랑 오언첨 처 안씨 소지(『고문서집성36-용인 해주오씨』 124쪽;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문서자료관 웹사이트)

149) 1776년 전 도사 오언사 소지 (『고문서집성36-용인 해주오씨』 123쪽;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문서자료관 웹사이트)

3의 사안은 분쟁에 대한 처결을 청원한 사안이다. 분쟁에 대한 처결은 1차적으로는 지방관이 처리해야 할 업무로 재산 소유권 판결에서부터 사소한 분쟁 사안에 이르기까지 각 고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항다반』 사례의 다수를 차지한다. 분쟁 사안에 대해 처결해달라고 소지를 올려 송관이 상송(相訟)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원고, 피고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시송 다짐을 한 후 양측이 진술하고자 하는 사안을 모두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판결이 이루어졌다. 양측이 진술하고자 하는 사안을 모두 진술했다고 판단하면 원고, 피고가 함께 판결을 요청하는 결송 다짐 후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승소한 자는 자신의 승소 사실을 증빙하는 결송 입안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¹⁵⁰⁾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추문하여 진술을 받는 횃수가 많아지고, 다수의 증거 문서들이 제출되어 소송이 길어졌다. 이에 따라 매우 긴 결송 입안이 발급되기도 했다.¹⁵¹⁾ 이러한 과정을 거쳐 판결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주로 노비, 토지, 가사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었다. 『항다반』에 수록된 사례들은 이러한 사안이 아닌 매매 및 임대차 거래 과정이나 후에 발생한 불법 행위 등에 관한 분쟁, 산송 등에 관한 소지로 향촌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 상황이 드러난다. 이 경우 소지에 대한 데김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측 입장을 청취한 후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최초 소지에 대한 데김에는 호소 내용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상대측을 데려오라고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추후 원고나 피고의 소지에 데김이 내려지는 방식으로 판결이 이루어졌다. 『항다반』에는 한 사안에 대한 분쟁 당사자 양측의 소지가 함께 수록되어 분쟁 당사자 각자의 입장과 판결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도 있다.

4의 사안은 관의 부당한 행정 조치(부당한 관권 행사, 세역 부과 등)나 오결, 권세가나 토호의 침학으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한 청원이다. 잘못된 세역 부과와 같은 향리나 면임 등의 잘못은 수령에게 호소했지만 수령의 오결이나 권세가의 침학은 법에 규정된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에 따라 관찰사, 사헌부, 왕에 차례대로 호소할 수 있었다.¹⁵²⁾ 『항다반』에는 세역의 잘못된 부과에 대해 호소한 사안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고을 내의 세역 부과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령이 부과를 철회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최초 소지의 데김에서는 조사하여 부과를 철회하도록 했

150) 상송 사안의 판결 과정은 결송입안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조선시대 결송입안 70건을 번역한 『조선시대 결송입안 집성』이 곧 출간될 예정으로 이는 이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심희기 외, 『조선시대 결송입안 집성』, 민속원, 2022)

151) 현재 공간된 결송 입안 중 가장 긴 입안인 여주 이씨 독락당에 소장된 홍해군 입안의 경우 세로 길이 40cm, 가로 길이 3,230cm에 이르는 긴 입안이다. (「1578년 홍해군 결급 입안」, 『고문서집성65-경주 옥산 여주 이씨 독락당』,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152) 『경국대전』 권5, 형전, 訴冤.

다. 그러나 처음 올린 소지라 하더라도 잘못 부과했다는 증거가 명백한 경우 조사 절차 없이 부과를 철회하도록 한 데김이 내려지기도 했다.¹⁵³⁾

이상을 통해 한 사안에 대한 최초 소지의 데김에는 대체로 청원의 처리 방향에 대한 처분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항다반』에는 최초 올린 소지의 실례가 주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청원 후 이에 대한 결론이 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소자가 어떠한 논리로 청원하는가, 이에 대해 수령이 어떠한 가치관과 논리로 대응하는가를 통해 실제 고을에서의 대민 통치의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3. 『항다반』의 구성과 내용

『항다반』에는 51건의 소지 실례와 서식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49건은 각 사안별 소지 실례이고, 2건은 관찰사에게 올리는 청원서인 의송(議訟) 서식과 왕에게 올리는 상언(上言) 서식이 간단히 기재되어 있다.

소지 실례 중 기두어와 소지 말미의 투식과, 착관, 착압 부분까지 포함된 사례는 다음 2건이다. 소지의 첫머리에 기재하는 정소자는 모두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표 3〉 『항다반』 소지 실례 중 투식이 기재된 사례

원문	국역
① 守令辭狀 右謹陳所志矣段 ~ 千萬望良爲只爲 行下向教是事 巡使道 處分 年月日 所志 兼使 着押 某日 [題] 調理行公【或封還】	① 수령 사장(辭狀) 이 삼가 이르는 소지는 ~ 천만번 바라오니 처분해 주십시오. 순사도 처분 년 월 일 소지 겸사(兼使) 착압 모일 [데김] 조리하고 행공(行公)하라. 【혹 봉한 채 돌려줌.】
③ 場市毆鬪 右謹陳所志矣段 ~ 千萬望良爲只爲 行下向教是事 漢城府 處分【或刑曹 或某部 或使道主 或官司主】	이 삼가 이르는 소지는 ~ 천만번 바라오니 처분해 주십시오. 한성부 처분 【혹은 형조, 혹은 모부(部), 혹은 사도주, 혹은 관사주(官司主)】

153) 대표적으로 『유서필지』에 수록된 「외읍인의 탈역 소지」에는 타지에서 이주해 온 잔반인 자신을 담당 색리배들이 군안(軍案)에 수록하자 가승과 계보를 가지고 와 군역을 탈급(顛給)하고 군안에서 삭제해 줄 것을 청하자 이를 검토한 후 양반임이 분명하다며 탈급해 준 사례를 들 수 있다. (「외읍인의 탈역 소지」, 『유서필지』, 소지류)

年月日 [題] 查實嚴治次 某姓名身 捉來宜當向事 某日 狀 者 官【或使】着押 ¹⁵⁴⁾	년 월 일 [데김] 사실을 조사하여 엄히 다스리기 위해 모 성명을 잡아옴이 마땅하다. 모일. 소지를 올린 재[狀者]에게. 관官【혹은 사(使)】착압
---	--

산송의 첫 번째 사례인 10번째 문서 ‘서울에 사는 사람의 선산을 산 아래의 지손(支孫)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 장사지내도록 허락함[在京人先山 山下支孫 賣人許葬].’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는 ‘황공하오나 살피주십시오. 엎드려 아웁니다.[恐鑑伏以] ~ 천만번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千萬幸甚]’와 같이 기두어와 단자 말미의 투식을 기록했으며 이 외의 단자 말미의 투식, 착관, 착압 표기는 하지 않았다.¹⁵⁵⁾ 11번째 문서에서는 단자의 기두어만을 기록했다. 이 4건 외의 모든 실례에는 기두어와 문서 말미의 투식을 생략하여 ‘운운(云云)’이라고만 기재했다. 『유서필지』에서 모든 문서에 문서 투식과 형태까지 완전하게 갖춘 것과 비교된다. 따라서 『항다반』은 문서 서식보다는 소지와 데김의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49건의 소지 실례 중 2건은 수령 사장(辭狀)과 근친하기 위해 휴가를 청한 문서로 관의 인사 행정 관련 문서이다. 수령이 관찰사에게 올린 사장 역시 앞의 기두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지’라고 칭했다. 또, 근친하기 위해 휴가를 청한 문서는 유사한 내용의 문서가 『유서필지』에 수록되어 있는데, 『유서필지』에서는 향리가 수령에게 휴가를 청한 문서이다. 『항다반』에는 정소자와 소지 말미 투식이 기록되지 않아 수령이 관찰사에게 휴가를 청한 문서인지, 향리가 수령에게 휴가를 청한 문서인지 알 수 없다. 『유서필지』에 의하면 이 문서 역시 ‘소지’라고 칭했음을 알 수 있다.¹⁵⁶⁾

이 2건 외의 47건을 정소자가 청원한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관의 행정 조치 청원, 분쟁 해결 청원, 처벌 청원의 3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문서 말미의 투식이 기재되지 않아 이 소지들을 어떤 관사에 올렸는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2사례에는 해당 사안의 청원 가능 관사가 기재되어 있다. ‘장시(場市)에서 구타하며 싸움[場市毆鬪]’이라는 제목의 소지는 장시에서 구타당한 피해자가 차사를 보내 가해자를 잡아들여 엄히 다스려달라고 청한 사례인데,

154) 『항다반』 원문에는 데김의 ‘捉來宜當’까지 기록되고, 착관, 착압을 기재한 후 데김 마지막 부분인 ‘向事’와 데김 날짜, 데김 수령자가 기록되어 있다. 이 부분은 데김에 연이어 기록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원 문서에서 데김의 행이 바뀐 형태를 그대로 기록하다 보니, 이러한 형태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표 3>에서는 『항다반』 원문대로 수록하면 데김 내용이 분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向事’ 이하를 이전 데김 내용과 같은 행에 이어서 기재했다.

155) 『항다반』, 在京人先山山下支孫賣人許葬.

156) 『유서필지』, 소지류, 牧府使道吏輩受由所志. 이 소지 서식의 정소자의 직역과 이름이 기록된 ‘吏房姓名所志’ 부분에서 이 경우 발괄로 칭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문서 투식이 수록되어 있어 한성부에 올린 소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소지 실례에는 형조, 5부, 사도주, 관사주도 정소 대상 관사로 병기했다.¹⁵⁷⁾ 지방에서는 지방 관아, 한성부에서는 한성부나 5부에 정소할 수 있고, 폭력 사건에 대한 담당 관사인 형조에도 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적을 만남.[逢賊]’이라는 제목의 소지는 도둑을 체포하여 도둑맞은 물을 추징해 달라고 청한 사례인데, 서울은 좌·우포도청, 지방은 진영(鎭營)에 호소한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⁵⁸⁾ 이는 도둑을 잡아야 하는 일인만큼 일반 관아가 아닌 도둑 체포를 관장하는 포도청과 진영에 호소하도록 한 것이다. 이 외의 사례들은 분쟁 상대측을 잡아오거나 데려오라는 데감을 내리거나 데감의 내리는 대상이 면주인이라거나 현장 조사를 했다는 점 등의 내용들을 고려할 때 정소 관사가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방 수령에게 호소한 사안을 수록했음을 알 수 있다. 즉, 『항다반』의 사례들은 대부분 각 고을에서 수령에게 청원할만한 사안을 수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이 47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 <표 4> 와 같다.

<표 4> 『항다반』 소지의 청원 내용별 분류¹⁵⁹⁾

내용 분류		소지 제목
대분류	상세 분류	
관의 행정 조치 청원	재산권 보호 청원 <3건, 1-(나)>	⑦ 도적을 만남. ⑧ 도망 중인 노비의 추심을 소재관에게 요청함. ④⑦ 사노비를 유인함.
	세금 징수 관련 민원 <6건, 4-(가)>	1) 전세(田稅) 부과 관련 민원 ③⑤ 진전(陳田)이 기전(起田)이 됨. 2) 역(役) 부과 관련 민원 ④① 사노에게 양역을 지움. ④② 단노(單奴)가 주인에게 양역하고 있는 데 속오군에 편제됨. ④③ 백골(白骨)에 포를 징수함. ④④ 어린 아이를 군정에 등록함. ④⑤ 한 사람에게 역을 중첩하여 부과함.
처벌 청원	폭행, 욕설, 겁간 에 대한 형사 처 벌 청원 <7건, 1-(다)>	③ 장시(場市)에서 구타하며 싸움. ④ 사부(士夫)가 상놈에게 욕을 당함. ⑤ 남자로서 여자를 구타함. ⑥ 젊은이가 어른을 능욕함. ⑨ 김매던 농사꾼이 행패를 부림. ④⑩ 물대는 문제로 다투다가 구타당함. ④⑥ 유부녀가 겁간당함.
	묘지 관련 범죄	④⑤ 산 주인에게 산기슭을 사서 장사 지낸 후 산 주인의 지파(支派)가

157) 『항다반』, 場市毆鬪.

158) 『항다반』, 逢賊.

159) <표 4>의 작성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지 제목은 『항다반』의 소지 제목을 번역한 것이고, 소지 제목 앞의 숫자는 『항다반』 수록 순서이다. 둘째, 소지의 청원 내용은 소지 후반 청원자가 관에 청원한 내용을 기준으로 했다. 셋째, 상세 분류 < > 안의 ‘1-(나)’ 등은 앞의 <표 1>의 해당 분류 항목을 기입한 것이다.

	처벌 청원 <4건, 1-(다)>	사람을 보내 뇌물을 요구함. ⑩ 구목(邱木)을 범작(犯斫)함. ⑪ 산기슭에 불을 질러 개간함. ⑫ 묘에 방화함.
분쟁 해결 청원	장지(葬地)를 둘러싼 분쟁 <5건, 3-(다)>	⑩ 서울에 사는 사람의 선산을 산 아래의 지손(支孫)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 장사지내도록 허락함. ⑪ 어버이 장례를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금지당함. ⑫ 선산에 다른 사람이 능장(勒葬)함. ⑬ 어버이를 장사지내는데 다른 사람에게 월총을 부당하게 금지당함. ⑭ 선산이 다른 사람에게 월총이라고 무소당함.
	임대차 분쟁 <9건, 3-(가)>	1) 농우 임대차 분쟁 ⑮ 소를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사채 때문에 소를 빼앗김. ⑯ 농사철에 임박해 소를 빼앗음. ⑰ 도짓소(賭牛)를 몰래 팔아버림. ⑱ 도짓소를 도둑맞음. 2) 농지 임대차 분쟁 ⑲ 전토의 세곡을 갚지 않음. ⑳ 전토에 행패를 부려 일부러 진전으로 만들. ㉑ 전토의 경작을 금지했는데 억지로 경작함. ㉒ 농사철에 경작지를 빼앗김. 3) 말 임대차 분쟁 ㉓ 세준 말이 종로에 죽어 마주가 말값을 추심함.
	토지와 가택 거래 관련 분쟁 <8건, 3-(가)>	1) 토지 거래 관련 분쟁 ㉔ 다른 사람이 중복 방매한 토지를 잘못 사서 매매의 선후를 변별함. ㉕ 다른 사람이 중복 방매한 토지를 잘못 사서 진짜로 산 것인지 가짜로 산 것인지를 변별함. ㉖ 장토를 노속【혹은 먼 친족】이 훔쳐 팔. ㉗ 다른 사람의 장토(庄土)를 잘못 사서 장토의 주인에게 도매(盜買)했다고 무고당함. ㉘ 다른 사람의 전토를 영매(永買)했는데, 억지로 환퇴해 달라고 함. ㉙ 연한을 정하여 환퇴를 약속하고 토지를 팔았는데, 기한 내에 환퇴하기를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음. 2) 가택 및 가대 관련 분쟁 ㉚ 가택을 샀는데 옛 주인이 기한이 지나도 이사하지 않음. ㉛ 가대(家垞)를 샀는데 문서에 수록된 대토(垞土)와 원림(園林)을 잉집(仍執)함.
	사채 관련 분쟁 <4건, 3-(가)>	㉜ 사채(私債)를 이유로 토지나 소를 빼앗음. ㉝ 보증을 세우고 빚을 주었는데 빚진 사람이 도망가거나 죽어서 갚지 않음. ㉞ 사채를 죽인에게 징수함. ㉟ 사채 이자 외의 이자를 억지로 징수함
	기타 분쟁 <1건, 3-(가)>	㊱ 사냥매가 남의 닭을 잡자 닭 주인이 매를 죽여서 매 주인이 매값을 추심함.

〈표 4〉를 검토하면, 입후, 정려 등 중앙 관사에서 처리하거나 결정권이 왕에 있는 업무는 수

록하지 않았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사급을 청하는 소지도 수록되지 않았다. 분쟁에 대한 판결이나 갈등과 분쟁에 기인한 상대측의 처벌 요구 사안이 주류를 이루며, 수령 입장에서 백성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고을 백성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이 요구되는 사안들이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을 비롯한 생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 산송, 세금이나 역 문제 등 조선 후기 실제 생활에서 발생했던 갈등, 분쟁, 고충에 관한 사안들이다. 데감에 청원 내용 해결을 위한 다음 절차를 밟기 위한 처분 뿐 아니라 각 소지의 호소 내용에 대한 대응 원칙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감안하면 수령이나 향리가 고을에서 자주 발생하는 청원 사안을 잘 처리하기 위한 예시를 모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분석함으로써 조선 후기 대민 통치를 위한 가치와 원칙 등을 파악할 수 있다.

4. 『항다반』의 분쟁 사례에 반영된 수령의 역할

『항다반』에는 백성들의 청원에 대한 처분을 통해 당시 수령의 역할, 즉 수령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대민 통치를 해야 했는지가 드러난다. 그 중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두 가지 모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풍속 교화와 신분 질서 수호 방식

수령의 풍속 교화의 책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폭력 및 욕설 사례의 구성에서 드러난다. 이에 관한 소지는 ‘③ 시장에서 구타하며 싸움. ④ 사부(士夫)가 상놈에게 욕을 당함. ⑤ 남자로서 여자를 구타함. ⑥ 젊은이가 어른을 능욕함. ⑨ 김매던 농사꾼이 행패를 부림. ⑩ 물대는 문제로 다투다가 구타당함.’ 모두 6건이다. 9번째 문서와 40번째 문서는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문제로, 3번째에서 6번째까지 수록된 문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번째에서 6번째까지의 문서는 ‘시장에서 구타하며 싸움.’ ‘사부(士夫)가 상놈에게 욕을 당함.’ ‘남자로서 여자를 구타함.’ ‘젊은이가 어른을 능욕함.’이다. 시장에서 구타하며 싸운 사례는 일반적인 폭력 사안이지만 다른 세 사례의 제목을 살펴보면 폭력 사건 처리하는데 반상, 남녀, 장유 의 질서를 중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항다반』의 구성에서부터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구성 뿐 아니라 청원자의 소지에도 드러나며, 데감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관의 역할임과 동시에 백성들도 이를 체득하여 생활

화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편집자의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를 구타한 사례에서 피해자는 술을 팔아 살아가는 여성이었다. 가해자는 이 여성이 술빚이 쌓여 있다는 이유로 술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저녁에 술취해 와서 욕하고 구타하고 술독을 췌다. 이 여성은 “남녀 유별은 고금의 통의(通義)이고, 여인을 구타한 것은 풍화(風化)를 크게 해치는 일”이라며, 가해자를 관정에 잡아들여 남자로서 여자를 구타한 죄를 엄히 다스리고, 여태까지의 술값과 그릇을 깨 엮지른 술값을 추징해 주기를 청했다. 이에 의하면 청원자가 요청한 다스려야 할 죄는 상해의 정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남자로서 여자를 구타한 죄였다. 그러나 이는 한쪽의 주장이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엄히 조사하기 위해 모명(某名)을 잡아오라.”라는 데감을 내렸다. 그런데 데감의 앞 부분에 “일의 곡직은 고사하고 남자로서 여자를 구타한 것은 예율(禮律)을 크게 범하는 것이니, 이는 엄히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술값 및 용기를 깨 엮질러진 술도 과연 호소한 것과 같다면 또한 값을 추징하여 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¹⁶⁰⁾ 데감에서도 청원자의 청원 내용대로 폭행의 이유나 상해의 정도가 아닌 남자로서 여자를 구타했다는 행위 자체가 엄히 처벌해야 할 이유로서 언급되었고, 호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빚과 손괴한 재물을 변제해주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사안에 대한 처벌 및 관의 행정 조치의 기준을 이와 같이 명시한 것이다.

조선시대에 형률로 이용되었던 『대명률』에서는 폭력 사건 처리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도구 사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따라 형량이 규정되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따라 감형이나 가형되는 경우는 친족간, 노비·고공과 가장, 가장의 친족간, 양인과 천인간에 구타하는 경우, 소속된 관사의 장관이나 좌이관, 상급 관사의 관원이나 관품이 높은 자, 황명을 받든 사신, 스승을 구타하는 경우 등이다.¹⁶¹⁾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형률상의 형량을 따지기보다는 남자가 여자를 구타한 사실이 처벌의 이유로 거론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당시의 지방관은 내외법이나 여성의 정절이 중시되던 양반층뿐 아니라 상민 이하의 계층에서도 남녀유별이 가능하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녀유별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사건의 처벌에도 적용됨으로써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든 가치였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상전이 상한(常漢)에게 욕을 당했다며 처벌해달라고 호소한 사례에서는 당시의 신분 질서가 드러난다. 한 상한이 상전을 능멸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추한 욕을 했으며, 차사를 보내 그를 잡아들여 엄히 형추하고 조율(照律)해 달라고 청한 이 사례에서 처벌 청원 근거는 사부와 상한간의 명분이었다.¹⁶²⁾

160) 『항다반』, 以男毆女.

161) 『대명률』 권20, 형률, 鬪毆.

『대명률』에는 욕한 경우에 태 10에 처하도록 했고,¹⁶³⁾ 황명을 받든 사신, 자신이 속한 관서의 장관, 좌이관, 존장을 욕하거나 노비나 고공인이 가장이나 가장의 친족을 욕한 경우에는 가형하도록 했다.¹⁶⁴⁾ 『대명률』에는 상한이 양반에게 욕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1554년(명종 9) 수교에 “사족, 상한의 명분은 매우 엄하다. 서인(庶人)이나 천구(賤口)가 그 호강한 세력을 믿고 사족을 구타하면 전가사변의 율에 처한다는 것을 거듭 밝혀 거행하되, 양측의 원정(元情)에 근거하여 곡직을 밝게 변별하여 무거운 죄를 잘못 받는 일이 없게 한다.”¹⁶⁵⁾ 라고 했다. 상한이 사족을 구타한 행위 만으로도 전가사변이라는 무거운 형벌에 처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방관들이 민사·형사 사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법전 규정을 편집한 『결송유취보』에는 이 1554년(명종 9) 수교를 수록하면서 “우리 나라는 사족, 상한의 명분이 매우 엄하다. 서인이나 천구가 그 호강한 세력을 믿고 사족을 능욕하거나 구타하면 전가사변에 처한다.”¹⁶⁶⁾라고 변형하여 수록했다. 1554년(명종 9) 수교는 상한이 사족을 구타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지만 『결송유취보』에서는 이 규정을 수록하면서도 사족을 능욕한 행위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다. 이 소지의 청원자가 상전을 욕보인 상한의 행위에 대해 조율해달라고 청한 것은 『결송유취보』에 수록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데깁에서는 “과연 호소한 것과 같다면 아무개놈의 패악한 버릇이 진실로 매우 악하다. 조사·추문하여 엄히 처벌하기 위해 잡아오라.”고 하며, 그 상한의 행위를 패악한 행동으로 규정짓고 조사하여 사실이라면 처벌하고자 했다. 실제로 어떤 형률에 의해 처벌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한이 사족을 욕보인 행위만으로 처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다반』의 분쟁 사례 중에는 상한이 폭행이나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양반에게 항거하지 못한 사례들이 나타난다.

상전택에서 땅을 모 양반에게 경작하게 하다 그가 세조(貰租)를 갚지 않자 다른 사람에게 경작하도록 했는데, 전에 경작하던 그 양반이 와서 따비를 부러뜨리고 크게 꾸짖으며 경작자를 내쫓았지만 반상이 현격하여 감히 항거하지 못했다고 호소한 사례가 그러한 사례이다.¹⁶⁷⁾ 새로운 경작자가 상한이기 때문에 양반인 이전 경작자에 의해 경작지에서 부당하게 내쫓겼는데도 항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관에 올리는 소지의 문구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사족이나 관의 관점

162) 『항다반』, 士夫見辱常漢.

163) 『대명률』 권21, 형률, 罵詈, 罵人.

164) 『대명률』 권20, 형률, 罵詈.

165) 『수교집록』 권5, 형률, 推斷, 嘉靖甲寅承傳, “士族常漢之分 甚嚴 庶人賤口 恃其豪勢 毆打士族 全家徙邊之律 申明舉行 而據其兩邊元情 明下曲直 使無誤蒙重罪”

166) 『결송유취보』, 鬪毆, “我國士族常漢之分 甚爲嚴峻 庶人賤口 恃其豪勢 凌辱毆打士族者 全家徙邊”

167) 『항다반』, 田土作梗故陳.

에서 보편적으로 상정한 신분 질서가 그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상한이 양반에게 세 준 말이 중로에 죽어 말의 꼬리와 안장만 돌아오자 말 주인은 반상의 명분이 비록 엄하다 하더라도 죽고 사는 것 또한 크다며 말값을 추징해 달라고 호소한 소지가 수록되어 있다.¹⁶⁸⁾ 말 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양반을 상대로 소지를 올리는 것은 생업을 위해서이지 반상의 명분을 어그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한 후에야 말값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데검에서는 말값을 5일 내에 말 주인에게 주도록 하고, 기한 내에 주지 않으면 관에서 별도의 처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사족과 상한 사이의 분쟁이 벌어졌을 때 상한 측에서는 반상 질서를 존중하고 있음을 피력해야 했고, 수령은 이 질서를 유지하는데에 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족이 상한의 생계에 위협을 가했을 때에는 상한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의무감 역시 가져야 했음을 이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매매 및 임대차 거래의 판결과 수령의 대민 통치

『항다반』의 전체 사안 중에 매매 및 임대차 거래 분쟁 관련 소지는 모두 17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만큼 이 시기 고을 수령 입장에서 자주 접해야 하는 소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매매 관련 분쟁은 토지 매매와 가택 매매 사안이 수록되어 있다.

토지 매매 관련 소지에는 중복 매매, 도매(盜賣), 환퇴(還退) 관련 분쟁의 처리 원칙이 드러난다. 도매(盜賣)는 남의 소유물을 파는 것인데, 중복 매매도 팔아 남의 소유물이 된 것을 다시 판 것이라는 점에서 도매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중복 매매에 관해서는 중복 매매한 토지를 매득한 두 사람 각각의 입장이 드러난 한 사안의 두 건의 소지를 수록했다. 먼저 매득한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지를 올리자 뒤에 매득한 사람이 먼저 매득했다는 거래는 매매가 아닌 전당이라고 주장했다. 전자에서는 먼저 매득한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원칙을 내세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판결을 요청했다. 관에서는 청원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증거 문서인 양측의 문권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대질하도록 하라는 데검을 내렸다.¹⁶⁹⁾ 후자에서는 상대측의 거래가 매득한 것이 아닌 전당한 것이라고 주장

168) 『항다반』, 賁馬中路致斃馬主推價.

169) 『항다반』, 誤買人重賣土下先後買.

했다. 그 근거로 자신을 제 값을 주고 매득한데 비해 상대측은 헐값을 지불했고, 자신은 그 논의 경작자를 정하고 조(租)를 받는 등 소유권을 행사했는데, 상대측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령은 후자의 주장을 수용하는 데감을 내렸다.¹⁷⁰⁾ 이 두 소지를 통해 먼저 매득한 사람이 해당 토지의 주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측의 주장과 증거 문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도매 사례의 경우도 소유 토지가 도매되었다고 주장한 소지와 이에 대응하여 자신이 매득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한 소지, 한 사안의 2건의 소지를 함께 수록했다. 전자에서는 서울에 사는 양반의 노가 상전택의 장토(庄土)를 누군가 도매(盜賣)했다며 도매(盜買)한 모 양반에게 토지의 소출을 추징해 주기를 청했다. 이 소지를 받은 수령은 소지를 올린 노와 면주인에게 소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매(盜賣)와 도매(盜買)는 합당한 형률이 있다며, 조사하기 위해 관련자 모두를 잡아 오라는 데감을 내렸다.¹⁷¹⁾ 이에 대해 상대측의 노는 장토 주인의 노(혹은 친족 양반)가 배자를 가지고 와 이를 근거로 매득했다고 주장하고, 이미 판 토지를 근거 없이 다시 추심한다며 공정하게 판결해달라는 소지를 올렸다. 이에 수령은 소지를 올린 노에게 배자의 진위를 조사하기 위해 장토 주인의 배자를 거두어 바치라고 데감을 내렸다.¹⁷²⁾

『대명률』에서는 전지 1무, 가옥 1칸 이하를 도매(盜賣)하면 태 50에 처하고, 전지 5무, 가옥 3칸마다 1등씩 더하여 장 80도 2년까지 처할 수 있게 했다.¹⁷³⁾ 위의 사례를 통해 『대명률』에는 도매(盜賣)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지만 조선에서는 이와 함께 도매(盜買)도 처벌했을 수 있다. 역시 이 사례에서도 데감 내용을 통해 관련자를 조사하고 배자의 진위 감별과 같은 증거 문서 조사를 통해 도매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형률을 적용시켜야 함을 말하고 있다.

환퇴에 대해서는 모 양반이 상전택에 환퇴 조건 없이 영원히 방매한다는 문권을 작성하여 방매한 후에 전매를 피하여 억지로 환퇴하고자 한다며 이를 금단해달라는 내용의 소지를 수록했다. 이에 대해 수령은 이익을 피하여 억지로 환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상대측 노를 데리고 와서 변별하라는 데감을 내렸다.¹⁷⁴⁾ 또, 상전택에서 제위토(祭位土)를 매매하면서 환퇴 기한을 정했는데, 기한이 되기 전에 환퇴하고자 하자 상대측에서 거부했다는 소지 내용에 대해서는 환퇴를 약속한 문권을 작성했다면 환퇴 기한 내도 기한이라는 판결을 내렸다.¹⁷⁵⁾

170) 『항다반』, 誤買人重賣土卞眞假買.

171) 『항다반』, 庄土爲奴屬 【或疎族】 盜賣.

172) 『항다반』, 誤買人庄土被庄主盜買誣訴.

173) 『대명률』 권5, 호율, 田宅, 盜賣田宅.

174) 『항다반』, 永買人田土 橫被勒退.

175) 『항다반』, 賣土限年約退 限內請退不許.

이렇게 『항다반』 편집자는 중복 매매에 먼저 매득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원칙, 도매(盜賣)와 도매(盜買)를 형률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매매 거래의 원칙하에 판결하되 실제 판결을 청하는 소지가 올라오면 이를 적용시킬 조건이 되는지를 대질과 증거 문서 검토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는 판결 지침을 수록했다. 또한 환퇴 조건 없이 매매한 후에 차익을 얻으려고 환퇴하고자 하는 행위는 금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 드러나 있다. 기한이 차기를 기다리지 않고 기한 내라도 환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데검은 환퇴 조건부 매매가 정서상, 경제적 상황상 방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 처결이 수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당시 정서상 제위토는 자손으로서 차마 팔기 어려운 땅이기 때문에 환퇴 조건부 매매의 대표적인 사안으로 수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택 매매에서는 상전이 모 양반의 가대를 샀는데, 옛 주인이 이사하지 않자 엄히 가두어 이사를 독촉해 줄 것을 호소한 사례와 상전이 모 양반에게 가대를 매득했는데, 추후에 문권에 있는 일부 토지를 이 가대에 붙어 있는 땅이 아니라고 하니 대질하여 판결해 달라고 청한 소지가 각각 수록되어 있다.¹⁷⁶⁾ 가대 매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 두 사례의 데검에는 상대측을 불러 조사할 것을 명하면서도 전자에서는 이사하지 않은 전 주인을 책망하는 내용을 기술했고, 후자에서는 문권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고 기술하여 거래시 합의한 내용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포함시켰다. 이 역시 관에서 판결을 통해 거래시 합의한 내용을 지키도록 종용함으로써 관권을 통해 거래의 안정성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작지와 소의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8건 수록되어 있다. 경작지와 소는 농사를 짓는데 매우 필요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이 분쟁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소 임대차 분쟁에서는 우선 소유권을 보호하는 차원의 데검이 수록된 사례가 있다. 소를 임대했는데, 모택에서 소를 임차한 사람에게 받을 빚이 있다며 그 소를 빼앗아 간 사건, 소 임차인이 소 주인과 상의하지 않고 임차한 소를 팔아버린 사건이 그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수령은 주인이 있는 소를 빼앗은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 판단했으며, 멋대로 임차한 소를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소 값을 추징해 주어야 할 사안으로 보았다. 다른 분쟁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변(對辨)하여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상대측을 잡아들이도록 하는 명을 내린 것은 물론이다.¹⁷⁷⁾

한편, 소가 농사를 짓는데 매우 필요한 가축인만큼 임차인의 생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기도 했다. 해마다 모인에게 소를 빌려 도(賭)를 지급해왔는데, 그 소 주인이 농사지를 때가 되어 이유 없이 소를 빼앗아갔다면, 소 주인을 잡아들여 엄히 신칙하여 다시 돌

176) 『항다반』, 買貸載券堡土園林仍執.

177) 『항다반』, 牛隻給賭其人以私債見奪; 賭牛暗賣.

려주게 해 달라고 청한 사례가 그러한 사례이다.¹⁷⁸⁾ 이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농사철에 소를 빼앗겨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소 주인이 소를 돌려주게 해 달라고 당당하게 호소한 내용이 소지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데김에도 농사지를 때가 되어 소를 빼앗는 것은 농사지를 때에 임하여 경작지를 빼앗는 것과 형량이 같으며, 돌려주기 위해 소 주인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 농사철에 소를 빼앗는 것은 농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로 여겨 소유권을 제한하고, 심지어 처벌해야 할 일로 다루었던 것이다.

빌린 소를 도둑맞았다며 임차인에게 소 값을 추심해 달라는 소지에도 임차인이 소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은 있지만 죄는 도둑질한 자에게 있다며 진영에 가서 정소하여 소를 도둑질한 자를 체포해 달라고 호소하라고 처분했다.¹⁷⁹⁾ 이 분쟁이 지속된다면 임차인에게도 일정 정도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으나 이 사례에서는 우선 도둑을 잡아 추심하도록 함으로써 농경에 활용할 소를 잃고 소값까지 지불함으로써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고자 했다.

주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면서도 백성들이 농사를 폐하여 생업을 잃지 않도록 배려했던 수령의 처분은 농경지 임대차 분쟁에 대한 대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상전택 장토를 모 양반에게 경작하게 했는데, 올해 풍년이 들었는데도 세조(貰租)를 갚지 않는다며 그 양반을 잡아 몇일내로 받아달라고 청한 소지에 대해서 추징해 주기 위해 토지를 임차한 양반의 사지노자(事知奴子)를 잡아 오라고 데김을 내렸다.¹⁸⁰⁾ 이렇게 세곡을 납부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령은 차경인에게 세곡을 추징해 줌으로써 관권으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농사철에 임하여 경작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농사철에 임하여 소를 빼앗아 간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유권만 보호하지는 않았다. 이미 앞서 “농사지를 때가 되어 소를 빼앗는 것은 농사지를 때에 임하여 경작지를 빼앗는 것과 형량이 같다”는 데김을 내렸다는 것을 언급했다. 농사를 지으려하는데 일년 농사의 밑천이 되는 경작지나 소를 뺏는 것은 한해의 생업을 빼앗는 것으로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항다반』에는 각각 논임대인, 임차인이었던 양반 신분의 두 사람의 분쟁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이 분쟁은 논임대인 노의 소지에서 시작되었다. 이 소지에서는 임차인이 농사를 게을리할 뿐 아니라 내가 넘치도록 방치하여 해마다 땅이 줄어들어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옮겨 경작하게 하고 독을 쌓게 했는데, 이전 임차인이 역부들을 내쫓았다며, 그를 잡아들여 다시 행패를 부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했다. 이 소지를 접한 수령은 조

178) 『항다반』, 臨農奪牛.

179) 『항다반』, 賭牛逢賊.

180) 『항다반』, 田土稅穀不報.

사·추문하여 금단하기 위해 이전 임차인을 데리고 오라고 처분했다.¹⁸¹⁾ 그런데 이전 임차인의 입장은 달랐다. 이전 임차인의 노가 올린 소지에는 땅이 척박하고 논이 내 아래에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피력하고, 가을이나 겨울에 경작을 금지한다고 말하지 않고, 농사철이 되어 서야 새로운 경작자가 와 논 주인에게 허락받아 올해부터 경작할 것이라고 했으며, 그의 말만 듣고 스스로 물러날 수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그리고 농사철에 임하여 경작지를 빼앗는 것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잘 헤아려 처결해 주기를 청했다. 이에 수령은 “만일 경작을 금지하려 했다면 어찌 농사철에 임하여 사단을 일으키는가. 화해[私好]하는 것만 같지 못하니 상고 시행하라.”라고 했다.¹⁸²⁾ 농사철에 농지를 잃지 않도록 배려하며, 양측이 모두 양반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화해를 권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항다반』 사례를 통해 수령은 기본적으로 거래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가지고 판결에 임해야 했으며, 분쟁시 소유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청원이 있다면 세조 추심 등 소유권 행사에도 관권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소유권 행사가 다른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제한하여 생업 수단을 보호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5. 맺음말

181) 『항다반』, 田土禁作勒耕.

182) 『항다반』, 臨農奪耕.

형조의 四司九房 직제와 실무

—『추관지』, 『육전조례』, 『추조결옥록』의 비교 분석

조운선(한국고전번역원)

<차 례>

1. 머리말
2. 형조의 職制 구조와 『秋官志』·『六典條例』의 四司 조문
3. 九房의 관장·구관 조문과 實務
 - 1) 『秋官志』·『六典條例』의 九房 관장·구관 조문 비교
 - 2) 『秋曹決獄錄』의 九房 기록과 實務 내용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의 기본 행정 관사인 六曹 중 하나인 형조는 대표적인 사법 기관이다.

정2품 아문으로, “法律, 詳讞¹⁸³⁾, 詞訟, 奴隸의 政을 관장한다”¹⁸⁴⁾는 것은 『경국대전』에서 『육전조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정의이다. 형조는 조선 전 시기를 걸쳐 많은 사법 업무를 수행해 나가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 연구의 저변은 넓지 않다. 형조의 속사인 전옥서, 보민사에 대한 연구, 그리고 형조 업무의 하나이면서 형옥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인 三覆에 관한 선행 연구가 있는 정도이다.¹⁸⁵⁾

183) 詳은 심의의 뜻이고, 讞은 語와 審의 반절을 합쳐 발음한다. 옥사를 바로잡고 죄를 논의하는 것으로 비록 문서상으로 법에 합치하더라도 인심이 납득하지 않으면 그 죄를 상세하게 논의한다.(“詳, 審議也. 讞語審切, 正獄議罪也. 雖文致於法, 而人心不厭, 須詳議其罪也.”『經國大典註解 後集 吏典 天官 冢宰 六曹條 詳讞』)

184) “刑曹掌法律·詳讞·詞訟·奴隸之政”『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正二品衙門 六曹』, 『六典條例 刑典 刑曹 總論』

185) 『조선시대사법제도연구』(오갑균, 삼영사, 1995) 3장에서 형조를 다루고 있고, 조운선의 「朝鮮後期 刑曹와 典獄署의 構造와 業務」(『법제연구』 24, 한국법제연구원, 2003), 「17, 18세기 형조의 재원과 보민사·속전을 중심으로」(『조선시대사학보』 24, 2003), 「19세기 典獄署 분석—『六典條例』·『承政院日記』를 중심으로—」(『민족문화』 56, 2020), 「조선 후기 삼복(三覆) 제도 연구」(『법사학연구』 64호, 2021) 등이 있다.

형조는 보통 의금부, 사헌부 등과 함께 三法司라 하여 조선시대 사법 관사를 대표하는 의미로 쓰는데, 『속대전』 형전 禁制조의 세주¹⁸⁶⁾가 그 근거이다. 그러나 이 조문은 이들 세 관사가 조선시대 법사의 대표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니다. 물론 사헌부, 한성부 역시 중요한 사법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삼법사는 『속대전』 금제조에 국한된 것으로 어디까지나 出禁 업무에 관련된, 금령, 속전 등을 담당하는 관사로서 한정적인 의미로 써야한다.¹⁸⁷⁾ 그리고 형조는 출금보다 훨씬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글은 형조의 직제인 4사 9방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표이다. 형조의 직제와 직장은 『경국대전』에서 『대전회통』까지의 國典과 형조의 官署志인 『秋官志』, 19세기 법전인 『六典條例』에 실린 조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형조의 직제에 대해 관련 조문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지 못하였으며, 관서지인 『추관지』에 대한 분석도 미흡하였다.¹⁸⁸⁾ 더구나 4사와, 4사에 각각 속해있으면서 형조의 실무를 담당했던 9방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없다.

따라서 본 글은 형조 연구의 시작이 되었어야 할 주제인 4사와 9방에 대해, 관련 조문과 9방이 담당했던 실무를 고찰하려 한다. 자료는 『경국대전』 등 국전과 『육전조례』, 『추관지』의 조문과 기록을 정리하였고, 9방의 실무에 대해서는 『秋曹決獄錄』의 기록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에 『承政院日記』, 실록 등 관찬 사료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였다.

2. 형조의 職制 구조와 『秋官志』·『六典條例』의 四司 조문

186) “三法司【本曹 司憲府 漢城府】毋得在家出禁 毋得昏夜出禁 京城禁標外毋得出禁【亂塵同】禁條外毋得創出他條 量定時刻毋得踰越【先以禁條申嚴飭勵後 出禁每朔六次 四時名節並弛禁】禁吏憑依橫拿者杖一百【假稱禁吏閭里作挈者 論以遠配之律【增】 三法司木牌外加作紙牌一切嚴禁】”『續大典 刑典 禁制』

187) 『승정원일기』등의 사료에서도 삼법사는 주로 出禁, 贖錢, 禁亂, 徵贖 등에 한정하여 쓰인다. 유수원은 『우서』에서 형조, 사헌부가 금란에 간섭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았다.(“今之所謂三司禁亂駭怪莫甚 刑曹憲府 有何干涉於此等法禁哉”『迂書 5권 論兩司合行職務事宜』)

188) 『추관지』는 주로 殺獄, 獄案, 관례 연구나 이를 통한 사회상 연구의 자료로 이용되었다.

연정렬, 「『秋官志』에 관한 一研究; 聽訟을 中心으로」, 『논문집』제9집, 한성대학, 1985.

박경, 「살옥(殺獄) 판결을 통해 본 조선후기 지배층의 부처(夫妻)관계상-『추관지(秋官志)』 분석을 중심으로-」, 『여성과학사』10, 2009.

문현아, 「판결문 내용분석을 통한 조선후기 아내살해 사건의 재해석; 『추관지(秋官志)』 사례를 중심으로」, 『진단학보』113, 2011.

최진경, 「正祖時代 '復讐殺人'의 양상과 그 의미 : 『추관지』 復讐殺人 관례를 중심으로」, 『漢文學報』35, 2016.

백민정, 「조선후기 성 관련 범죄의 처벌 규정과 재판 양상-『審理錄』·『秋官志』와 『欽欽新書』의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87, 2020.

형조는 周官을 모방한 4司와 각 4사 당 두 개씩의 방에 형방을 더한 9房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⁸⁹⁾ 즉 詳覆司, 考律司, 掌禁司, 掌隸司의 4사 아래에 상1방, 상2방,¹⁹⁰⁾ 고1방, 고2방, 금1방, 금2방, 예1방, 예2방의 8방이 있고, 여기에 형방을 더한 9방의 직제 구조이다.¹⁹¹⁾

『추관지』에서는 형조의 4사와 9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형조를 나누어 4사로 하고 4사를 나누어 9방으로 하며, 또 9방에서 百司를 구관한다. 8도는 나무에 가지가 있고, 가지에 잎이 있는 것과 같아, 영솔하는 바가 비록 넓고, 관할하는 바가 비록 머나 한 조에 통속하지 않을 수 없다.¹⁹²⁾

형조를 4사로, 4사를 다시 9방으로 나누고 9방에서 모든 관사를 구관하며 八道 또한 형조에 통속하여 관할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9방의 경우, 이 체제가 국초부터 마련된 것은 아니다. 9방이 법제자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추관지』이며, 관찬사료에서도 정조 2년과 6년 두차례 9방 관련 기록이 있는 정도이다. 9방 관련 조문은 법전의 경우 『육전조례』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정조 이전에는 사료에 9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으며 현종대만 하더라도 형조의 직제는 8방으로 기록된다.¹⁹³⁾ 즉, 원래부터 형조의 직제가 4사 9방인 것으로 인식하여 왔으나 원래는 8방 구조였다가 현종대 이후 적어도 정조대에 가서 8방에 형방을 더한 9방 구조로 편성되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형방은 승정원의 형방이나 한성부, 병조의 형방¹⁹⁴⁾과는 또 다른 職司이다. 사료에 검색되는 대부분의

189) 형조는 積善坊, 즉 경복궁 광화문의 오른쪽에 있다. 형조의 북쪽에는 병조, 남쪽에는 공조, 동쪽에는 대로, 서쪽에는 율학청, 사역원이 있다. 문밖에는 못쓰게 된 우물, 청사 뒤에는 연못이 있으며, 당상의 청사, 行閣, 茶廚, 兒房 등의 구조로 되어있다.(『秋官志 卷1 館舍 本衙』) 4사와 9방 외에 속사인 율학청, 전옥서가 있고, 형조의 錢布를 관장하는 掌務所가 있다.

190) 상복사 밑의 방은 檢詳房이라고도 불렀던 듯 하다. 檢詳은 대신 낭청으로써 하여 殺獄文案을 看審하게 하여, 형조 안에 검상 2방을 설치하기에 이르게 되었는데 지금은 상1방, 상2방으로 칭한다고 하였다. 『承政院日記 正祖 19年 9月 12日』

191) 형조 소속의 속아문의 경우, 『경국대전』에는 장례원, 전옥서가 속아문이라 하였고, 『대전통편』에서는 장례원이 혁파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추관지』에서는 율학청, 전옥서, 장례원, 보민사, 좌우포청, 좌우순청이 형조의 속사로 기록되어 있으나 『육전조례』에서 율학청은 형조에 부속된 청으로, 그리고 전옥서는 형조, 의금부와 함께 독립된 관사로 배치되어 율학청과 전옥서의 위치 변화가 있다.

포도청의 경우는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차인배, 「조선후기 포도청의 사법적 위상과 활동 변화」, 『역사민속학』 제58호, 2020.) 실제 포도청이 속사로서 형조의 통제를 받고 있었는가 하는 점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192) 『秋官志 卷1 職掌 四司』

193) “李延年, 以刑曹言啓曰, 本曹郎廳二員減省, 時存六員內, 公私多故, 每坐只以數員進參, 八房事務積滯, 誠極可悶” 『承政院日記 顯宗 3年 4月 16日』

194) 병조에도 政色, 馬色 등과 형방, 예방이 있다. 병조의 형방은 查覈罪人, 歲抄, 改火 등의 일을 관장하였고, 西班 관리의 被謫蒙放, 奪告身, 禁錮, 削奪官爵, 削去仕版, 削職 등 附過 업무를 거행하였

형방은 승정원 6방 중의 하나인 형방으로, 관원은 刑房承旨로 기록된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는 형조 9방 중 하나인 형방은 刑曹參議가 구관하고 曹司佐郎이 겸찰하며, 8방과 더불어各司를 분장한다. 승정원, 병조, 한성부 등의 형방과는 구분해 보아야 할 것이다.

4사 9방의 업무에 대한 법전 규정, 관련 기록을 검토할 자료는 『추관지』와 『육전조례』이다. 두 자료는 기록이나 조문 내용, 편집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추관지』에는 각사 별로 관련 조문과 업무에 관련된 上奏나 啓, 이에 대한 형조의 回啓, 임금의 判付나 傳敎, 왕대별 獄案, 각종 규식에 대한 啓目·節目·例 등이 실려있다. 조선 초기부터 18세기까지 형조에 관한 각종 사례나 판례를 정리한 종합적 기록이다. 이에 반해 『육전조례』는 기존 國典의 4사 업무 정의에 따라 항목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관련 조문을 담은 법전이며, 19세기 형조에 대한 정보를 최종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형조의 職制나 職掌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18, 19세기 시기적으로 연결되는 이 두 자료를 반드시 비교 검토해 보아야 한다.

본고에서는 특히 두 자료가 각각 4사의 어떤 업무에 중점을 두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두 자료의 특성에 따라 각기 편찬이나 구성이 다르므로 단순비교는 어렵겠지만 시기적인 차이에 따른 변화가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려는 의도이다. 법전과 『추관지』, 『육전조례』의 4사 업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1> 4사 업무 정의

4사 명칭	『경국대전』 ¹⁹⁵⁾	『추관지』	『육전조례』
詳覆司/詳覆部 ¹⁹⁶⁾	掌詳覆大辟之事	掌詳覆大辟	掌詳覆大辟之事
考律司/考律部	掌律令·按覈之事	掌律令·按覈	掌律令按·覈之事
掌禁司/掌禁部	掌刑獄·禁令之事	掌刑獄·禁令	掌刑獄·禁令之事
掌隸司/掌隸部	掌奴隸·簿籍及俘囚等事	掌奴隸·俘囚·簿籍	掌奴隸·簿籍及俘囚等事

세 자료의 정의가 거의 같다. 이는 『추관지』와 『육전조례』가 『경국대전』의 규정을 成憲尊重的 차원에서 그대로 따른 것이다.

상복사는 “死罪[大辟]를 詳覆¹⁹⁷⁾하는 일을 관장한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것, 옥사

다. 한성부 소속의 형방은 閤家奪入이나 檢屍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承政院日記 英祖 15年 7月 14日』) “罷職·職牒還授·罷職不敘·準期不敘·永不敘用·永勿除職·革職·降資, 已上政色舉行, 被謫蒙放·奪告身·禁錮·削奪官爵·削去仕版·削職, 已上刑房舉行”(『六典條例 兵典 兵曹 政色 附過』)

195)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正二品衙門 六曹』

196) 『추관지』에서는 司 대신 部로 기록되어 있다.

197) 大辟은 死罪이고, 詳覆은 詳覈과 같은 뜻으로 ‘詳’은 審議하는 것이고 ‘覈’은 審이다.(『經國大典註解 後集 吏典 天官 冢宰 六曹條 詳覈』) 사죄를 ‘자세히 심의하고 살피는 일’이 상복이며, 死囚를 처형하기에 앞서 용서할 만한 점은 없는지를 세 번에 걸쳐 다시 살피는 三覆으로 구현된다. 삼복제도

를 의논하여 사형을 완화한다는 유교적 이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고을사는 “律令과 按覈을 관장한다.” 율령은 율과 령, 안핵은 어떤 죄에 疑端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로, 죄에 합당하는 율을 상고하는 것이다. 장금사는 “刑獄과 禁令을 관장”하고, 장례사는 “노비와 노비 관련 문적, 포로 등을 관장한다.” 형조의 업무는 크게 보면 상복, 심리, 율령, 안핵, 금령, 형옥, 노비 등이고, 이를 각각 4사에게 나누어 분장하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각각 맡은 업무가 다른 4사는 서로 간에 상하 위계나 업무 간에 경중이 있었을까. 즉 업무 자체로 보면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없겠지만 시기에 따라서 조금 더 시대적으로 의미가 있고, 중요도가 높은 업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다. 『추관지』와 『육전조례』의 조문을 통해 살펴보겠다.

① 상복사는 4사 중 가장 먼저 자리매김 되어 있고, 판서가 구관하는 등 그 중요성이 4사 중에 제일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막상 조문 상으로는 4사 중 가장 분량이 적다. 『추관지』는 啓覆의 계목 규칙과 계복과 관련된 上奏, 왕의 전교 정도이고,¹⁹⁸⁾ 『육전조례』도 상복사는 [詳覆大辟] 과 [審理] 단 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사 중 관련 조문이 제일 적다.

이처럼 두 자료 모두 상복사 관련 규정이 다른 3사에 비해 분량으로도, 내용적으로도 현저하게 적다. 의외라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기존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詳覆, 즉 三覆은 중종대 이후로는 점차 횟수가 적어지고, 순조대는 30년 동안 계복이 중지되는 등 조선후기 정조대 이후는 상복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¹⁹⁹⁾ 상복사의 원 기능이 상복이기 때문에 조문은 그

는 정조 이후에 『승정원일기』에서 그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詳覆이나 三覆에 관해서는 조운선, 「조선 후기 삼복(三覆) 제도 연구」 (『法史學研究』 第64號, 2021) 참고.
198) 啓覆에서 啓覆啓目規式과 이와 관련한 上奏나 傳敎 등 왕대별 교칙을 정리하였고, 김현, 동추, 신장 항목을 첨부하였다. 물론 이에 이어 사회적인 풍교에 관련된 윤상, 복수, 간음과 심리 등의 항목을 두었으나 내용은 獄案이다. 정조대 당시 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사회 윤리 기강 범죄에 관해 범주를 구분하여 관련 판례,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표2> 『추관지』 상복부의 구성과 목록

啓覆	啓覆啓目規式, 왕대별 관련 上奏, 傳敎
檢驗 附	初檢甘結規式, 覆檢移關規式, 初檢規式, 京司檢驗, 京司檢驗新定事目, 檢驗雜式十二則, 辜限加定三則
同推 附	왕대별 관련 上奏, 傳敎
訊杖 附	왕대별 관련 上奏, 傳敎, 釐正刑具, 釐正棍制
倫常	三省推治式二則, 弑父, 弑母, 毆父母, 弑夫, 奴殺主, 殺妻, 殺子婦, 殺弟, 殺姉妹女外孫女, 殺兄嫂姪婦, 殺從兄弟姪, 倫紀 관련 獄案
復讎	復父讐, 復母讐, 復夫讐, 復兄讐, 復子女讐 관련 獄案
奸淫	因奸殺妻, 因奸殺人, 淫獄 항목별 관련 獄案
審理上	獄案
審理中	獄案
審理下	獄案
附 欽恤	세종~정조 전교

199) 상복은 ‘죄를 심의한다’는 사전적 의미로써도 쓰지만, 三覆과 관련해서는 삼복 전에 의정부에서

대로 유지되었으나 이것만 가지고는 상복사의 주 업무라 하기는 힘들다.

그런 점에서 『육전조례』에서 상복 외에 [審理] 를 단독 항목으로 구성한 점이 주목된다. 상복사의 업무가 상복에서 심리로 그 중점이 옮겨지고 실질적으로 심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리 항목의 내용은 疏決에 대한 조문이다. 소결의 참석 관원은 삼복과 같으나²⁰⁰⁾ 소결은 삼복과 달리 형조가 중심이며,²⁰¹⁾ 왕과 형조간의 의견 조율이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삼복 중 형조가 담당하는 두 번째 심사인 再覆의 역할, 과정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²⁰²⁾

삼복이 매해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었다면 소결은 경사, 혹은 가뭄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그것을 이유로 수시로 시행할 수 있었다. 정기적인 시행이 원칙인 삼복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면서 횡수가 줄어들었던데 반해, 소결은 시행에 있어서 정해진 시기가 없었기에 수시로 행하였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 형조의 업무 중 소결, 심리의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형조는 심리가 중심 업무가 되고 심리 기관으로서 자리 잡아 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육전조례』 형조의 상복사에 심리가 독립 항목으로 설정된 이유, 배경이라 하겠다. 즉, 조선후기 상복사는 ‘三覆이라는 상징적인 업무’를 법규로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적 기능은 심리’에 있었음을 『육전조례』의 상복사 조문에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② 고율사에 대해서는 『추관지』 기록을 주목해 본다. 『추관지』에서 고율사 관련 기록은 4사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사법 관사로서의 형조의 제반 업무는 고율부에서 전부 다루고 있는 듯하다.

『추관지』에서 고율부는 크게 [除律] , [定制] , [續條] 로 구성되어 있다. [제율] 은 禁刑이나 형벌 시행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輕刑에 대한 것으로 고율부에서 유념하고 있어야 할 사항이다. [정제] 는 각종 事目, 節目과 規式, 別單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보통 고율부에서 다룰 것이라 예상한 大明律이 아니라 조선에서 제정된 각종 사목과 규식 등이 실려 있는데 이 또한 충분히 법적 강제력을 가진 것으로써 사법 행정에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

한번 행하는 ‘의정부상복’으로 쓰고, 삼복을 곧 상복이라고도 쓴다.

200) “六房承旨, 時任大臣, 의금부와 형조의 당상, 三司가 黑團領 차림으로 참석한다. 原任大臣은 特敎가 있으면 참석하기도 한다.” 『六典條例 刑典 刑曹 詳覆司 審理』

201) 국가에 경사가 있거나 가뭄이 들면 전교로, 혹은 연석에서 여쭙어, 서울과 지방의 獄囚를 심리하는데, 죄가 의심스러우면 傳生으로 참작하여 처리하고, 각 도에 정배된 죄수 가운데 죄가 가벼운 자는 참작하여 풀어주었다. 판당이 제도에서 錄啓한 문안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궁리하여 부생할 만한 자는 전에 신문하여 추핵한 것에 따라 의견을 갖춰 복게하여 제도에 통지하고, 녹계하지 않은 경우도 修啓하였다. 이 소결의 과정을 형조가 담당했다.

202) “再覆日, 本曹三堂上開坐, 只諸罪人文案, 修正入啓. 各其文案末端, 再覆施行, 啓目粘連.” 『六典條例 刑典 刑曹 詳覆司 詳覆大辟』

다. 기존 대명률이 있으므로 조선에서 새로 제정된 각종 사목, 규식을 정리한 것이라 생각된다. 除律이나 定制 정도도 고을사 업무에 적합한 구성이라 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은 [속조] 항목이 실상 고을사의 핵심 업무이다. 郎官, 開坐, 律官 등은 형조 관원과 관사에 대한 행정 규정으로, 특히 형조를 실제 이끌어 가는 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推斷, 罪囚, 徒流, 放赦, 竊盜, 濫刑, 私門用刑 등 형옥 업무에 관련된 사항 뿐 아니라 기타 소송이나 경제 사범, 의례 관련 등 매우 다양한 범주를 설정하고²⁰³⁾ 해당 소재나 사건에 대한 道啓, 형조의 回啓, 判付 등을 정리하였다. 『추관지』의 찬자는 사사 중 이 고을부 부분 편성에 가장 큰 공을 들였으며, 형조의 핵심 부서를 고을부로 생각한 듯 하다.

이에 반해 『육전조례』의 경우 고을사는 [律令], [擊鐙], [聽訟], [按覈] 이렇게 네 항목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중 46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율령] 항목은 『추관지』와는 달리 대명률과 국전 형전 조문이 내용이다. 五刑, 贖錢 규정, 八字之義[例分字義], 二罪俱發, 죄의 加減, 收贖, 故出入人罪, 十惡, 절도, 枉法, 坐贓, 制書有違 등은 실제 조선에서 조율할 때나 형옥을 처리할 때 관건이기도 하고, 사료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율이어서 대명률이 있음에도 이를 따로 뽑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실무를 처리할 때 가장 필요한 율이라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어서 당시 조선에서 발생빈도가 높았던 소송, 山訟이나 掘塚, 僞造, 도박, 犯分, 科場, 외국인 관련 규정과 西學, 간음죄 등에 대한 조문이 실려있다. 19세기 당시의 주요 범죄와 사회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1개의 조문이지만 [격쟁] 항목을 따로 설정한 점이 주목되는데, 그만큼 당시 격쟁이 매우 일반적이었던 것을 말해준다. 이는 실제로 다음 장에서 살필 9방의 실무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격쟁을 허용하는 장소²⁰⁴⁾, 격쟁을 접수하는 절차, 격쟁을 허락하는 四件事와 기타 형조

203)

<표3> 『추관지』 고을부의 구성과 목록

除律	除刑, 禁刑, 輕刑
定制	大軍籍事目, 改定徙邊事目, 戶籍事目, 號牌事目 등 각종 사목, 절목, 규식
續條一	郎官, 開坐, 律官, 本曹推斷
續條二	罪囚, 徒流, 放赦
續條三	科場, 竊盜
續條四	濫刑, 私門用刑, 犯分, 犯越
續條五	聽訟, 山訟, 上納, 軍務, 還上, 犯贓, 徵債, 錢貨, 銀銅, 蔘貨, 商賈
續條六	宮衛, 城閨, 寢廟, 陵園, 祭享, 位版, 宮掖
續條七	寶印, 符牌, 制書, 聖曆, 鐘鼓, 烽火, 音樂, 殿牌, 郵牧, 宮房, 學校
雜犯	事係綱常, 毆傷, 誣陷, 假稱, 偷弄, 詐僞, 放火, 墳山作變, 賣買, 冒稱, 犯奸, 神主作變, 鄉民武斷, 奴主, 租稅, 獄囚

에서 타사로 이관해야 하는 격쟁 내용에 대한 규정이 정리되어있다.²⁰⁵⁾ 이외 소송의 처리에 대한 [聽訟] 도 4개 조문을 담아 한 항목으로 설정되었는데 조선후기 소송의 빈도나 그 중요성으로 볼 때 예상할 만하다.²⁰⁶⁾ 마지막 [按覈] 은 綱常罪人의 추고, 考覆 절차에 대한 한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고율사의 업무는 [격쟁] 과 [청송] 이 두 항목이 핵심인 듯 하고, [안핵] 은 『경국대전』의 “율령, 안핵을 관장한다”는 정의에 맞추려는 의도로 한 조문 정도 배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추관지』는 실제 형조가 수행하는 업무를 고율사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어 정리하였고, 이에 비해 『육전조례』는 그당시 실제 절대적인 발생 빈도가 높았던 격쟁과 청송을 하나의 항목으로 설정하였는데 각각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한편 고율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업무는 照律이다. 그런데 두 자료 모두 고율사 조문에서는 관련 정보가 없으나 『육전조례』 율학청 항목에서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조율을 담당하는 부서가 곧 율학청이다. 율학청은 율령과 검험 및 형구를 살펴 점검하는 일을 관장하며, 관원은 교수, 겸교수, 別提 明律, 審律, 訓導, 檢律이다. 이 율학청 소속 관원이 각자 9방의 조율을 담당하였다. 교수는 예1방과 금2방, 겸교수는 금1방과 상1방, 別提 2원 중 1원은 고1방과 고2방, 또 1원은 상2방과 예2방, 訓導는 형방의 조율을 관장하며, 明律·審律·檢律은 율학청에 入直하고 大辟의 조율은 돌아가면 거행한다고 하였다.²⁰⁷⁾ 즉 고율사의 명칭에 맞는 조율의 역할은 율학청의 교수 이하 율관이 담당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고율사의 관원은 따로 있고 고율사에서 다룰 것이라 기대하는 조율은 담당하는 율관이 따로 있다는 것이 무언가 합리적이지는 않다. 이점을 영조도 지적한다.

형조 정랑 민우채가 말하기를, “.....²⁰⁸⁾죄수를 관장하여 다스리지만 律官이 考律합니다.”라고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미 관원이 있는데 율관이 고율하면 나루를 건너고 나서 배를 타는 격이니[越津乘船]²⁰⁹⁾ 관원은 두었다 어디에 쓰겠는가.”라고 하자, 李周鎭이 말

204) “도성 내에서 거동할 때는 세 곳[挹子橋, 通雲橋, 惠政橋] 외에는 모두 시행하지 않는다.”『六典條例 刑典 刑曹 考律司 擊錚』

205) “효자의 旌褒, 復科, 立后, 賜諡 등의 일은 예조에서 품처하게 하고, 職牒還給, 孝行으로 인한 贈職은 이조에게 품처하게 하고, 伸理의 일은 의금부에서 품처하게 하고, 山訟은 한성부에서 품처하게 하고, 濬派의 稱冤은 종친부에서 품처하게 한다.”『六典條例 刑典 刑曹 考律司 擊錚』

206) 소송 과정에서 살펴야 할 부분, 유념하여 보아야 할 문제 등을 정리하고, 債訟 규정, 내시의 소송과 범죄인을 推治할 때 移文하거나 牒呈할 경우에 대한 조문이 실려 있다.

207) 『六典條例 刑典 刑曹 【附】 律學廳 總例』

208) 원문은 “主服一房”이다. ‘服’자가 오기인 듯 하나 정확한 글자를 알 수 없어 인용하지 않았다.

209)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越津乘船 言捨近取遠”『旬五志』) 일을 처리하는 순서가 거꾸로 됨을 비유하여 쓰는 말이다.

하기를 “예부터 관직을 설치했을 때의 뜻이 위는 아래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아래는 위의 직을 겸할 수 없으므로[上不可兼下, 下不可兼上] 자연히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²¹⁰⁾

관원 간의 상하 관계가 업무 관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직위가 낮은 율관의 조율 업무를 상급인 고율사 관원이 맡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고율사의 원 업무가 되어야 할 조율은 율학청의 율관이 담당하는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장금사는 “刑獄과 禁令을 관장한다.”²¹¹⁾ 장금사 업무인 금령은 국가에서 금지하는 여러 행위에 대한 업무일 것이며, 이는 장금사에서 관장했을 것임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형옥은 너무 광범위하다. 형옥은 그 하나만으로 조선 사법제도 전체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용어이다. 그러면 장금사에서는 형옥을 다 관장했다는 뜻일까. 『육전조례』는 조문의 비중 만으로 보면 금령보다 형옥 부분에 방점을 둔 듯하다. 장금사의 업무를 [형옥], [검협], [형구], [금령], [금형] 으로 항목을 구분하였다.²¹²⁾ 이 중 [형옥], [검협], [형구], [금형] 은 ‘형옥’에, [금령] 은 ‘금령’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금령은 별 의문이 없으나 형옥에 해당하는 [형옥], [검협], [형구], [금형] 이 네 항목의 조문이 궁급해진다.

[검협] 항목에는 초검, 복검, 삼검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실려 있고 분량도 많으며, 기존 법전 조문과 비교해 보더라도 제일 자세하다. 그리고 欽恤典則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형구] 항목과 辜限, 즉 保辜期限 규정을 정리한 [형옥] 항목, 開坐와 用刑을 할 수 없는 날에 대한 내용인 [금형] 항목은 모두 형옥 업무에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형옥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안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를 장금사에서 다룰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형옥과 금령을 관장한다”는 『경국대전』의 정의를 따르기 위해 검협을 형옥의 내용으로 배치하고 형구 부분을 보충하여 편집한 것이라 추측해 본다.

『육전조례』의 경우 금난 보다는 형옥 부분의 비중이 크고, 그 내용이 형옥의 범주에 부합한다고 보기 부족한 점이 있으나, 검협 조항은 기존 법전에 비해 내용이 자세하고 본격적으로 검협

210) 『承政院日記 英祖 21年 7月 12日』

211) 장금사는 禁火司라고도 했다. 그런데 禁火司는 인조대에 존치가 확인되나 그 이후 현종대 사이에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금화사가 혁파된 뒤에 禁火는 巡廳에 속하게 되었다고 하고, (『承政院日記 肅宗 2年 2月 9日』) 『추관지』에서도 금화사는 巡廳으로 고쳤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금화사는 장금사의 이칭으로 불렸던 듯 하다. 정조 24년, 정조가 직장을 물어보자 형조정랑 李仁達은 금화사라고 답하였는데 금화사는 장금사의 또 다른 명칭으로 보이며, 또 所掌道를 경상도라 한 것으로 보아 이인달은 장1방을 담당할 정랑임을 알 수 있다. 『承政院日記 正祖 24年 4月 28日』

212) 刑獄 3조, 檢驗 11조, 刑具 6조, 禁令 3조, 禁刑 2조로 구성되어 있다.

에 관해 종합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또 흠휼전칙의 형구 조문은 정조대 반포된 흠휼전칙을 조문으로 정리하여 공식적으로 법제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이에 반해 『추관지』 장금사의 내용은 그 명목에 부합한다. 『추관지』에서는 검험 항목을 상복부에 배치하였다. 사실 검험은 장금사 보다는 상복사의 업무와 더 가깝기 때문에 상복부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추관지』에서 장금사의 경우 형옥은 囚禁, 推治 정도이고, 업무의 대부분은 금령조에 할애하였다.²¹³⁾ 검험을 상복부로 편성하고 장금사는 금령조 위주로 정리한 『추관지』의 편집이 적절해 보인다.

『추관지』에서 중점을 둔 장금 업무, 즉 출금하여 단속해야 하는 禁畝²¹⁴⁾은 곧 형조가 당시 어떤 사안을 사회적 문제로 보고 이를 금지하였는지, 사회 기강이나 질서 유지를 위한 조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의 문제를 살피기에 좋은 주제이다. 금령은 사법 관사로서의 형조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이자, 민의 생활에 직접 관여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그런데 장금사 주 업무인 禁畝의 경우, 사료에서는 업무상의 중요성보다 그 폐단이 주로 지적된다. 바로 出禁이 삼법사 吏隸들의 料가 나오는 財源이었기 때문이다.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삼법사는 금란의 업무와 권한을 가진 형조, 사헌부, 한성부이다. 이들의 禁畝贖公은 禁吏들의 수입원이었다. 조정에서 設禁한 목적은 풍속을 바로잡고자 한데에 있었다고는 하나 三司는 모두 禁畝收贖으로 용도를 충당하므로 濫用하는 폐단이 심했고 삼법사의 금란이 도민이 견디기 어려운 폐단이라는 점은 매우 자주 지적되었다.²¹⁵⁾

213)

<표4> 『추관지』 장금부의 구성과 목록

法禁	法禁, 牛馬屠殺, 會飲騎馬二則, 紙鞋, 亂塵五則, 高重二則, 巫覡三則, 僧尼十一則, 酒禁七則, 禁邪學
申章	用牌, 家舍, 奢侈, 親屬詞證, 囚禁, 推治
雜令	麗陵, 禁養, 苑囿, 折受, 朝制, 僭猥, 貢市, 文簿, 請囑, 匿名書, 雜戲二則, 夜禁四則, 曳船軍

214) 牛馬 도살, 신사, 投錢, 紙鞋, 성 안의 僧人, 亂塵, 禁酒, 자격 없는 자의 騎馬, 私物의 漕船 이용, 淫女 등과 궐내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남의 물건을 억지로 빼앗거나 사 들이는 행위, 유생을 가칭하는 행위, 어두운 밤에 남의 물건을 때려 부수는 행위, 화간, 평시서의 나장과 한성부의 사령이 시전에서 폐단을 일으키는 행위 등이다. 영조 11년, 직장이 장금사인 형조 정랑 金東鼎은 관련 사무로 8조의 금제, 즉 神祀·騎馬·牛馬私屠·漕船·淫女·投錢·紙鞋·亂塵·酒禁를 들어 답하였다. 이중 지혜의 금지는 사대부의 서책이나 관가의 문부가 모두 偷失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었다. (“禁制凡八條, 卽神祀·騎馬·牛馬私屠·漕船·淫女·投錢·紙鞋·亂塵·酒禁矣. 上曰, 紙鞋何以禁之? 匡輔曰, 若不禁此, 則士夫書冊, 官家文簿, 必將盡見偷失矣.” 『承政院日記 英祖 11年 12月 1日』)

215) 형조는 긴요하지 않은 출금도 하고 시각을 정하여 收牌하지 않아 금리가 마음대로 출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또 사사롭게 知家하여 討酒食하는 폐단도 있었기에 이 경우 해당 당상과 낭청을 논죄하도록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1年 8月 3日』

禁亂贖公이 下輩의 朔下와 公家 需用의 비용이 되어온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실 형조의 경제적 수입의 측면에서 보면 장금사 자체가 중할 수밖에 없다.²¹⁶⁾ 조정에서 여러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지만²¹⁷⁾ 금란을 폐지할 수는 없었다.²¹⁸⁾ 이처럼 형조에 있어서 금난은 재정적인 면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 중요한 업무였다. 금령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추관지』의 장금사 편성은 당시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④ 장례사는 “奴隸, 簿籍, 俘囚를 관장한다.” 『추관지』는 [公隸] 와 [私賤] 두 항목을 두었고,²¹⁹⁾ 『육전조례』는 [奴隸符籍] 항목으로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다.²²⁰⁾ 당시 각도의 노비 현황과 관노비, 공노비 등의 동원 규정 등에 대해 알 수 있으며, 내수사의 單子를 粘連한 형조의 계목에 대해 啓下받는 일은 예2방이 전적으로 담당하여 거행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다.

장례사 업무의 분석에는 掌禮院의 합속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장례원이 형조에 소속되면서²²¹⁾ 장례원이 담당했던 奴隸, 簿籍, 決訟이 장례사의 업무로 된 점이다. 장례원은 형조에 소속되기 전에 노비 주관 관사로서, 노비 소송의 업무가 핵심이었다. 장례원이 형조에 합속되기 이전의 隸一房은 京司 노비를, 隸二房은 外方 노비를 관장하여 식년마다 각읍의 推刷奴婢에 대해 續案을 올려 보내면 형조에서 생물, 면천, 면역 등을 맞추어 보고 장례원 및 호조로 分送하였다.²²²⁾ 즉 원래 예1방, 예2방은 노비 소송의 권한이 없었다. 추쇄 노비에 대한 속안을 검토하여

216) 실제 사헌부는 推考贖木이 있고 형조는 奴婢貢木이 있으며 한성부는 戶籍作木이 있어 禁贖이 아니라도 繼用할 수 있다고도 하지만 三司의 1년 비용은 평소 屠肆에서 거두는 贖木에 의지하는 부분이 컸다.

217) “今後則使之詳審於出禁之際, 犯禁之類, 從輕重決罪, 切勿收贖, 或有不得已收贖者, 則使戶曹捧置贖木, 三司若有用處, 則自戶曹計數移送, 似當矣……犯禁者, 只令決杖, 其有不得已收贖, 則雖尺布, 皆爲□□□移文戶曹, 自戶曹收捧, 而三司之官, 則不敢一有下手, 然後可防其□弊矣.” 『承政院日記 肅宗 12年 6月 13日』

218) 下吏가 중간에서 폐단을 일으키는 일을 단속하는 것으로 하여 禁條외의 禁亂은 일절 엄금하여 禁亂이 지나치게 되는 폐단을 막도록 신칙하는 정도였다. 『承政院日記 肅宗 20年 7月 19日』

219)

<표5> 『추관지』 장례부의 구성과 목록

公隸	奴婢查正, 奴婢辨正, 辛亥事目, 公賤推刷七則, 寺奴查正
所生	良妻所生, 定屬救活婢所生
收貢	奴婢減貢三則, 奴婢收貢
官婢	官婢率畜六則, 邑婢潛奸二則
免賤	免賤三則, 公賤物故立案二則, 贖良後出補充隊, 官婢免賤二則
附 斜付	嘉禮都監, 進宴都監, 延接都監, 禮葬都監, 天童軍, 各年天童軍, 祈雨童子軍, 牛毛軍, 童便軍, 四糞散軍, 龍虎水散軍, 假水工, 女囚直, 守僕抄擇, 別監抄擇, 籍沒奴婢
私賤	奴婢, 買賣奴婢, 贖奴婢, 屬公, 奴主, 奴婢作紙二則

220) 外道 노비의 숫자, 放榜할 때, 禮葬할 때, 勅使 대접때 필요한 공노비에 대한 규정, 의녀, 침선비, 기녀 등에 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21) “『掌隸院』[原]掌奴隸簿籍及決訟之事, 司議以下竝久任. [增]今革屬刑曹.” 『大典通編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掌隸院』

222) “本曹雖掌刑獄, 亦主管公私賤, 有隸一房, 屬京司奴婢, 有隸二房, 屬外方奴婢, 每當式年, 各邑推刷奴

장례원, 호조로 나누어 보내는 것이 해당 업무였고, 노비와 양친의 변별에 관한 소송은 장례원에서 해야 했다. 그런데 장금사의 경우처럼 형조 하례들은 또 하나의 재정원을 노비 소송의 作紙에서 찾았다. 형조 하리들이 소송인의 情債를 탐내어 소송 건을 유인해 가져가고, 당상과 낭청 역시 이를 常例로 여겼으며, 패소자가 소송할 곳을 장례원으로 하면 형조에서 이를 금단하였다.²²³⁾ 이처럼 형조에서 직접 노비 소송을 챙기다 보니 노비 소송이 주 업무였던 장례원은 실제 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작지 비용으로 충당하던 장례원의 吏屬 料布가 나올 곳이 없게 되면서 그들의 衣食은 백성에게서 徵出하게 되고 이것이 또 都民의 폐가 되었다. 결국 장례원은 형조에 소속시키는 것으로 방책을 찾으면서 형조의 隸一房·隸二房이 장례원을 主管하도록 하고, 장례원은 장례사에 합속되게 된 것이다. 결국 장례사 역시 형조 하례들의 수입원이 되는 노비 소송을 전담하게 되면서 그 위치가 중요해 졌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보듯 4사의 업무 규정에 대해 『추관지』와 『육전조례』에서 중점을 둔 부분이 다르다. 『육전조례』는 『경국대전』에서 정해진 祖宗成憲을 유지하려는 것이 기본 기조이다. 따라서 직접 내용을 살펴보면 이 틀을 유지하기 위해 조문을 작위적으로 편성했다는 느낌도 지을 수 없다. 『추관지』는 비교적 현실적인 업무에 대해 중점을 두고 내용을 편성했으나 정조가 특히 강조했던 윤상을 기준으로 정리하다보니 각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점도 있다.

그러나 『육전조례』는 상복사에 심리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추관지』는 고율사에 많은 규정을 기록하고, 장금사는 금령 부분에 중점을 두는 등, 두 자료 나름대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자료에서 기록된 업무를 4사가 실제 독립적으로 맡아서 했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다. 조문으로만 보면 4사에게 각각 부여된 업무가 있고, 4사가 업무를 분명하게 나누어 관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상복과 심리는 상복사에서만, 조율은 고율사에서, 금령 단속은 장금사에만 담당할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각사 밑의 1, 2방에서 실제 담당했던 업무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형조라는 사법 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 즉 각 도의 심리사건, 사형죄수의 詳覆, 죄인의 형벌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按覈, 소송 처리, 금령 사무, 노예나 포로에 대한 업무를 상복사, 고율사, 장금사, 장례사라는 이름의 4사에 나누어 배치한 것일 뿐, 각 사가 이러한 업무를 배타적으로 담당하고 처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婢, 上送續案, 則自本曹生產·物故·免賤·免役之類, 一一磨準, 分送於掌隸院及戶曹矣.”『承政院日記 英祖 30年 11月 4日』
223) 『承政院日記 英祖 7年 10月 2日』

다음 장에서 9방 관련 조문과 실무를 통해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3. 九房의 관장·구관 조문과 實務

형조의 실무 담당인 9방의 업무에 대해 본 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 한다. 첫째, 『추관지』, 『육전조례』, 『특교정식』의 조문과 ‘9방거행’, 둘째 『추조결옥록』의 방 명칭이 기록된 문안에서 살필 수 있는 실무이다. 즉 조문으로 정의된 업무와 실제로 수행했던 실무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9방으로 대표되는 형조의 역할이나 職掌에 대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 『秋官志』·『六典條例』의 九房 관장·구관 조문 비교

『육전조례』에서는 “4사가 각각 2방을 나누어 형방과 함께 9방이 되어, 句管하는 百司의 移文과 팔도의 狀牒을 論斷하여 覆奏한다”라고 하였다.²²⁴⁾

즉, 9방은 각각 여러 관사와 도를 구관하며 이들 관사에서 보내오는 문서와 맡은 도에서 보내오는 장첩에 대해 논단하고 이를 임금에게 아뢰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 각 방이 구관하는 여러 관사와 도를 기록하였다. 『추관지』도 역시 같은 내용이 실려있으나 18세기, 19세기라는 시기적 차이도 있는 만큼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할 듯하다.

<표6> 9방의 管掌과 句管·分掌에 대한 『추관지』와 『육전조례』 조문²²⁵⁾

상 1 방	추	掌外詳覆	육	掌外道詳覆及分掌各司
	句管/ 分掌	의정부, 중추부, 사옹원, 사복시, 선공감, 中學, 南部, 北部, 顯陵, 禧陵, 孝陵, 함경도. [추] [육]		
상 2 방	추	掌京詳覆	육	掌京內詳覆及分掌各司
	句管/ 分掌	종친부, 도총부, 예문관, 宗簿寺, 전의감, 혜민서, 의영고, 南學, 호위청, 실록청, 國葬都監, 穆陵, 康陵, 崇陵, 개성부, 강화부, 경기도. [추]		
고 1 방	추	掌律令	육	分掌各司
	句管/ 分掌	호조, 중추부, 돈녕부, 기로소, 내의원, 선혜청, 상평창, 대동청, 수어청, 봉상시, 사도시, 예빈시, 造紙署, 宣陵, 靖陵, 강원도. [추]		

224) “詳覆司·考律司·掌禁司·掌隸司, 各分二房, 并刑房爲九房, 句管百司移文·八道狀牒, 論斷覆奏.” 『六典條例 刑典 刑曹』

225) 내용상 변화가 없으면 두 자료를 함께 출전 표기하였고,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는 『추관지』와 『육전조례』를 나누어 정리하였다.

		호조, 충훈부, 돈녕부, 기로소, 내의원, 전해청, 상평창, 대동청, 봉상시, 사도시, 예빈시, 조지서, 선릉, 정릉, 강원도 . [육]		
고 2 방	추	掌律令	육	分掌各司 [육]
	句管/	비변사 , 시강원, 독서당, 교서관, 평시서, 사재감, 中部, 내농포, 액정서, 南別殿, 산릉도감, 獻陵, 章陵, 長陵, 順懷墓, 昭顯墓, 충청도 . [추]		
	分掌	시강원, 독서당, 교서관, 평시서, 사재감, 중부, 내농포, 액정서, 永禧殿, 均役廳, 산릉도감, 헌릉, 章陵, 長陵, 순회묘, 소현묘, 公忠道.[육]		
금 1 방	추	掌刑獄禁令	육	分掌各司
	句管/	공조, 의빈부, 사헌부, 총융청, 상의원, 전설사, 내자시, 활인서, 掌苑署, 氷庫, 漏局署, 東部, 西學, 장생전, 延接都監, 健元陵, 貞陵, 泰陵, 경상도 . [추]		
	分掌	공조, 의빈부, 사헌부, 총융청, 상의원, 전설사, 내자시, 활인서, 장원서, 빙고, 누국서, 동부, 서학, 장생전, 迎接都監, 건원릉, 정릉, 恭陵[泰陵], 경상도 . [육]		
금 2 방	추	掌刑獄禁令	육	分掌各司
	句管/	병조, 승정원, 금위영, 좌우포청, 좌우순청, 衛將所, 講書院, 군기시, 내섬시, 장흥고, 전생서, 사직서, 종묘서, 서부, 齊陵, 厚陵, 英陵, 평안도 . [추] [육]		
	分掌			
예 1 방	추	掌外奴婢 [추] [육]		
	句管/	예조, 의금부, 훈련도감, 어영청, 사간원, 장악원, 통례원, 사역원, 관상감, 군		
	分掌	자감, 광홍창, 사포서, 昌陵, 敬陵, 전라도 [추] [육]		
예 2 방	추	掌京奴婢	육	掌內奴婢
	句管/	이조, 한성부, 홍문관, 성균관, 승문원, 제용감, 瓦署, 내수사, 禮葬都監, 讎禮		
	分掌	廳, 光陵, 順陵, 恭陵, 翼陵, 황해도 . [추]		
형 방	추	掌禁亂罪囚	육	分掌各司
	句管/	상서원, 전옥서, 규장각, 摘文院, 준천사, 嘉禮都監, 東學, 冊禮都監, 殯殿都監, 祔禮都監, 莊陵, 思陵, 溫陵, 徽陵, 寧陵, 明陵, 懿陵, 惠陵, 弘陵, 元陵, 永陵, 順康園, 昭寧園, 顯隆園, 綏吉園, 仁淑墓 , 愍懷墓, 懿昭墓, 孝昌墓 [추]		
	分掌	상서원, 전옥서, 규장각, 준천사, 景慕宮, 동학, 가례도감, 책례도감, 빈전도감, 부례도감, 輿土廳, 장릉, 사릉, 온릉, 휘릉, 영릉, 명릉, 의릉, 혜릉, 홍릉, 원릉, 영릉, 健陵, 仁陵, 綏陵, 景陵, 睿陵, 순강원, 소녕원, 현릉원, 수길원, 徽慶園, 민회묘, 의소묘.[육]		

※ [추] : 『추관지』 [육]; 『육전조례』

『추관지』와 『육전조례』에서 9방의 관장 업무를 규정한 ‘掌’과 담당하는 관사와 도를 규정한 ‘句管’ 또는 ‘分掌’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²²⁶⁾ ‘掌’의 경우, 상1방, 상2방은 지방의 詳覆과 서울의 詳覆의 구분, 예1방과 예2방은 外奴婢와 內奴婢의 구분이 있으나, 나머지 방은 모두 “分掌各司”라고만 되어 있다. 각사에는 관사 뿐 아니라 陵·園·墓, 담당하는 道도 포함되어 있다.

구관하는 각사의 경우 18세기와 19세기의 시기적 차이로 인해 달라진 부분도 있다. 상2방의 경우 중부시는 1864년(고종1)에 종친부에 합속되었기 때문에 『육전조례』에서 빠지고, 수원부, 광주부가 추가되었으며, 고1방은 수어청이 『육전조례』에서는 빠졌다.²²⁷⁾ 고2방의 경우 『추관지

226) 『추관지』에서는 句管, 『육전조례』에서는 分掌으로 기록되어 있다.

227) 수어청은 인조 4년(1626)에 남한산성을 개축하고 설치되어 廣州 등 鎭의 軍務를 관할했으나 정

』에서는 南別殿이, 『육전조례』에서는 永禧殿이 분장 관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남별전이 영회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균역청이 추가되었고²²⁸⁾ 충청도가 공충도로 기록되었다.²²⁹⁾ 금1방의 경우 『추관지』에서는 연접도감, 『육전조례』에서는 영접도감으로 기록되었다.²³⁰⁾ 태릉은 『육전조례』에서 공릉으로 되어 있으나, 예2방에서도 공릉이 나오므로 금1방의 공릉은 태릉의 오기이다. 교감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예2방에서 儺禮廳이 『육전조례』에서는 삭제되었고,²³¹⁾ 형방의 경우 『육전조례』에서 이문원,²³²⁾ 인숙묘,²³³⁾ 효창묘²³⁴⁾가 빠지고, 경모궁, 여사청, 건릉, 수릉, 경릉, 예릉, 휘경원이 추가되었다.²³⁵⁾

구관 도의 경우, 상1방은 함경도, 상2방은 경기도, 고1방은 강원도, 고2방은 충청도, 금1방은 경상도, 금2방은 평안도, 예1방은 전라도, 예2방은 황해도로 형방을 제외한 8방이 각각 한 도를 맡고 있다. 조문 자체는 간략한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구관하는 도가 사실 9방의 업무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이처럼 조문상으로 보면 각 방은 관사 뿐 아니라 陵·園·墓를 구관하고 도를 하나씩 분장, 혹은 구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구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는 쉽게 그려지지 않는다. 掌과 旬管을 분리하여 기록하였는데 그렇다면 관장과 구관은 별개의 것인지, 구관하는 각사나 도에 대해 관장하는 업무만 한다는 것인지, 각 방은 관장하는 업무 외에 다른 방의 관장 업무는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등 9방의 구체적인 실무 상황은 조문만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 구관이나 분장, 맡고 있다는 의미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추조결옥록』의 기록을 통해 살펴

조 19년(1795년) 壯勇營이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228) 영조 26년에 均役廳을 설치하여 낭관 1원을 증치하고 상평청과 진흥청을 겸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大典通編 吏典 京官職 正一品衙門 宣惠廳』
 229) 죄인 韓海玉이 거주한 곳이라 하여 淸州牧을 西原縣으로 강등시키고 충청도를 公忠道로 바꾸었다. 『純祖實錄 4年 10月 27日』
 230)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기 위하여 둔 임시 관아로 연접도감과 영접도감은 동의어로 같이 쓰였다.
 231) 음력 선달그믐, 종묘에 제사 지내거나 외국사신을 맞이할 때, 악귀를 쫓기 위해서 나례를 행하였는데 광해군 때는 상설기관으로 儺禮廳을 두고 그 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그 뒤 나례의 폐단이 계속 지적되고 停罷, 移設 등의 기록이 검색되는데, 『승정원일기』에서도 정조 8년의 기록 이후로는 관련 기사가 없다. 『육전조례』에서 구관 관청 대상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정조대 이후에 나례청이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232) 이문원은 규장각과 같은 관사이므로 중복이어서 삭제한 듯하다.
 233) 정조의 첫 번째 간택 후궁인 元嬪 洪氏의 묘이다. 정조 치세 초기 권신 홍국영의 여동생이다. 궁호를 孝徽宮, 원호를 仁明園이라고 했다가 홍국영 몰락 후에 인명원과 효휘궁의 이름은 혁파되었다. 순조 20년에 묘소의 호칭도 강등하였으니 祭需을 봉진하는 것이 예로 볼 때 편치 않다고 하여 다른 후궁례에 따라 壽進宮으로 移奉하게 하였다. 『純祖實錄 20年 12月 11日』
 234) 정조의 원자인 문효세자의 묘로, 1870년(고종 7) 12월에 효창원으로 승격되었다.
 235) 사도 세자와 그의 비 헌경 왕후의 신위를 모신 사당인 景慕宮, 정조와 그의 비 효의 왕후 김씨의 능인 健陵, 순조와 그의 비 순원 왕후 김씨의 능인 仁陵, 순조의 원자 文祖(孝明世子의 追尊)와 비 神貞王后 조씨의 능인 綏陵, 헌종과 그의 비 효현 왕후, 계비 효정 왕후의 능인 景陵, 철종과 철인 왕후의 능인 睿陵, 정조의 후궁 綏嬪朴氏의 무덤인 徽慶園이 추가되었다.

보려 한다.

그런데 그 전에 『추관지』와 『특교정식』²³⁶⁾, 『육전조례』 총례에 실린 ‘九房舉行’²³⁷⁾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9방의 실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하다. ‘구방거행’은 제목 그대로 9방이 거행하는 일을 정리한 것인데, 『추관지』에 비교적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당상·낭청의 업무나 개좌 관련 조항, 경차관 파견, 館舍, 담장, 依幕所, 문서 櫃子 등에 관한 조항, 서리·사령·奴子 관련 조항, 월봉이나 늬료 등 經用 등에 대한 조문 등 소속 관원, 서리, 재정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본 글에서 살피려는 구방의 실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특교정식』과 『육전조례』의 구방거행 기록이 가깝다. 『특교정식』에서는 各房應行定式이라 하여 검험, 삼복, 감형, 소결, 산송, 각도의 장계나 來關公事, 그리고 草記를 올리는 일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였다.²³⁸⁾ 9방 업무 내용의 핵심인 듯하다. 이 중에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육전조례』의 기록이 더 유용하다.

① 전교를 들을 때 낮에는 曹司佐郎이 나아가고, 밤에는 入直郎官이 나아간다. 낭관이 입직할 때 申時에 패를 받고, 出直할 때 辰時에 패를 반납한다. 패는 四天通符이다.

② 承傳은 각방이 돌아가며 거행한다.

③ 각도의 狀啓 및 來關公事は 각각 관장하는 방에서 거행하고, 啓下承傳 및 咀呪·殺獄·强盜獄事는 9방에서 돌아가며 거행한다.

④ 承傳 및 咀呪는 비록 방의 차례대로 거행하지만 일이 前房에 관계되었으면 방의 차례를 논하지 말고 前房에 이송하며 查實承傳은 한 방에서 독자적으로 거행할 수 없다. 查實草記와 啓目에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며 또 상의 재가를 청하는 것은 승정원에서 捧入하지 않는다.

⑤ 전교에 따라 山訟을 摘奸할 일이 있으면 該色의 낭청이 나아가고, 각방에서 草記를 올

236) 주로 영조, 정조대에 제정된 刑政 관련 定式을 모은 책이다. 형조에서 편찬하였으며 정조 18년(1794)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特敎定式, 各司稟定, 備局稟定, 本曹稟定, 本曹定例 등 각사, 비국, 형조에서 품의하여 정식으로 된 여러 規式을 기록하였다.(규 古951.009-T296, 1책(112장), 필사본)

237) 『秋官志 雜儀 九房舉行』

238) ① 살육죄인은 해당 부에서 초검을 하고 한성부에서 복검하며 만약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형조에서 계달하여 3검하되, 해당 방의 낭청과 율관이 나아간다. ② 삼복에서 초복, 삼복때 該色 낭관은 궐하에 대령하고 재복은 형조에서 한다. ③ 監刑때 해당 방의 낭관이 나아간다. ④ 소결할 때나 춘당대의 과거 때 형방 좌랑이 궐내에 대령한다. ⑤ 전교로 인해 산송을 적간할 일이 있으면 해석의 낭관이 나아간다. ⑥ 각도의 장계 및 來關公事は 각 관장하는 방에서 거행한다. ⑦ 각방에서 초기를 올릴 일이 있으면 조사좌랑이 나아간다. 사정이 있으면 다음의 차례대로 나아간다. 『特敎定式 本曹定例 各房應行定式』

릴 일이 있으면 曹司佐郎이 나아간다. 만약 사정이 있으면 그다음의 차례대로 나아가고, 밤이면 入直郎官이 나아간다.²³⁹⁾

9방 업무 진행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중 핵심은 ②, ③, ④일 것이다. ③의 경우, 『특고 정식』 기록에 비해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되었다. 즉 도나 관사에서 올라오는 장계, 來關公事는 각각 담당 방에서 처리하지만, 啓下承傳 즉 啓나 보고에 대해 임금이 지시를 내리면[啓下] 이를 받들어 처리해야 하는[承傳] 사건이나, 저주·살옥·강도와 같은 중대한 옥사는 9방에서 돌아가며 차례대로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②의 ‘承傳은 각방이 돌아가며 거행한다’와 ④의 ‘사실을 조사하라는 전교를 받은 사건[查實承傳]은 한 방에서 독자적으로 거행할 수 없다’는 규정과 같은 맥락이다.

이를 통해 각 방의 업무 수행이 배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9방이 구관하는 각사와 도가 있으나, 承傳이나 사건이 위중한 건은 9방이 돌아가면서 거행한다는 것인데 이는 실제 『추조결옥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실제 『추조결옥록』에서 각 방이 담당한 실무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秋曹決獄錄』의 九房 기록과 實務 내용

『추조결옥록』은 명칭 그대로 형조에서 옥사를 처결한 기록이다.²⁴⁰⁾ 형조 연구에 있어서 본 자료는 중요하다. 각 사건의 상단에 담당 방이 기록되어 있어서 본 사건을 9방 중 어느 방이 담당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九房	八房	七房	六房	五房	四房	三房	二房	曹
啓目內更考金羅道成	啓目內更考金羅道成	啓目內更考金羅道成	啓目內更考金羅道成	啓目內更考金羅道成	啓目內更考金羅道成	啓目內更考金羅道成	啓目內更考金羅道成	啓目內更考金羅道成
原金汗明金潘白宗元潭	原金汗明金潘白宗元潭	原金汗明金潘白宗元潭	原金汗明金潘白宗元潭	原金汗明金潘白宗元潭	原金汗明金潘白宗元潭	原金汗明金潘白宗元潭	原金汗明金潘白宗元潭	原金汗明金潘白宗元潭
已久或同罪之人已為案	已久或同罪之人已為案	已久或同罪之人已為案	已久或同罪之人已為案	已久或同罪之人已為案	已久或同罪之人已為案	已久或同罪之人已為案	已久或同罪之人已為案	已久或同罪之人已為案
壹當初所犯既係不輕同	壹當初所犯既係不輕同	壹當初所犯既係不輕同	壹當初所犯既係不輕同	壹當初所犯既係不輕同	壹當初所犯既係不輕同	壹當初所犯既係不輕同	壹當初所犯既係不輕同	壹當初所犯既係不輕同
金堤李時筠古阜朴龍錫	金堤李時筠古阜朴龍錫	金堤李時筠古阜朴龍錫	金堤李時筠古阜朴龍錫	金堤李時筠古阜朴龍錫	金堤李時筠古阜朴龍錫	金堤李時筠古阜朴龍錫	金堤李時筠古阜朴龍錫	金堤李時筠古阜朴龍錫
大元礪山金光連係是減	大元礪山金光連係是減	大元礪山金光連係是減	大元礪山金光連係是減	大元礪山金光連係是減	大元礪山金光連係是減	大元礪山金光連係是減	大元礪山金光連係是減	大元礪山金光連係是減
安全皆某或所犯稍堅	安全皆某或所犯稍堅	安全皆某或所犯稍堅	安全皆某或所犯稍堅	安全皆某或所犯稍堅	安全皆某或所犯稍堅	安全皆某或所犯稍堅	安全皆某或所犯稍堅	安全皆某或所犯稍堅
道臣何如判付內依外	道臣何如判付內依外	道臣何如判付內依外	道臣何如判付內依外	道臣何如判付內依外	道臣何如判付內依外	道臣何如判付內依外	道臣何如判付內依外	道臣何如判付內依外
趙敬心	趙敬心	趙敬心	趙敬心	趙敬心	趙敬心	趙敬心	趙敬心	趙敬心
啓目內更考慶尚道成	啓目內更考慶尚道成	啓目內更考慶尚道成	啓目內更考慶尚道成	啓目內更考慶尚道成	啓目內更考慶尚道成	啓目內更考慶尚道成	啓目內更考慶尚道成	啓目內更考慶尚道成

이렇게 9방의 명칭을 기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사가 참고가 된다.

239) 『六典條例 刑典 刑曹 總例』

240) “결옥록은 정월, 4월, 7월 10월 1일에 내어주기를 청하고, 10일에 첨가하고 보충하여 修啓한다.”
『六典條例 刑典 刑曹 總例』

형조에서 아뢰기를,……지금 낭청이 8방인데, 서울과 지방에 공문을 보내면서 범법하게 형조라고만 칭하고 房名을 기록하지 않아서, 매번 상고할 때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오래 되면서 8방 문서가 잡다하게 뒤섞여, 이 때문에 옥사와 송사가 정체되니 실로 편리하지 못합니다. 금후에는 서울과 지방에 문서를 보낼 때에, 詳覆司 1방·2방, 考律司 1방·2방, 掌禁司 1방·2방, 都官司 1방·2방을 적고, 서울과 지방에 回報할 때에도 또한 이 예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소서.²⁴¹⁾

이미 세종대부터 房명을 기록하게 되어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형조와 지방, 각 관아에서 오고 가는 문서에 담당 방을 적지 않아 행정 처리상 불편함의 문제가 생기자 각각 상1방, 상2방 등 방의 명칭을 적도록 하였다. 즉, 각 방의 소관 사항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책임소재나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각방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조선 초기부터 문서에 방명을 기록하도록 하였으나 그 실물은 19세기 자료인 『추조결옥록』에 와서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총 43책인 『추조결옥록』은 순조대부터 고종대까지의 기록으로 중간에 결본이 있는 零本이다. 그러나 영본이라는 점이 분석 자료로 삼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43책에 각 방이 기록된 빈도수를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이다.

<표7> 『추조결옥록』의 9방 명칭 기록 건수

책	왕대	재위년	상복사		고을사		장금사		장례사		형방	합
			상1	상2	고1	고2	금1	금2	예1	예2		
1	순조	22(임오, 1822)	8	13	11	10	11	11	15	14	11	104
2		30(경인, 1830)	10	21	11	18	14	10	17	15	0	116
3		34(갑오, 1834)	6	10	15	11	14	14	9	14	20	113
4	헌종	9(계묘, 1843)	2	3	7	3	4	11	5	5	7	47 242)
5		11(을사, 1845)	8	22	8	8	12	23	22	11	12	126
6		14(무신, 1848)	5	21	19	19	18	26	23	23	15	169
7	철종	2(신해, 1851)	6	17	14	23	23	22	13	15	33	166
8		3(임자, 1852)	27	41	20	56	59	58	50	70	36	417
9		4(계축, 1853)	30	29	18	39	39	35	47	41	31	309
10		5(갑인, 1854)	13	25	13	36	29	41	12	39	30	238
11		6(을묘, 1855)	14	15	9	35	24	15	17	17	33	179
12		7(병진, 1856)	29	44	14	42	56	45	32	47	25	334
13		8(정사, 1857)	8	7	0	15	4	12	13	20	36	115

241) “刑曹啓,……今郎廳八房, 京外移牒, 泛稱刑曹, 不錄房名, 每遇憑考, 未得搜出, 及其年月已久, 八房文書, 雜錯混淆, 因此獄訟淹滯, 實爲未便. 今後京外文移時, 書詳覆司一房二房, 考律司一房二房, 掌禁司一房二房, 都官司一房二房, 京外官回報時, 亦依此例施行.” 『世宗實錄 19年 12月 23日』

14	고 종	9(무오, 1858)	6	33	5	46	51	48	38	66	21	314
15		10(기미, 1859)	4	18	8	20	0	30	0	43	29	152
16		12(신유, 1861)	12	25	8	27	17	27	24	19	51	210
17		13(임술, 1862)	13	6	9	19	18	13	12	15	44	149
18		14(계해, 1863)	0	0	5	0	0	2	7	0	0	14
19		1(갑자, 1864)	13	29	17	35	31	34	44	40	42	285
20		2(을축, 1865)	6	2	4	12	15	12	7	6	27	91
21		3(병인, 1866)	12	9	6	10	0	0	7	10	14	68
22		5(무진, 1868)	6	6	8	13	7	4	6	6	12	68
23		6(기사, 1869)	3	6	0	5	6	10	6	3	8	47
24		7(경오, 1870)	14	0	0	25	22	21	20	35	0	137
25		8(신미, 1871)	0	0	0	0	0	0	0	0	0	0
26		10(계유, 1873)	0	0	0	0	0	0	0	0	0	0
27		11(갑술, 1874)	0	0	0	0	0	0	0	0	17	17
28		12(을해, 1875)	0	0	0	0	0	0	0	0	39	39
29		14(정축, 1877)	7	0	2	3	5	8	2	5	0	32
30		15(무인, 1878)	4	0	6	8	8	3	6	9	27	71
31		16(기묘, 1879)	8	0	5	5	3	5	5	5	22	58
32		17(경진, 1880)	6	0	3	3	3	5	2	4	15	41
33		18(신사, 1881)	2	3	4	13	0	4	6	6	35	73
34		19(임오, 1882)	0	5	0	10	8	9	15	10	2	59
35		20(계미, 1883)	0	0	8	16	0	31	27	0	0	82
36		21(갑신, 1884)	0	0	0	0	0	0	0	0	0	0
37		22(을유, 1885)	0	0	0	0	0	0	0	0	33	33
38		25(무자, 1888)	0	0	0	0	0	0	0	0	0	0
39		26(기축, 1889)	0	0	0	0	0	0	0	0	0	0
40		27(경인, 1890)	0	0	0	0	0	0	0	0	0	0
41		28(신묘, 1891)	0	0	0	0	0	0	0	0	0	0
42		29(임진, 1892)	0	0	0	0	0	0	0	0	0	0
43		30(계사, 1893)	0	0	0	0	0	0	0	0	0	0
합			282	410	257	585	501	589	509	613	727	4473

중간에 결책도 있고, 방의 기록 자체가 없는 해도 있다. 고종 22년의 형방 33건 기록을 제외하고 고종 21년 이후는 관할 9방의 기록이 없다. 철종대 전국적인 농민 항쟁을 거치면서 행정적인 업무 수행 양이나 질이 모두 낮아졌는데, 고종대부터 처리 건수 기록이 확연하게 줄어든 것이 이를 말해준다. 적어도 철종대까지는 보통 100대~300건이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임술 농민항쟁 다음해 14년에는 14건, 그리고 이때 처리하지 못한 문건을 처리한 고종 1년을 지나면 처리 건수가 100건 미만으로 현저하게 감소한다. 방이 기록된 건수 만이 아니라 실제 올라온 문건 자체도 양이 적다. 따라서 고종대는 본 글의 분석 자료에 해당하지 못하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고종 초반까지는 비교적 9방 기록 건수가 많으며, 특히 철종대에는 13년까지 기록이 매우 충실하다. 이 시기의 문건으로 19세기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에 지장은 없다.

이렇게 시기별로 9방 기록에 차이가 나는 점 외에 각 방별 처리 건수의 차이 또한 주목할 만

242) 6월까지의 기록으로 7월 이후는 방의 기록이 없다.

한 하다. 방별로 비교하면 상1방, 상2방, 고1방이 각각 282건, 410건, 257건으로 타 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리 건수가 적고, 고2방, 금1방, 금2방, 예1방이 500건대로 비슷하다. 이중 예2방이 613건, 형방이 725건으로 의외로 많은 업무 처리 경향을 보인다. 조문상으로 업무 비중이 높을 것이라 예상되었던 상1방, 고1방이 가장 낮고, 관련 조문이 많지 않은 예2방과 형방이 예상외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9방의 처리 건수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금2방이 589건, 예2방이 613건으로 처리 건수가 많은데 이는 각각 담당한 도인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올라오는 문안이 많았을 수도 있다. 이들 지역은 유배지였으므로 아무래도 정배 등 관련 문안이 많은 것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본다.²⁴³⁾ 한편 충청도를 구관하는 고2방이나 경상도를 구관하는 금1방, 전라도를 구관하는 예1방도 각각 585건, 501건, 509건으로 적지 않은 처리 건수를 보인다. 이들 지역은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삼남 지역이므로 심리 건수 역시 많았을 것이다.

이처럼 구관하는 도의 특징으로 처리 건수의 차이를 일부 설명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함경도를 구관하는 상1방, 강원도를 구관하는 고1방의 처리건수가 타도에 비해 매우 적은 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이 되지는 못한다. 이에 각 방의 담당 관원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다.

『육전조례』에 규정된 형조 관원은 판서 1원, 참판 1원, 참의 1원으로 당상이 3원이다. 그 밑에 정랑 3원, 좌랑 3원의 6명의 낭청이 있고, 율령, 녹사, 이서, 도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각각 9방을 나누어 맡는데 관장하는 방은 다음과 같다.

<표8> 9방 구관 관원

방	구관
상1방	판서 구관, 상2방 낭청이 겸찰
상2방	좌랑 1원이 구관
고1방	정랑 1원이 구관
고2방	참판 구관, 정랑 1원이 겸찰
금1방	정랑 1원
금2방	좌랑 1원
예1방	정랑 1원
예2방	좌랑 1원
형방	참의 구관, 조사좌랑이 겸찰

실무는 낭청 담당이다. 물론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판서와 함께 결정하고, 종종 폐단이

243) <표9>에서 보듯 실제 방에서 처리한 업무 중 방미방계본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이는 두해의 기록을 분석한 것이므로 나머지 기록에서는 방미방계본의 처리 건이 높을 수 있고, 심리 자료가 많을 수도 있다. 이는 43책 전체의 내용 검토를 통해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다.

있으면 형조 당상과 의논하여 이정하므로²⁴⁴⁾ 판서, 참관의 역할도 적지 않다. 큰 일은 당상이 계품하고, 작은 일은 당상이 처치하나,²⁴⁵⁾ 결국 8방의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정랑, 좌랑 6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1방은 판서가 구관하지만 상2방이 겸찰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상복사의 두 방 실무는 형조 좌랑 1원이 맡은 셈이다. 마찬가지로 고2방의 경우 참관이 구관하고 정랑 1원이 겸찰하므로 고율사의 두 방 실무는 정랑 1원이 담당하는 것이다. 이는 금1방, 금2방, 예1방, 예2방을 정랑, 좌랑 각각 1명이 담당하는 것과 비교된다. 즉 상복사나 고율사는 한 사람이, 장금사나 장례사는 두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셈으로, 표에서 보듯 장금사, 장례사의 실제 처리 건수가 상복사, 고율사의 2배 정도인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형조는 타사와 달리 거의 매일 개좌하며²⁴⁶⁾ 낭청이 함께 업무를 처리한다. 그런데 낭청 인원은 형조의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많은 수가 아니다. 원래는 8명이었으나 그럴때에도 모두 한자리에 모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영남 등 먼 지방에 있으면 올라와서 사무를 볼 수 있는지도 불확실했고, 도감 낭청으로 차정되기라도 하면 형조의 업무는 면제되었다. 낭청을 차출하지 못할 때도 있어서 사무를 겸찰한다고는 하지만 업무 처리가 소루할 수밖에 없었다.²⁴⁷⁾ 그나마 8명이었던 낭청은 현종 3년에 6원으로 감원되었다. 이들 6낭청은 공적인 이유나 사적인 일로 인해 좌기때마다 몇 명만 참석하였으므로 8방의 사무가 적체되었다는 기록을 찾기 어렵지 않다.²⁴⁸⁾

게다가 소속 서리들, 즉 문서를 작성하거나 세세한 실무를 처리해야 하는 서리들은 원래 국초에 정해진 인원에서 많은 수가 감원이 되었다. 효종대의 경우 원래 형조 서리는 40여명인데 지금 사환은 20여명이며, 이 중에서 조금이라도 글을 알고 해석할 수 있는 자는 7, 8인 정도여서

244) “弼顯曰, 秋曹豈無種種弊端, 而卽今則姑無大段之弊. 若其小小者, 則當議于本曹堂上而釐正之.” 『承政院日記 英祖 3年 12月 11日』

245) 낭청은 卯時에 출근, 酉時에 파하며 所志를 推閱한다.(“大事則堂上稟啓, 小事則堂上處置, 郎廳則卯仕酉罷, 推閱所志矣.” 『承政院日記 英祖 9年 9月 21日』)

246) “臣曹異於他司, 幾逐日開坐矣.” 『承政院日記 英祖 16年 9月 23日』

247) “金壽賢以刑曹言啓曰, 本曹事務煩劇, 郎廳八員, 二字缺而尙患不及, 況今八員內, 正郎權濬·高四字缺·權暉, 遠在嶺南, 其來仕遲速有不可知, 而佐郎金知復, 以禮葬都監郎廳, 除本司仕上直, 只有正郎李惟一, 佐郎邊復一·洪錫禹, 正郎一員, 亦未差出, 本曹之事, 雖或兼察, 而八房之務, 多有疏漏之患, 極爲悶慮.” 『承政院日記 仁祖 4年 3月 5日』

248) 정랑 정지익은 집이 연안땅에 있는데 제수후에 내려갔다가 병세가 위중해져 올라올 수 없는 형편이고 정랑 김명열은 연접도감 낭청으로 차하되어 본사의 직은 면제되었다. 도감이 파해질 때까지 일이 많은 본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하여 間官으로 환차하도록 조치하였다.(“李延年, 以刑曹言啓曰, 本曹郎廳二員減省, 時存六員內, 公私多故, 每坐只以數員進參, 八房事務積滯, 誠極可悶. 正郎鄭之益, 家在延安地, 除授之後, 下人進去, 則病勢極重, 不能上來云. 鄭之益, 卽爲遞差, 今日政, 以無故人各別擇差, 俾無曠職之患. 且正郎金命說, 迎接都監郎廳差下, 除本司矣, 自今至于都監罷後, 則其間閱月, 多事之地, 亦難久曠, 依前例間官換差, 何如? 傳曰, 允.” 『承政院日記 顯宗 3年 4月 16日』)

회계 및 허다한 사송 공사를 모두 거행할 수 없는 형편이라 하였다. 使令의 경우 8방에 각각 2명이 있는데 형조는 원래 料布가 없기 때문에 모두 피하고 도망가서 호령이 행해지지 않는다고도 하였다.²⁴⁹⁾

이처럼 부족한 수의 서리들을 데리고 각 방의 업무를 처리해야 했던 낭청들은 개좌하면서 각자 관할 지역의 사건만 처리할 수는 없었다. 사정이 생기면 서로 代房하여 업무를 같이 처리하였다. 다만 관할하는 도가 다르다 보니 대략 어느 방에 어느 문서가 올라왔다는 것은 알지만 사건 관련자들의 이름, 내용, 살육사건일 경우 實因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자가 아니면 알기 힘들었다. 따라서 정조가 윤대할 때 형조 정랑, 좌랑에게 현재 올라온 문서가 얼마인지, 죄수들의 이름이나 사건의 내용 등 자세한 내막을 물었을 때 대략 몇 건이지만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모른다는 답을 하는 예가 많은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²⁵⁰⁾ 즉, 6낭청은 어찌 되었든 매일 개좌하여 각도에서 올라오는 사건 등 9방의 업무를 함께 보되, 도의 장첩 문건을 정리하고 조율하여 회계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判付를 기다려 시행하는 것은 담당 방에서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은 9방 중에서도 특히 형방의 처리 건수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²⁵¹⁾ 형방의 경우, 『경국대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며 『추관지』에서는 금란죄수를 관장한다고만 되어 있다. 『육전조례』에서는 [犯越] 항목을 두어 범월 죄인의 추핵은 형방이 주관하여 거행한다는 것과 口傳下教는 형방에서 전담하여 거행한다는 조문을 실었다. 4사의 8방에 비해 조문이 현저하게 적어 직사의 비중이 미미하게 보인다.

그러나 <표7>에서 보듯 실제 형방의 처리 건수는 각 방과 비교했을 때 726건으로 가장 많다. 철종, 현종대에도 형방의 처리 건수는 타방에 비해 높고, 고종 22년 이후에는 타방의 기록은 없으나 그 외중에 형방만 온전히 기록되었다. 즉, 조문의 비중과는 다르게 형방은 실무적으로 그 역할이 컸다. 본 자료가 아니면 확인하기 힘든 사항이었을 것이다.

형방은 구관하는 도도 없다. 『육전조례』에서는 각사를 분장한다고만 되어 있다. 담당하는 도

249) “刑曹書吏則大典內，元數四十餘名，而時方使喚數二十餘名中，稍知解文者，只有七八人，回啓及凡詞訟等許多公事，不爲趁書舉行，極爲可慮……且使令則八房各有二名，而本曹元無料布，人皆厭避逃走，故號令不行” 『承政院日記 孝宗 5年 2月 11日』

250) “上曰職姓名奏之，絲浩曰刑曹佐郎臣洪絲浩矣，上曰職掌奏達，絲浩曰掌獄訟矣……上曰，推覈者幾何？絲浩曰，臣待罪詳覆司二房，而所掌罪人結案者三，完決日次者二，未推覈者一也……上曰皆是殺獄乎？絲浩曰德金以燈燭房墜火罪結案，而其餘俱是殺獄也，上曰不有偷竊銀器者乎？絲浩曰有之而非臣所掌也……上曰然則罪人止此耶？絲浩曰本曹九房，各有所掌，重囚之數甚多，而既非該掌，故不敢以某房某罪人，指的仰達矣。” 『承政院日記 正祖 6年 4月 21日』

251) 형조 소속의 형방은 승정원의 6방 중 하나인 형방과는 구별해 보아야 한다. 승정원 형방은 사료에 대부분 형방승지로 되어 있어서 그 소속이 승정원임을 알 수 있다.

도 없고, 분장하는 각사도 다른 방에 비해 크게 다른 점도 없는데 유독 담당 건수가 많은 것은 왜일까. 이 역시 담당 관원을 주목해 본다. 형방은 참의가 구관하고, 조사좌랑이 겸찰한다. 즉 당상이 구관하기는 하지만 실무는 조사좌랑이 모두 처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사좌랑은 좌랑 중에서도 가장 하위의 좌랑인데 이들의 위치에 대해 다음의 기록이 참조된다.

“육조의 일은 판서가 모두 결재하고 그 曹 안의 잡된 일은 참의가 맡아 처리하며, 참관은 주관하는 일이 없고, 낭청은 모든 사무를 다 曹司佐郎 1명에게 책임지우며, 정랑은 행동을 마음대로 한다.”²⁵²⁾

“우리나라의 육조 등은……좌랑이 정랑에 대해 감히 머리를 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모든 公事는 曹司佐郎에게 맡깁니다.”²⁵³⁾

판서가 결재의 최종 상위에 있으나 참의가 실제 일을 맡아 한다는 것이며,²⁵⁴⁾정랑과 좌랑의 위계의 차이가 컸다는 것, 그래서 육조 사무를 조사좌랑이 전부 담당했다는 기록이다.²⁵⁵⁾ 앞의 9방거행 기록에서도 보았듯이 전교를 들을 때나 각방에서 초기를 올리는 것 모두 조사좌랑 담당이었고, 당연히도 조사좌랑은 기피하는 직책이 되었다.²⁵⁶⁾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조사좌랑이 맡았던 형방의 실무 담당 건수가 예상외로 많은 것에 대해 일부나마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9방이 담당한 업무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총 43책 중 8책인 철종 3년, 12책인 철종 7년 이 두 해의 업무를 대상으로 분석해 보려 한다.²⁵⁷⁾

252) 『국역 대동야승 寄齋雜記[二]』

253) “我朝六曹等處……而佐郎之於正郎, 猶不敢仰首與言. 故凡有公事, 一付之曹司佐郎” 『重峰集 重峯先生文集卷之三 疏』

254) 판서의 경우 齋戒가 있거나 하여 올라오지 못하면 차관이 날마다 開坐해야 했다. 그런데 개좌하더라도 訟簿를 자세히 살피고 情僞를 판단하여 날마다 끊임없이 聽訴해야 적체의 폐단이 없는데 장관이 없이 차관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았다. 『承政院日記 英祖 1年 8月 3日』

255) 정랑, 좌랑 등이 나이가 문제일 경우도 꽤 있다. 정조는 60세 이상이나 70세의 낭청에 대해 형조 낭청이라는 직임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도 지적하였다. 따라서 형조의 경우는 직무의 특성상 담당자의 연령에 따라 직무의 의존도, 적합성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256) “六曹의 曹司佐郎은 예전부터 罰酒를 많이 마시고 또 直宿이 많으므로 김식이 이 때문에 벼슬살이를 즐거워하지 않아서 두 번 屢辭하니, 혹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역 중종실록 12년 11월 22일』

257) <표7>에서 보듯 8책이 417건, 12책이 334건으로 기록 건수가 가장 많고, 각사별, 각방별로 담당 건수 기록이 균일하여 9방 업무를 살피기 좋은 샘플이다. 承傳의 통계에는 당상인 차비역관을 의금부로 이관하는 타사 이관 1건과 국장도감을 형조에 설치하는 관계로 형조가 선공감으로 이접했다가 다시 본아로 還接하는 것에 관한 2건 도합 3건을 합하여 처리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두 책에 한정하여 그 내용을 살폈지만 9방의 업무의 경향성을 파악함이 위함이고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연구를 위해서는 43책 전체의 기록을 세세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표9> 9방의 실무 내용

	審理	擊錚	放未放	承傳	합
상1	42	5	5	4	56
상2	62	14	1	8	85
고1	16	4	10	4	34
고2	60	20	8	10	98
금1	81	23	7	4	115
금2	84	6	6	7	103
예1	65	9	4	4	82
예2	96	6	8	7	117
형방	7	33	1	20	61
합	513	120	50	68	751

9방의 업무 중 형방을 제외한 8방은 심리의 처리가 업무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함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형방은 격쟁 업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司謁口傳으로 인한 승전 업무이다. 형방은 구관하는 도가 없는 만큼 격쟁과 사알을 통해 명을 내리는 口傳은 대부분 형방에서 처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口傳下教는 형방에서 전담하여 거행한다’는 『육전조례』 조문과도 일치한다. 금1방, 금2방, 예2방의 처리 건수가 많은 것도 <표7>의 통계와 다르지 않다.

각 방이 처리한 문건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심리’의 검토이다.

심리는 『육전조례』에서 상복사의 업무라고 되어 있으나 앞서 상복사의 심리 업무가 상복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았듯이 실제로는 9방 모두에게 주어진 실무였다. 각 방에서 구관하는 도에서 감사가 심리 계본을 올리면²⁵⁸⁾ 9방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처리한다.

해당 도의 감사가 품처죄인, 심리죄인, 녹계죄인에 대해 계본을 올리면, 이에 대해 형조는 회계를 작성한다. 회계는 계본을 바탕으로 하여 암행어사의 계 등도 검토하고 회의[讞議]를 거쳐 더 심문해야 할 사항, 의문점, 자백을 받아야 할 부분 등을 고려하여 照律, 처리 등의 내용을 담는다. 이렇게 작성된 회계를 가지고 이러한 뜻으로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내용으로 임금에게 보고하면 이에 대해 임금은 형조의 회계대로 ‘依允’하기도 하고, 그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생각되면 엄형정배하라고 하거나 加律, 減律할 것을 지시한다. 그러면 형조에서 명에 따라 다시 조율하여 형량과 정배지를 정해 다시 보고하고 판부의 허가를 받은 후에 비로소 해당

258) 중앙은 훈국군사의 처벌 등 형조에서 고율하여 다스리는 경우도 심리로 포함하였다.

도에 그 회계를 전달한다.²⁵⁹⁾ 이러한 순서가 형조 9방의 심리 처리 과정이다.

최종 조율은 왕의 판부를 거쳐야 하지만 사망 사건의 개요 등 심리 사항 검토, 實因, 初檢, 覆檢, 正犯, 傳輕 여부, 照律, 정배지역, 집행 등 해당 옥사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처리는 형조 9방의 핵심 업무였다.

② 심리 다음으로 많은 업무가 擊錄의 처리이다.

격쟁은 서울 뿐 아니라 각 도에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문건은 형조로 올라온다. 격쟁 처리는 9방의 맡은 지역과는 관계없다.²⁶⁰⁾ 정조 2년, 郊外에 動駕할 때에 격쟁, 상언자가 五部の 字內안이면 형조에서 그 공초를 받아 覆奏하는데, 각읍 地境에서 격쟁하는 경우는 임금의 명이 없으면 형조에 이송하지 않아 격쟁인은 본읍에 구금되고 격쟁, 상언단자는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²⁶¹⁾ 따라서 이후로 각읍의 격쟁 민인은 該府에서 해당 감영에 出付하면 해당 영에서 형조례에 따라 供辭를 받아 형조로 올리고 형조에서 임금에게 아뢰어 처리하게 하였다.[稟處]

각 방에서는 격쟁의 공사를 직접 검토하여, 격쟁이 허락되는 四件事²⁶²⁾에 해당하는지 등 격쟁의 적절성 여부를 따진다. 사건사가 아니면 격쟁인을 처벌하며, 보고할 만한 내용이면 격쟁의 원정을 내용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형조의 처리, 즉 이같이 억울하다고 하니 원안을 상고하여 다시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는 내용의 회계를 보고하고 의윤의 판부를 받는다.

격쟁인의 신분, 지역, 격쟁 내용을 살펴 형조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 즉 의금부나 병조, 이조 등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면 이를 해당 관사에서 품처하게 하라고 계를 올린다. 즉, 伸理事는 의금부, 직접 환급은 이조, 復科나 효행정표는 예조, 父의 復薦事는 병조로 보내어 해당 조에서 품처하게 하였다. 또 각 도에서 처리해야 할 내용이면 본도에서 잘 조치하여 다시 격쟁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계를 올리면, 임금이 윤허하는 판부를 내린다. 격쟁의 이관 여부를 살피고 담당 관사를 정하여 분배하는 것 역시 9방의 업무였다.

그런데 격쟁이 원래 허락된 사건사 외에 기존 옥사에 대한 처리의 부당함이나 억울함을 호소

259) ①~감사 계본 “품처죄인[심리죄인, 녹계죄인]~~云” ②曹回啓 “~~之意 分付道臣何如” ③ 판부내 “의윤”. 『추조결옥록』은 이 세가지 순서로 관련 계본, 계목, 판부가 함께 정리되어 있다.

260) 이천의 격쟁이나 서울 남부의 격쟁을 강원도 담당의 고1방이 맡는 등 격쟁은 각 방이 돌아가며 담당했다.

261) 지방의 경우 격쟁인을 該府에서 해당 감영에 보내면 해당 감영에서 지방관에 보내지만 上言單子 는 該府에서 받아두고 말뿐 형조에 이송하지 않았다. 따라서 특교로 捧供하라는 명이 없으면 4, 5일을 넘기고 시행하지 않게 되며, 그 사이 격쟁인은 본읍에 여러날 拘囚된다는 것이다. 『承政院日記 正祖 2年 8月 25日』

262) “刑戮及身·父子分揀·嫡妾分揀·良賤分揀等項四件事”

하는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였다. 정배된 아버지의 석방을 바라는 내용이 많고, 상전의 석방을 청하는 사노의 격쟁도 상당 분량을 차지한다. 유학, 양인, 노비, 조이 등이 아들, 형, 남편 등 가족이나 상전에 관련하여 억울하다며 올리는 청원이 주이다.²⁶³⁾ 이럴 경우 ‘更考’, 즉 다시 조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감사 등의 査啓를 검토해 보고 그에 대한 처리, 즉 재조 사라던가 도계가 적절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회계를 작성하고 임금에 보고하면 이에 대해 판부가 내린다. 따라서 이 경우 격쟁 계본은 또 다른 심리 계본이 된다. 즉 사건사 외에 옥사의 판결에 대한 억울함 등을 호소한 격쟁 사건은 심리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²⁶⁴⁾

三度得伸의 판결에도 재차 이루어지는 호소에 대해 이를 재고해 주는 것은 형옥 판결에서 있을 수 있는 억울함을 구제해 주는 차원에서의 조치로 유교적 흡흡주의가 그 배경이다. 그러나 이는 재판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전근대 조선의 사법 행정의 주소이다.

본 자료는 격쟁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대한 처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서 격쟁 연구에 있어서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 격쟁인의 지역, 신분, 이름은 물론이고 원정 내용, 한번 行幸할 때 몇 건 정도의 격쟁이 이루어지는 지, 격쟁이 허락되는 네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주로 어떤 내용으로 격쟁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내려지는지 등 격쟁이라는 소원제도의 19세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써 유용하다.

③ 심리, 격쟁 외 또 하나의 실무가 放未放啓本の 검토이다.

각 도에서 감사가 방미방계본이나 徒流案, 혹은 發配했으나 配所에 도착하지 못한 일에 대해 成冊, 修啓冊子를 올리면 이를 검토하여 이미 정배 기한이 만료된 자, 죄를 참작해서 석방해 줄 만한 자를 가려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등 그 처리 여부를 啓目으로 보고한다. 정배 죄인의 기한이 만료되었으므로 석방하고 徒流案에서 頗下하는 것, 죄가 深重하지 않으므로 참작하여 석방하는 의견 등 도배죄인의 석방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의 감사가 방미방성책을 올리더라도 형조에서 일단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석방 여부를 조정하거나 결정하여 임금에게 보고한다. 즉 전국에 있는 정배인의 석방 여부를 최종 검토와 여부는 반드시 형조를 거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배, 정배 연구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도가 높다.

263) 이는 모두 신문고를 치도록 허락된 사항이다. (“擊申聞鼓者，刑戮及身·父子分揀·嫡妾分揀·良賤分揀等項四件事，及子孫爲父祖·妻爲夫·弟爲兄·奴爲主，其他至冤極痛事情，則例刑取招。此外竝嚴刑。”『續大典 刑典 訴冤』)

264) 지방의 격쟁으로 인해 도사가 그 처리를 담은 계본을 올린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건은 심리로 구분하였고, 직접 9방에서 처리한 건만 격쟁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따라서 <표9>에서 격쟁으로 분류한 건수보다 실제 더 많은 사례가 심리로 잡혀서 통계에 반영되었음을 밝혀 둔다.

④ 마지막 범주의 업무는 承傳의 처리이다.

승정원, 비변사, 병조, 포도청, 한성부, 사옹원, 내의원 등 중앙 관서, 삼정승이나 판서 등의 관원이 특별하게 조사나 추고를 청하는 계사를 올리면²⁶⁵⁾ 임금이 그 처리 여부에 대해 전교를 내리고, 9방에서 이를 받아 처리하였다.

또 능원묘의 犯斫, 邱木 禁護, 陵園守護 등에 관하여 내린 승전이나, 각 릉을 전알하거나 행할 때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관원에 대한 도승지의 계에 대해 그 처벌을 명하는 내용,²⁶⁶⁾ 도성내의 화재 사건 처리나 별감, 무감, 내관 등의 구타 사건 등 또한 승전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승전 업무 처리 또한 9방의 주요 업무였고, 9방거행 조건에서 언급했듯이 9방이 돌아가면 담당하였다.²⁶⁷⁾

이상을 정리하면 실제 9방이 담당하는 실무는 첫째, 각각 담당한 도와 관사에서 올라온 형옥 사건 중심의 문건, 격쟁, 방미방 계본 등을 사법 행정의 절차 등에 따라 검토하고 처리하는 것, 둘째, 왕이나 승정원, 병조 등 중앙 관서, 관원이 특별하게 조사나 추고를 청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 다른 관사 담당인 사안을 분류하여 보내는 등의 사건 관할 조정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각 방이 소속 시의 관장 업무와 같다고 해서, 즉, 상복사의 업무가 상복과 심리라고 해서 상1방, 상2방이 상복과 심리만을 맡는다거나, 고을사와 고1방, 고2방의 업무가 율령을 관장한다고 해서 율령만, 장금사와 금1방, 금2방이 형옥과 금령을 관장한다고 해서 형옥, 금령만이 담당 업무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이들 업무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도 없다. 심리, 형옥, 조율, 금령 등은 모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문에 규정된 업무를 기준으로 4사와 9방을 나누는 것은 그리 큰 의미가 없을 듯하다. 즉, 4사와 9방에게 각각 부여된 관장[掌]의 내용은 그 전체가 형조에서 해야 하는 업무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당시의 언어대로 형조는 ‘究覈盤問’, ‘照法’, ‘嚴繩’하는 관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²⁶⁸⁾

본고의 목표가 4사와 9방의 실무를 정리하는 것에 있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운영이라는 큰 틀

265) 승정원의 쉼문 쇄약 건, 司鑰 科治 건, 통례관원의 추고건, 내의원의 羅蓼封進 건, 병조의 犯夜시 巡卒의 구타건, 우의정의 함사추고를 청하는 건, 비변사의 비온 뒤 서부와 남부 적간할 때 冒錄한 部吏 처벌건, 호조판서의 稅穀건 등으로 인한 승전을 받들어 처리하였다.

266) 명릉을 행할 때 乘床을 거행하지 못한 사복서리의 과치, 인릉을 전알할 때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약 등에 대해 科治를 청하는 도승지의 계에 대한 승전이 많다.

267) 고을사에서 서울서 화재가 났을 때 고지기, 서리 등에 대한 처벌을 담당하고, 고2방이 내의원구관이 아닌데도 內醫院 啓辭에 따라 審藥의 考律重勘 담당하였고, 금1방에서 倭船 到泊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倭學의 처벌 건 등을 담당하였다.

268) “兵曹啓曰……攔入之漢, 移送秋曹, 究覈盤問, 照法嚴繩……” 『承政院日記 哲宗 8年 2月 21日』

에서 얘기되어야 하는 사법 행정 업무와 사법 질서 담당이라는 측면에서의 법사 형조에 대해서는 사실 접근하지 못했다. 근본적으로 형조가 가지는 의의는 『朝鮮經國典』에서 찾을 수 있다. 後序에서 형전은 육전의 하나이지만 나머지 다섯 전이 형전에 의해서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이전의 출척에 있어서 선별을 공정하게 하는 것, 호전의 징령에서 표준을 균등히 하는 것, 예전의 절문에서 의례를 공경히 하는 것, 병전의 호령에 있어서 군사에게 위엄을 주는 것, 공전의 홍작에 있어서 노력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은 모두 형전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²⁶⁹⁾

즉 관리의 선발이나 출척, 조세의 균등한 징수, 의례를 공경하게 치르는 일, 군대의 지휘 명령에 있어서의 위엄을 보이는 일, 국가적인 건설 작업에 있어서 노력의 절감 등 이전, 호전, 예전, 병전, 공전 등의 일을 법도에 맞게 하기 위한 일을 형전이 담당하고 있으며, 『추관지』는 이 점에 형관을 설치한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²⁷⁰⁾ 실제 탐관오리의 가렴주구를 징벌하고, 감사의 횡령액을 형조에서 받아내어 감영에 다시 돌려보내는 일, 세곡 징수하지 못한 관리 처벌, 私錢을 주조한 죄인 처리 등은 실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하다. 즉, 형조의 업무를 형옥 사건의 조사, 형벌 집행 등에 국한하여 규정지을 수 없는 부분이다.

형벌 관련 업무 외에 국가 시스템의 운영, 감시, 강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국가의 모든 제도가 공정하고 법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정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형조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4사 9방의 실무 파악에서 더 나아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추후 연구를 기약해 본다.

5. 맺음말

이상 각방의 구관에 대한 법규와 실제 업무 수행 현황을 『육전조례』, 『추관지』, 『추조결옥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이를 통해 각방이 어떻게 문건을 처리하는지, 당시 중요한 사회적 문제는 어떤 것이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실제로 형조의 각방은 관찰사의 관할 범위 밖의 전국의 형옥 사건, 혹은 의정부나 승정원, 상급 관원들의 조사를 청하는 사건, 또는 임금이 조사를 명한 사건에 대해 실제 조사하고 조율하고 처리까지 진행하는 명실상부한 사법기관의 역할을 하

269) “臣又按憲者，六典之一，而五者莫不資是以有成。故吏典之黜陟，非憲則無以公其選，戶典之徵斂，非憲則無以均其法，禮典之節度，非憲則無以肅其儀，政典之號令，非憲則無以威其衆，工典之興作，非憲則無以省其力而合其度矣。若夫刑律，又即憲中之憲也，蓋五者各一其事，有錯見於六典之中者，則各於其典，隨其義而論之，而憲典無乎不在，輔治之法，莫備於此也。”『三峯集卷之八 朝鮮經國典 下 憲典 後序』

270) 『秋官志 卷之一 官制』

고 있었다. 의금부, 포도청 등 역할에 따른 사법 기관이 있기 때문에 관할 관사에 사건을 이관하기도 하지만 그 조정의 역할도 형조의 담당이다.

형조의 업무가 작동되는 구조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지방 고을의 사건이 서울로 올라오기까지 지방 수령, 관찰사 등을 거치는 과정, 절차 등 실제 사법 행정이 운영되는 복잡한 구조의 최상위에, 혹은 그 안에 형조는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형조 연구는 사법 기관 중의 하나에 대한 측면에서 만이 아니라 조선 행정 체계의 전체적 운영 구조를 규명하는데 있어서도 깊이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추후 형조를 비롯한 사법기관의 연구를 위해 각종 자료들의 발굴과 분석이 필요하다. 『추조결옥록』은 물론이고, 『秋曹審理案』, 『秋曹龍圖錄』, 『秋曹事目』, 『秋曹褒貶謄錄』, 『攷事』, 『小丹書』, 『刑曹謄給』, 『刑房來報關錄』, 『秋房謄錄』, 『秋曹受教』, 『特教定式』, 『秋審略例』, 『法律書』, 『檢査跋錄』, 『惟輕錄』 등등의 자료는 형조 연구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이 자료들이 가지는 의미가 반드시 법제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경제, 사회, 생활, 문화 등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당시 사람들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살아있는 역사 자료이기도 하다. 『추조결옥록』을 비롯한 법제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연구는 조선후기의 법제사 뿐 아니라 전체 조선후기 사회상의 조각을 맞춰 나가는 한 과정이며, 관련 자료의 검토는 번역 대상 서목의 확대, 역사 자료의 대중화라는 점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